

2013 인권작품 공모전  
논문 수상작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81-14



2013년  
인권작품 공모전  
논문 수상작



국가인권위원회

## CONTENTS

### 최우수상

심미선 박노현 심대민	정보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의 국내도입방안 연구 ..... 1 - 법제도적 측면 분석과 실현가능성 중심으로
황성민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자들이 받는 차별에 관한 연구 ..... 39

### 우수상

김재완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보장에 관한 연구 ..... 75 -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장하진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연구 ..... 121

### 장려상

정희근 이승현 임서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 ..... 155 - 서울시와 대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샘솔 방세잎	군대 내 인권침해실태와 개선대책 고안 ..... 201 - 최근 2년 이내 제대자와 현 복무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이경면 유병현 최준식	성범죄자에 대한 언론의 사적정보 공개가 남녀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 235



논문수상작  
**2013 인권작품 공모전**

**최우수상**

정보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국내 도입 방안 연구

- 법제도적 측면 분석과 실현가능성 중심으로 -

심미선, 박노현, 심대민

## 요 약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기회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생성·보관·관리하는 정보나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과 확산에 따라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쉽게 처리되고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일반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집적되거나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특정계층의 제한된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개인에게까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허용함으로써 더 이상 개인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게 되었는데, 이를 ‘잊혀질 권리’라 한다.

유럽에서는 배우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판결되어 15년 징역형을 마친 2명의 독일인이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에 해당 사건 검색 시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위키피디아를 상대로 기록삭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판결했다. 국내에서는 소위 ‘신상털기’라고 하는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형벌과도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피해자 개인의 정상적인 실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단순히 개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것에 더하여 허위사실이나 루머 등이 결합되면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자살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유통됨으로써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가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해외 법제 현황에 대한 소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상적으로 잊혀질 권리라는 주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는 것이 주를 이루어서 잊혀질 권리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잊혀질 권리라는 독자적인 권리 개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법제적 측면을 살펴보고, 잊혀질 권리에 관한 국내의 법제적 측면을 분석하여 우리 법제 하에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을 검토 하고, 국내 도입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유럽의회가 2011년 7월 6일에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합적 접근”을 의결하면서 잊혀질 권리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2

년 1월 25일 EU 일반정보보호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발표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EU 규정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요소로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삭제 및 확산방지에 관한 권리를 핵심으로 하며, 그 상대방에게는 삭제 등의 의무, 제3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한다. 둘째,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달성, 수집에 대한 동의의 철회, 보존기간의 도과 등의 사유가 있는 개인정보로 한정된다. 셋째,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공중보건이나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번 EU의 입법안은 2014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근본가치로 했던 EU와 달리 미국은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근본가치로 강조하며, ‘개별법령의 결합(patchwork)’방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최근 발의한 ‘아동 추적금지법(DO Not Track Kids Act of 2011)’은 COPPA(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상의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의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 보안을 돕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EU에서 고안된 온라인에서의 잊혀질 권리와 유사한 개념인 ‘Eraser Button’을 인터넷 사이트에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확실히 미성년자가 그들이 온라인상에 남긴 당혹스러운 사실에 의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 의회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온라인 추적금지법(Do not track bill)’을 입법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정보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잊혀질 권리’가 내포하는 권리의 가치를,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인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권리가 침해된 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을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서) ‘잊혀질 권리’의 주요 기능인 삭제 및 정정과 관련한 내용이 일정 부분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이 일부 보장받고 있으나 인격권이나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훼손 및 침해사실을 객관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신이 공개한 정보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법률상의 법리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의도치 않았던 과거 개인의 행적을 타인이 들춰내어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정보유통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의한 삭제 요청 및 제44조의 7에 의한 불법정보, 허위사실의 유통금지에 따른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격적 보호법익의 훼손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보호규범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의무자 혹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하여금 개인이 기록되고 잔존하지 않길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를 파기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무한히 전파되지

나 저장되어 유령처럼 남아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요청되어야 한다. 망각되길 원하는 이용자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는 정보 등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자의 조치의무 실효성 담보를 위한 처벌규정을 검토, 이용자의 신청이나 청원 등을 통해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신청 및 명령 일련의 절차 규정 등을 신설해야 한다.

국내의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ENISA(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존하는 검색 및 삭제 등에 관한 기술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간 동안 권한 없이 복사되거나, 한번 만료된 데이터가 권한 없이 복사되어 재유통되는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잊혀질 권리’를 현실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본인의 흔적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인 자살기계([www.suicidemachine.org](http://www.suicidemachine.org)), 세푸쿠([www.seppukoo.com](http://www.seppukoo.com)) 등은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 대행서비스의 경우에도 본래 기록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장애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제도적 규율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오랜 기간 남겨질 뿐만 아니라, 그 전파와 유통 또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디지털과 온라인 중심의 사회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과 다른 형태의 위험과 불안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의 정보까지 타인에 의해 공개되고, 제한 없이 전파되도록 하는 불안함을 조성하여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정보의 제공자 혹은 주체입장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던가, 개인정보의 무한확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 또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므로 ‘잊혀질 권리’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단순히 확장된 보호범위를 포괄하는 법령의 정비뿐만 아니라 해당 입법목적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 목 차

### 제 1장 서론

- 제 1절 연구목적
- 제 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제 2장 잊혀질 권리의 의의 및 법적성질

- 제 1절 잊혀질 권리의 의의 및 내용
- 제 2절 잊혀질 권리의 법적성질 및 논의 필요성

### 제 3장 주요 선진국의 ‘잊혀질 권리’ 관련 법제화 현황

- 제 1절 EU
- 제 2절 미국법상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

### 제 4장 국내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법제화 현황

- 제 1절 국내 현행법 하에서의 ‘잊혀질 권리’
  - 1.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요구권
  -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요구권
- 제 2절 잊혀질 권리의 국가 간 법제 비교 및 추진현황

### 제 5장 ‘잊혀질 권리’ 국내 도입 방안

- 제 1절 ‘잊혀질 권리’의 논의 쟁점 및 실현 가능성
- 제 2절 ‘잊혀질 권리’의 국내도입방안 검토
- 제 3절 ‘잊혀질 권리’의 법체계의 개선방향

### 제 6장 결론

#### ■ 참고자료 ■

## 제 1 장 서 론

### 제 1절 연구목적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기회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생성·보관·관리하는 정보나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과 확산에 따라 그러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널리 퍼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은 우리의 사회나 경제 활동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정신적 영역에 대한 피해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어디까지 어떠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국민의 법의식에 따라 다양하게 규율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유통됨으로써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sup>1)</sup>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문제는 잊혀질 권리가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해외 법제 현황에 대한 소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상적으로 잊혀질 권리라는 주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는 것이 주를 이루어서 잊혀질 권리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잊혀질 권리라는 독자적인 권리 개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하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법제적 측면을 살펴보고, 잊혀질 권리에 관한 국내의 법제적 측면을 분석하여 우리 법제하에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을 검토 하고, 국내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 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정보인권 보호차원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 잊혀질 권리에서의 정보인권 보호의 법률적 성질 검토와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국가의 ‘잊혀질 권리’의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잊혀질 권리의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1) 최근 언론보도나 논문 등을 통하여 ‘잊혀질 권리’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right to be forgotten’이라는 영어표현을 번역한 것인데, 국어 맞춤법에 맞는 표현은 ‘잊히다’를 활용한 ‘잊힐 권리’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잊혀지다’라는 말이 어색함 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가 오히려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줄이고자 종래의 용어법에 따라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국어 맞춤법에 맞게 ‘잊힐 권리’라는 표현의 사용을 권한다.

법률적 분석과 실현가능성을 살펴보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고찰한다.

둘째,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국가의 ‘잊혀질 권리’ 인권보호 법률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인권보호 법률체계와 도입가능성을 살펴본다.

넷째, 우리나라 ‘잊혀질 권리’ 인권보호 법률체계의 분석을 통한 실현가능성 검토와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국가와 우리나라의 정보인권 현황으로서의 ‘잊혀질 권리’를 법률적 체계에서 살펴보고, 기존 국내의 정보인권보호체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 보호체계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내에 ‘잊혀질 권리’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인권보호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상의 정보처리자라는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신문기사, 잡지 등의 언론매체, 논문, 인터넷 등을 통한 문헌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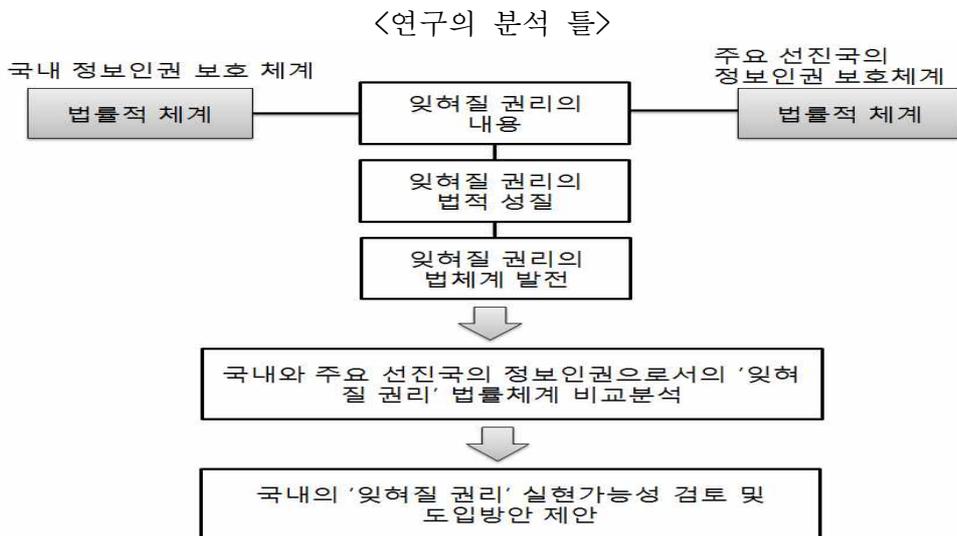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기사, 그리고 정보인권에 관한 논문과 법원의 판례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을 도서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2) 여러 인권단체의 방문을 통한 피해 사례 연구조사.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인권침해에 관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관의 방문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온라인상 인권침해 문제점의 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실제적인 정보처리자의 정신적 피해에 관한 점을 조사할 것이다.

3) 법률 전문가와 만남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한 조사.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잊혀질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현실적 법률안에 대한 조사를 한다.



## 제 2장 잊혀질 권리의 의의 및 법적성질

### 제 1절 잊혀질 권리의 의의 및 내용

#### 1. 잊혀질 권리의 의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며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차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2011년 EU에서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포괄적 접근에서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들의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 2. 잊혀질 권리의 내용

‘잊혀질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사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sup>2)</sup>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자기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자기정보열람청구를 받으면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자기정보를 열람한 후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정청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정확성·합목적성·완전성·현재성이 결여되었다는 정보주체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정정하여 사실을 통지하거나 정정청구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거부이유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인정보정정청구권). 본인으로부터 수집한다는 원칙에 위반하는 정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직무상 불필요하게 된 정보, 정보수집 후 오랜 기간에 경과한 과거의 정보, 그 현재성을 결여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는 삭제청구권을 갖는다.(개인정보삭제청구권).

2012년 1월 발표한 EU의 데이터보호지침 개정안<sup>3)</sup>에서는 제3장을 수정 및 삭제로 명명하고

2)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3)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3개의 조문을 통해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5년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파기 및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만 정정·삭제 요구권을 인정하였다. 2012년 EU의 데이터 보호지침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묻지 않고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보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합리적 조치,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조치를 동원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로부터 링크, 복제, 복사한 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가 있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 하였다. 더불어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내부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개인정보의 삭제를 위한 기간의 설정과 개인정보 보존의 필요성의 정기적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첫째, 특정분야와 특정상황에서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를 위한 기준 및 요건의 제정. 둘째, 공중통신서비스로부터 개인정보의 링크, 복제, 복사 삭제를 위한 조건의 제정. 셋째, 개인정보의 삭제 대신 처리 제한시의 처리 제한의 기준 및 요건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럽위원회에 부여하였다.

## 제 2절 잊혀질 권리의 법적성질 및 논의 필요성

### 1.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질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도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Privacy)에 기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EU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 1) 프라이버시의 연혁

프라이버시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Thomas Cooley 판사가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라는 표현으로 시도되었으며, 1890년 Warren & Brandeis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논의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Warren 과 Brandeis는 보통법을 통하여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법,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하고 정면으로 내세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25,1,2012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개념은 기존의 재산에 대한 권리로 개인의 땅과 가축에 대한 소유를 보장하는 개념의 법체계에 비하여 새로운 것이며,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형태로 정의 내리기는 힘들지만, 저작권법이나 명예훼손법의 범위에 단순히 포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여 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하는 상황이 실제로 도출되면서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투약목록을 행정기관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뉴욕주법에 대한 1977년 Whalen v. Roe판결<sup>4)</sup>이었다. 이 판결에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사적인 일에 관하여는 분별없이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정보통제권으로서의 권리성과 사적인 일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자율권으로서의 권리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이들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는 권리가 프라이버시의 권리라고 하였다.

정보화가 급진전하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관념이 시장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향을 갖게 되면서 프라이버시권이 양도 가능한 권리로 이해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정보프라이버시의 취급이 달라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보호가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정보화 사회가 가져올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자기정보통제권)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들은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이 가지는 소극적인 성격을 비판하고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재구성하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는 프라이버시는 흔히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프라이버시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재의의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정보프라이버시는 필수요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프라이버시는 헌법상 인격권인 프라이버시와 구별되며, 자기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된다<sup>5)</sup>. 각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표된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데에서 이전과 다르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기관에 제공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표현의 자유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71년 Steinmuller가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개인이 어떠한 개인정보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4) Whalen v. Roe, 429 U.S. 589(1977).

5) 서계원,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공법학회, 「세계헌법연구」 제11권 1호, 2006.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이해하였고,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확설로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3년 인구조사판결<sup>6)</sup>에서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인격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출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언제, 어떠한 범위 안에서 개인의 생활관계가 공개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의 개인적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과 결합한 기본법 제2조 제 1항의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인구조사는 원칙적으로 인격의 침해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인구조사법 제9조 제2항의 통제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관련 국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 규정, 제9조 제2항의 특정한 행정목적(통계목적)을 위하여 인구조사와 관청에 신고된 개인기록과 결합을 통한 행정행위는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범위를 일탈하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3) 프라이버시와 인격권<sup>7)</sup>

인격권(personal rights)이라는 것은 고유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 받을 권리이며, 고유한 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프라이버시권은 나에게 관한 것이 투명하게 외부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은둔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각각 다른 형태로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하는데, 인격권의 경우 타인의 신분을 위조하거나 해당 인물의 성품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원에 관한 표명을 함으로써 침해가 발생하고, 프라이버시의 경우 사적인 사실에 관하여 대중에게 폭로 혹은 공표함으로써 침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분은 '잊혀질 권리'가 인격권의 하위범주에 있다는 개념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망각될(잊혀질) 권리는 데이터 보호(절차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핵심적으로 추구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정체성에 관한 관심(실체적인 것)은 개인적 권리 혹은 인격권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를 소유한 개인을 위한 권리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삭제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관심의 집중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의 개념화를 발전시키고 강조한다. 또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권리뿐만 아니라, 과거의 본인

6) BVerfGE 65, 1.인구조사법에 의하여 1983년 예정되어 있던 독일 전역에서의 인구조사를 앞두고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기술에 의해 개인의 인격이 송두리째 국가나 타인의 손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독일국민들 사이에 팽배하였고, 마침내 일부 시민들은 동 법률의 규정들이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일반적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동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인구조사법은 제 1조 내지 제 8조에서 조사의 프로그램과 조사실시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는 조사관 정보의 사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었다.

7)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의의와 한계-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 10권 제2호, 2011.09, 8면; 정상조, 권영준,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 제 58권 제3호 통권 630호, 2009, 참조.

자신으로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격권에 중심을 둔 프라이버시의 보장으로서 ‘잊혀질 권리’는 단순히 공공의 영역으로부터의 회피나 은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체성의 표현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해당 주체가 원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 2. 논의 필요성

잊혀질 권리를 새로운 독자적 권리로 자리매김하던 기존의 권리의 집합체를 단순히 칭하는 관념으로 사용하던 잊혀질 권리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부각되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쉽게 처리되고 유통되며, 유통과정에서 일반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집적되거나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피해가 특정계층의 제한된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개인에게까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허용함으로써 더 이상 개인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삭제청구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잊혀질 권리 관련 주요 사례 >

구분	주요내용
위키피디아 살인범 기록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판결되어 15년 징역형을 마친 2명의 독일인이 위키피디아에 해당 사건 검색 시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위키피디아를 상대로 소송제기</li> <li>독일법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판결 (2008.1.)</li> </ul>
구글 기사색인 삭제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을 통해 집주소가 검색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 대학 시절 체포경력 등 90여명이 구글에 검색되는 자기정보를 삭제하라는 청구의 소송제기</li> <li>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구글에 원고들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80여건의 기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림 (2011.3.)</li> </ul>
방송·출판 등을 통한 범죄경력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위스 연방법원은 1939년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범죄인의 사연을 TV다큐멘터리로 방영하지 못한다고 선고 (X v. société de RAdio et de Télévision, BGE 109 II 353,1983)</li> <li>전문직업인 범죄(white-collar-crimes)로 유죄판결을 받은 CEO가 자기의 과거행적으로 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 유죄판결과 관련 원고의 이름을 출판하는 것은 더 이상 공익이 아니며 갱생이라는 목표에도 반한다고 판시 (RAG v.W., BGE 122 III 449,1996)</li> </ul>

\*참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잊혀질권리의 법적쟁점과 개선방향」, 법제연구10호, p5. 2012.10.

## 제 3장 주요 선진국의 ‘잊혀질 권리’ 관련 법제화 현황

### 제 1절 EU

#### 1. ‘잊혀질 권리’ 관련 법제의 발전과정

EU는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며 EU 국가 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24일 “개인 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95/46/EC)”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독립된 감독기구의 의무적 설치 및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EU 수준으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1997년 12월 5일의 “정보통신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97/66/EC)”를 채택하여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이나 공공디지털이동네트워크(public digital mobile networks)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기본적 인권과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의 균등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고 EU에서의 데이터와 통신설비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도록 각 회원국 규정들 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9년 2월에는 “정보고속도로에서 신상정보의 수집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지침(Recommendation No R (99) 5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information highways])”을 채택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써 개인정보를 합법적이며 공정하게 이용하고 데이터의 통합성·기밀성·네트워크의 보안을 보장하며 개인정보의 은밀한 수집, 기록 또는 국가 간 전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2년 7월에는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유럽의회 및 유럽위원회 지침(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sup>8)</sup>을 채택하여, 쿠키나 스파이웨어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침해위험을 야기하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8) Official Journal L 201, 31/07/2002 P. 0037-0047

규제도 인정하였다.

최근 2011년 7월 6일에 유럽의회가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합적 접근”을 의결하면서 잊혀질 권리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2년 1월 25일 EU 일반정보보호규정(안)<sup>9)</sup>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안)<sup>10)</sup>을 발표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EU차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노력은 1995년 EU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정한 이후 16년여 만이다. 더욱이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지침의 전면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EU회원국의 국내에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규정(regulation)도 함께 추진된다는 점이다. EU법체계 하에서 규정은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매우 강력한 규범이고, 규정이 발효되면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국내법을 EU규정에 일치시키는 입법을 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입법안은 2014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 EU의 ‘잊혀질 권리’의 내용

EU 규정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요소로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삭제 및 확산방지에 관한 권리를 핵심으로 하며, 그 상대방에게는 삭제 등의 의무, 제3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했다. 둘째,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달성, 수집에 대한 동의의 철회, 보존기간의 도과 등의 사유가 있는 개인정보로 한정된다. 셋째,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공중보건이나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장할 수 없다.

### 1) 개인정보의 삭제 및 확산방지에 관한 권리

#### ① 원칙

정보주체 (the data subject)는 정보처리자(the controller)에 대하여 정보(the data)가 i) 수집·처리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ii)정보주체가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했던 저장기간이 만료된 때, 그리고 정보의 처리를 위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iii)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iv)정보의 처리가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 규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personal

9)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L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0)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L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prevention investigation, detection or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or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data)의 삭제 및 확산방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제17조 제1항)

② 예외

정보처리자는 삭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하나 다만 i)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거나, ii)공중보건의 영역에서 공익을 위하여, iii)역사적·통계적·과학적 연구목적을 위하여, iv)자국민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에 관한 법적의무의 충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 제3항)

2) 개인정보의 처리제한과 예외적 처리

정보처리자는 ①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②수집목적의 달성으로 더 이상 개인정보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입증을 위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③개인정보의 처리가 불법이나, 정보주체가 삭제를 반대하고 대신 그 이용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④정보주체가 다른 자동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삭제 대신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4항)

처리가 제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입증의 목적, 다른 사람(자연인/법인)의 권리보호,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저장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제거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제5항 및 제 6항)

3) 제 3자에 대한 통지의무

개인정보의 삭제 및 확산방지의 요구를 받은 정보처리자는 공개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로부터 링크·복사·복제에 대한 삭제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공개를 허가한 때에는 그 공개에 대한 책임은 정보처리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7조 제3항)

‘잊혀질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 17조에서 각 항에서 정한 이유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부 상황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된다는 것이며 제 16조에서는 부정확한 정보의 시정 혹은 사실 변경에 따른 수정요청에 관한 내용이다. 제 18조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제 16조 수정할 수 있는 권리**

정보주체는 처리자로 하여금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보주체는 정확한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불완전한 개인정보의 완료(온전한 상태로의 이행)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 17조 잊혀지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

1.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특히 정보주체가 아동인 기간 동안 접근이 가능하였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전파를 방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a) 해당정보가 그 수집 또는 처리 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b) 정보주체가 제6조 제1항 (a)호에 따른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c) 정보주체가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 (d) 개인정보의 처리가 동 법안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위반되는 경우
2. 제 1항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공개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 또는 복사본을 모두 삭제하도록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합리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의 공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해당 개인정보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삭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제 80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 (b) 제 81조에 따른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 제93조에 따른 역사적, 통계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d)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따른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법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률이)추구하는 적법한 목적과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
  - (e)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
  - (a)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검증할 수 있는 기간 중 정보주체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b)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더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없으나 입증의 목적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
  - (c) 개인정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삭제를 반대하는 대신 처리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 (d) 정보주체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장치로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5. 제 4호의 개인정보는 보존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입증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6. 제 4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가 제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확실한 삭제 및 개인정보의 저장 필요성에 관한 정기적 검토를 위하여 설정한 시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8. 삭제가 완료된 이후 개인정보처리자는 (여하의 다른 방법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 최경진,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정보법학」 제16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 p58~ p63

#### 4) 처벌규정

데이터보호지침 개정안 제 79조 제5항에서 감독기관은 고의 과실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특히 제 17조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혹은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일정한 기간 안에 이를 보장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복사, 복제 또는 링크의 삭제 요청 시 해당정보를 처리·취급하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필수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는 500,000유로, 기업에게는 연 매출액(전 세계 대상)의 1%까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EU 내에서 수집·가공되는 개인정보, EU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 EU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 등으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제 2절 미국법상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

### 1. 서언

최근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나, 미국의 인터넷 관련 회사들에게는 동 권리의 발전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Viviane Reding (European Commissioner for Justice, Fundamental Rights and Citizenship; former Commissioner for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은 EU에서의 사생활보호 발전에 있어 대변자 내지 옹호론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는 2010년 6월의 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모임에서 자신의 직무상 지상과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와 통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온라인상에 올려놓은 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이를 수정, 철회,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제권을 ‘잊혀질 권리(a right to be forgotten)’라고 명명하면서, “EU에서 운영되는 모든 회사들은 데이터 보호와 사생활 영역에서 EU의 높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관련 사생활 보호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매우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그러한 차이는 여전히 상당부분에 있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본권의 보호에 있어 유럽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부개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사생활보호법은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대중적(reactive)’ 방법과 주/연방 제정법 및 보통법상의 법리로 구성되는 ‘개별법령의 결합

(patchwork)’방식으로 발전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사생활보호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 가치로 더욱 강조하여 왔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존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미국의 사생활보호법의 발전과정을 검토해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법체계를 살펴보고 미국의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 2. 법률체계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은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이 없는 대신 각 분야별 개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는 개별법주의의 법률체계를 갖고 있다. 이를 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최고로 입법한 1974년의 「The Privacy Act of 1974」가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금융, 전자통신 등 각 분야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응과 접근이 용이한 반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해당 분야의 관련 업계나 이익단체의 영향을 받기 쉬운 단점이 존재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법, 집행, 평가에 기반을 두되 이러한 기능들이 민간부문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자율규제’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유도하는 것만 정부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 3. 미국법상 ‘잊혀질 권리’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네트워크 세계에서의 소비자 정보프라이버시: 글로벌 디지털경제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프라이버시권리장전(A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의 권리 및 그에 대응하는 기업의 의무를 설정하고, 이 권리장전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개인정보(특정 개인과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 권리장전에서는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특히, 기업은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확실히 폐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확실히 폐기하거나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Edward Markey(D-Mass)와 Joe Barton(R-Texas) 하원의원이 최근 2011년 ‘아동추적금지법(DO Not Track Kids Act of 2011)’을 발의하였는데, 이 발의는 COPPA(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상의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의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 보안을 돕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EU에서 고안된 온라인에서의 잊혀질 권리와 유사한 개념인 ‘Eraser Button’을 인터넷 사이트에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확실히 미성년자가 그들이 온라인상에 남긴 당혹스러운 사실에 의해 나중

에 후회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 의회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온라인 추적금지법(Do not track bill)’을 입법추진하고 있고,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인 Jackie Speier가 2011년 2월 발의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애플·야후와 같은 모든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활용을 할 때 소비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온라인추적금지법(Do not track bill)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온라인추적방지법안에 의하면 타겟광고를 위하여 이용되는 온라인 추적으로부터 소비자가 옵트아웃(opt-out)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 4 장 국내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법제화 현황

### 제 1절 국내 현행법 하에서의 ‘잊혀질 권리’

우리 현행법은 정보처리자로 하여 정보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확산방지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 1.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요구권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제 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4항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제 1항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삭제요구권을 통해 발현하고자 하는 ‘잊혀질 권리’의 취지와는 그 목적이 다르며 언뜻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 36조에서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규정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제 37조에 따라 처리의 정지 또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에 의해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예외사유<sup>11)</sup>는 범

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EU정보 보호 규정(안)과 유사한 면이 존재한다.

우리 현행법하의 이러한 규정들은 각각 개인정보 삭제 요구·처리 제한 및 삭제·처리 제한요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EU 정보보호규정(안)의 ‘잊혀질 권리’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범위가 다르며 삭제 및 정정요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유럽에서 말하는 ‘잊혀질 권리’와 완벽히 일치하는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개념을 우리 현행법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정들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2)</sup>

### 〈EU와 우리나라의 삭제청구(요구)권에 대한 예외비교〉

	EU 일반정보보호규정(안)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b>잊혀질 권리 혹은 삭제청구권에 대한 특경제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의 자유(언론, 예술, 문학)</li> <li>• 공공보전</li> <li>• 역사, 통계, 과학 연구</li> <li>• 개인정보처리제한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li> </ul>
<b>일반적 적용제외 (법의 적용범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연합 법률의 범위 외의 활동 과정중의 개인정보의 처리,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활동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li> <li>• 유럽연합기관, 기구, 관청 등에 의한 처리</li> <li>•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 2장의 범위 내의 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회원국의 개인정보처리</li> <li>• 개인적 또는 개정 내의 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회원국의 개인정보의 처리</li> <li>• 범죄 행위의 예방, 조사, 수사, 기소 또는 형사 처벌의 집행을 위한 주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lt;통계법&gt;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li> <li>•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li> <li>•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li> <li>•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보도, 선교, 선거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li> </ul>

\*참고: 최경진, ‘잊혀질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정보법학」 제 16권 제 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 p115

11)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제1항)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12) 삭제요구권 등은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과 관계없이 자신과 관련된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잊혀질 권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넓은 의미의 잊혀질 권리로 보기도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한국인터넷윤리학회, “잊혀질 권리의 법적쟁점과 개선방향”, 법제연구10호, 2012, p87

정보의 확산 방지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보가 수집되거나 처리되는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정보주체가 정보의 처리를 반대하는 경우 등 제17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의 삭제 및 확산방지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삭제 또는 확산 방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취급하는 제 3자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진단). 또 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정보의 공개를 허용할 경우 귀책사유는 정보처리자에게 있게 된다.(제2항 후단).

기존 EU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이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한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을 규정한 데 비해<sup>13)</sup> 광범위한 제한 범위를 둔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 즉, EU 정보보호규정(안)은 특별히 정보를 보존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예를들어 규정(안) 제 83조, 정보의 역사·통계·과학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처리)<sup>14)</sup>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에서 더욱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잊혀질 권리 및 삭제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제37조제1항).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없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3) Directive 95/46/EC, Article 12(b); as appropriate the rectification, erasure or blocking of data the processing of which does no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incomplete or inaccurate nature of the data.

14)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rticle 83; Processing for historical, statis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 제 2절 잊혀질 권리의 국가 간 법제 비교 및 추진현황

최근 EU가 보다 향상된 개인정보보호입법(안)을 제시하였지만,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특정 예외는 EU보다 좁아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잊혀질 권리의 국가 간 법제 비교〉

	개인정보삭제요구권	개인정보처리제한	삭제요구에 대한 예외 인정
EU 일반정보보호규정(안)	◎	○	○
미국 권리장전	○	△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	○	○
한국 정보통신망법	△	×	×

-◎ : 확실하게 보장, ○: 보장, △: 중간, ×:보장하지 않음

\*참고: 최경진, ‘잊혀질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정보법학」 제 16권 제 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 P18~P19

〈 각 국의 ‘잊혀질 권리’ 추진현황〉

구분	주요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안)(Proposal for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2012.01.25.)</li> <li>제 17조에서 ‘잊혀질 권리’ 규정: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디지털 시대 사생활 보장 관련 법안(del loi visant a mieux garantir le droit a la vie privee a l'heure numérique, text n° 93(2009~2010):주요내용 중 잊혀질권리에 관한 연구 포함</li> <li>정부 캠페인을 통해 ‘소셜네트워크 및 검색엔진에서 잊혀질권리에 관한 실천규약(Charter du Droit a l'oubli dans les sites collaboratifs et les moteurs de recherche)’ 채택(2010)</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라이버시권’은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Griswold v. Connecticut, 381U.S.479(1965))</li> <li>방해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에서 적극적 선택이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li> <li>이러한 ‘프라이버시권’에 ‘잊혀질 권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li> <li>오히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와의 갈등이 더 큰 쟁점으로 부각</li> </ul>

\*참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잊혀질 권리의 법적쟁점과 개선방향」, 법제연구10호, 2012.10, P 19~20

## 제 5 장 ‘잊혀질 권리’ 국내 도입 방안

### 제 1절 ‘잊혀질 권리’의 논의 쟁점 및 실현가능성

#### 1. 논의 쟁점

‘잊혀질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가 인터넷상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요구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가 기존의 다른 기본권 들과의 충돌 문제 등이 있으며,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잊혀질 권리를 명확히 어떠한 권리로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잊혀질 권리를 현실적으로 그 보호목적에 맞게 실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는 법 제적 측면과 기술적인 부분에 의한 한계점발생으로 논의되기도 하는데, 즉 ‘잊혀질 권리’의 법적 측면을 완전히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 잊혀질 권리 도입 시 논의 쟁점 >

구분	논의쟁점
제1유형 개인정보 삭제요구권	• 사망한 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디지털유산
	• 현재 살아 있는 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2유형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언론에 게재된 개인에 관한 기사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 기사삭제요구권
	•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타인의 글에 대한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 게시글삭제요구권

\*참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잊혀질권리’의 법적쟁점과 개선방향, 법제연구 2012-10, p11

#### 1) ‘삭제’의 범위 문제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개인관련 정보를 삭제요청한 경우 삭제할 의무를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며, 최근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면서 ‘삭제’를 권리로써 요구하거나 의무에 따라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이에 따라 원정보부터 파생된 정보들 혹은 관련 정보들까지도 삭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삭제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 및 콘텐츠 등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유형이 생성되면서 정보가 정보

주체의 통제 안에 완벽히 포섭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의 생성 또는 복제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를 통해 퍼지기도 한다. 따라서 어떠한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현 상황에 이를 ‘삭제’의 범위에 모두 포함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삭제의무를 정보처리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정보가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범위가 설정되고 ‘잊혀질 권리’의 적용을 받아 ‘삭제’의 대상이 될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언급한 ENISA(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의 보고서<sup>15)</sup>는 이러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기술적 한계점들을 언급하면서 ‘잊혀질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정의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면을 언급한다. 특히 EU 정보보호규정(안)이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게 정의<sup>16)</sup>하면서도 이에 결합 가능한 원본 데이터에 결합하는 형식 혹은 파생된 정보까지 ‘잊혀질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술적 한계점들을 언급하면서 정보자료의 ‘삭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해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sup>17)</sup>

- A. 엄격한 해석에 따르면, 모든 데이터 사본들은 알려진 기술적 수단에 의해 모든 유래된 또는 파생된 표현은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삭제되어야 한다.
- B. 보다 관대한, 좀 더 실용적인 해석은, 허가되지 않은 자들이 해독할 수 없을 정도로 암호화된 데이터의 사본이 남아있는 것은 허용한다.
- C. 더 관대한 해석법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공공인덱스 (Public indices)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텍스트의 복사본이 남아있는 것을 허용한다.

## 2) ‘삭제권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한 문제

‘삭제’의 범위에 관한 문제 외에도 ‘잊혀질 권리’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수 정보주체가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 공간에 게재할 때에 다수의 관련인 중 1인이 해

15) ENISA, “The right to be forgotten-between expectations and practice”, 2011.

16) ENISA, “The right to be forgotten-between expectations and practice”, 2011, p6 이하에서는 EU 정보보호규정(안) 제4조는 ‘정보주체( data subject)에 대하여 관리자 또는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해, 특히 자연인의 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에 대한 조회 또는 그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서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 등에 특유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에 대한 조회에 의해 확인된 자연인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personal data)’란 그러한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어 이는 개인정보를 결합 가능한 정보 즉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정보주체)을 특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연결된 정보로 보아 그 범위를 넓게 정의한다는 평가를 가한다.

17) ENISA, “The right to be forgotten-between expectations and practice”, 2011. p7~ P8

당 단체사진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누군가가 게재한 게시물을 다른 소셜서비스 상에 인용하여 게시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유럽에서는 또 이와 연결된 문제로 언론, 역사, 과학연구 등에 대한 공중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잊혀질 권리’를 제기하는 경우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결정권을 갖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보에 여러 명의 정보주체가 관련된 경우로 ‘잊혀질 권리’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면 타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보주체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절차적 측면을 생각하면 정보주체로부터 일정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은 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들에게 정보의 삭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임시차단제도 등을 도입해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될 정보들을 차단·조치하여 ‘잊혀질 권리’를 우선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는 우리 정보보호법제 및 유럽의 정보보호규정(안)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처리관련 조항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의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면 ‘잊혀질 권리’를 우선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3) 새로운 권리인가, 기존의 권리의 집합체를 칭하는 명칭인가?

‘권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권리법력설, 통설)으로 재판·조정 등을 통한 공적구제가 가능하다. ‘잊혀질 권리’는 기존에 ‘권리’로 인정된 부분과 현재 ‘권리’로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다. 또한 기타 행위주체의 행위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잊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과연 권리의 수준에 달하는 정도의 법적 힘을 부여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 2. 실현 가능성 (ENISA의 보고서에 따라)<sup>18)</sup>

이러한 ‘잊혀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중 가장 큰 한계점으로 언급되는 것은 기술적 수단의 문제점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적 문제점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위 ENISA의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 1)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그것들이 저장된 곳에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줄 것인지의 문제.
- 2) 정보아이템으로부터 파생된 정보의 모든 사본과 아이템의 모든 사본을 추적할 수 있게 할 것인지의 문제.

18) ENISA(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보고서, p8-p9 참고.

- 3) 정보 아이템을 삭제하라고 요청할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정할 것인지의 문제.  
 4) 권한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아이템의 파생된 사본들 또는 모든 아이템을 삭제한 것의 효과를 줄 것인지의 문제.

나아가 이러한 기술적 한계점은 특히 오픈된 인터넷 공간에서 두드러지는데 이와 같은 완전 개방형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정보 아이템의 사본을 만들 수 있으며 임의의 위치에서 저장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개방된 전 세계적 오픈시스템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효력을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본인의 흔적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인 자살기계([www.suicidemachine.org](http://www.suicidemachine.org)), 세푸쿠([www.seppukoo.com](http://www.seppukoo.com)) 등은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 대행서비스의 경우에도 본래 기록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장애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제도적 규율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제 2절 ‘잊혀질 권리’의 국내도입방안 검토

‘잊혀질 권리’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들이 광범위한 공간에 개인정보주체의 통제 하에 포섭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성되는 만큼 기존의 헌법적 기본권만으로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파생된 헌법적 기본권으로 볼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다만 이를 입법현실화 하려다 보니 위의 기본권 충돌문제 이외에도 ‘잊혀질 권리’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이를 ‘삭제’한다는 것 자체의 정의가 불분명한 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들 또한 발생한다. 이에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잊혀질 권리’를 통한 삭제 범위 명확화

삭제의 범위가 불분명함 혹은,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의 불분명함에 대하여는 원본 정보와 파생된 정보 혹은 원본정보를 인용하여 다른 정보주체의 가공을 가한 경우 등 정보가 생성되는 경로는 무수하지만 포괄적으로 ‘삭제’할 것을 규정하다 보면 정보처리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체적인 입법화를 통해 ‘잊혀질 권리’를 통한 삭제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sup>19)</sup> 이와 연결선상으로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 않을 예외적인 정보에 대한 범위 확정 또한 명확성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범위 및 의무, 그리고 그러한 사

19) 조소영, “잊혀질 권리-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12, p454

용에 대한 책임이 명확한 경우가 아닌 오픈된 광범위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파생된 정보에 대한 삭제의무를 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하는 경우 각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파생정보에 대하여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명확한 책임범위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삭제권자’의 명시

한 가지 정보에 여러 명의 정보주체가 관련되는 등 ‘삭제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일방의 정보주체가 정보를 소셜 등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 각 정보주체 간 합의에 따라 ‘잊혀질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사인간의 관계에서 옳은 방식이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조정의무를 부여하여 ‘잊혀질 권리’ 및 타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중 어떠한 권리를 실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정보에 대한 여러 정보주체들 간의 조정 문제를 정보처리자의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임에도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 3.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및 보완 사항 검토

### 1) 개인정보의 범위확정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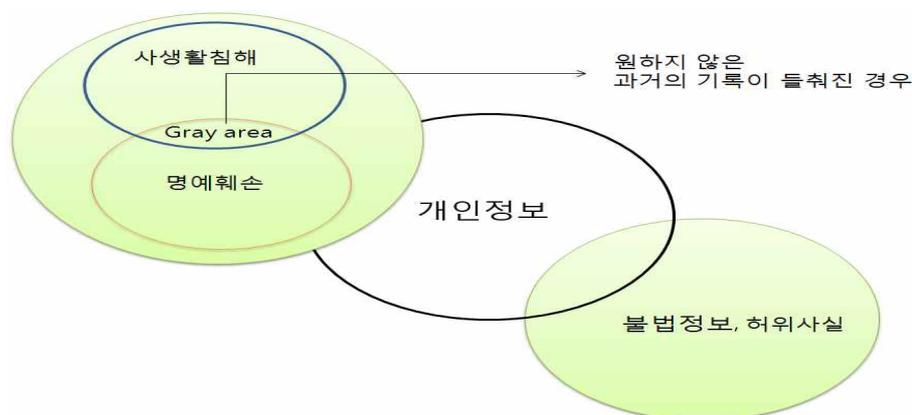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가 국가영역인지 민간영역인지, 수집에 동의가 있었는지, 수집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이라 하여 제한행위 역시 한정해 놓고 있지 않다. 결국 수집의 목적이 없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을 통하여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난다면 이도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고,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실정법의 보호범위로

부터는 배제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격권 보호 영역의 부재 혹은 불명확성

재산적 가치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재산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정신적 자유와 권리 등을 인격적 가치로 보고 그에 대하여 넓게 권리성을 인정하는 사법상의 (일반적) 인격권개념과 달리 수많은 자유와 권리를 이미 개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서는 ‘인격권’이라는 이름하에 그보다 훨씬 좁은 범위의 인격적 법익에 국한하여 기본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헌법상 인격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좁은 범위의 인격적 보호법익들에 대하여 독일은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보호조항과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인격의 자유발현권 조항을 근거로 일반적 인격권 (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을 구성하여 보호하고, 미국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판례법으로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을 발전시켜 보호하고 있다.<sup>20)</s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를 살펴보면, 독일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개념이 기타 권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기타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 적시하고 있어, 언뜻 미국 헌법상 인격권의 보호 체계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보호의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의 보호 근거를 살펴보면,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임을 적시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근거로서 인격권의 보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이용자보호 관련 보호법익의 구분>



\*참고: 최경진, 잊혀질권리-개인정보관점에서, 2012, p142

20) 김선택, “헌법상 인격권의 보장체계와 보호법익”, 「헌법논총」 제19집, 2008, p409-491

그러한 이유에서 최근에 불어지고 있는 과거의 개인의 행적이 복합적으로 집적되어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들이 타의에 의하여 공개되는 등 사실상의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 등의 경우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의 범주로 포괄하기 어려운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개인이 공적 영역에 있거나,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 들춰진 사실이 공개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보호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 보장에 있어 불분명한 영역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3)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개인정보주체)의 보호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44조의 2에서는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기타 권리의 침해를 야기하는 정보의 공개 유통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사실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제44조의 10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통하여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제 44조의 7에서는 음란물, 허위사실,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사이버경찰청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보보호 지원 전담기관에 신고가 가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으로 유통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기타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는 그 피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혹은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인격권 형성에 장애를 유발하는 정보의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소명 사실에 대한 당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능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인격권 형성에 장애를 유발하는 정보의 경우 이에 대한 이용자의 보호측면에서도 추가적인 대응이 요청된다는 것은 앞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 및 ‘잊혀질 권리’의 수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인격권 형성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삭제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거나, 국민들의 알권리가 축소되는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전가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침해 사실이 신속하게 전파되어 피해의 정도가 확대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유형의 문제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거나 온라인 아카이브(archive)에 잔존하던 정보를 타인이 들춰내어 공개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삭제 요청을 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창구를 직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마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자유로운 영업행위의 영위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악용될 경우 행정규제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는 공정한 지위에 있는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해당 정보의 삭제여부(결국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개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와 관련하여서는 사법심사에 준하는 심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10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마련하여 구체적 사건들에 대해서 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격권 형성에 장애를 유발하는 정보의 삭제 요청의 경우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담 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제 3절 ‘잊혀질 권리’의 법체계의 개선방향

#### 1. 현행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보완

2012 EU Regulation(안)의 ‘잊혀질 권리’ 일부 내용은 이미 국내법에도 규정된 상황이다. 2012 EU Regulation(안)은 정보주체가 삭제 및 확산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i) 자기 자신이 게재한 자신의 정보, ii) 링크 및 복사, iii) 제3자가 게재한 글에 자기정보 등을 포함하는 등 매우 포괄적이다. 다만 언론보도 게시물에 ‘잊혀질 권리’ 적용을 제한하는 등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 2012 EU Regulation(안)과 국내법률 비교 >

‘12 EU Regulation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정요구권	•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정요구권 (§ 30②)	• 열람 후 정정·삭제요구 (§ 36①)
•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	•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파기의무 (§ 29, § 30③) • 사생활 침해정보 등 삭제요청권 (§ 44의2)	• 개인정보 파기 의무 (§ 21) • 열람 후 정정·삭제 요구 (§ 36①)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37)
• 삭제에 갈음한 개인 정보의 처리 제한 • 링크·복제·복사의 중단·삭제 통지의 의무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참고: 민윤영, “인터넷상에서 잊혀질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고찰”, 「고려법학」 제6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P24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 개인정보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자기정보의 삭제요청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이들의 행위에 대한 특례규정 검토가 필요하다.<sup>21)</sup>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이 심리·사고에 있어서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행위가 평생 노출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잊혀질 권리’ 보장에 대하여는 성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다.<sup>22)</sup>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의견

제 1안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11(인격 침해정보의 유통제한 요청) ①이용자는 본인의 인격권 형성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기 형성된 인격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유통을 제한 또는 삭제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p> <p>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조합을 통하여 작성자의 동일성을 노출시킨 경우 조합된 개별 정보</p> <p>2. 본인이 작성한 정보가 권한없이 게시 범위를 넘어 유통·공개된 경우</p> <p>①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의 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심의결과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제 7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 7호부터 제 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6의2, 제 44조의 11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제2안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사 “삭제 등” 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p>

21) 초기 EU의 ‘잊혀질 권리’ 는 어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임.

22) 민법상 미성년자(만 18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형사미성년자(만 14세)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법에서 면제됨.

## 제2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 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 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는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⑦이용자는 제1항의 삭제 등의 요청을 제 52조 제 3항 제9호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잊혀졌으면 한다고 의도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에 따른 개인의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모든 잊혀지길 원하는 정보를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구현하는 것은 서비스되고 있는 개인의 온라인상에서의 흔적을 일괄적으로 대신하여 처분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서비스를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인이 온라인상에 남긴 본인의 의사나 표현, 본인님을 나타내는 여러 징표들에 관하여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를 향하여 해당 정보가 타인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될 수도 있으니, 모두 검색하여 삭제하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표시의 측면에서 주권을 비롯한 개인적 권리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로 초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권력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경우 즉, 제도적으로 실정법상 청구권으로 인정되는 내용은 개인의 인격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청구권의 성격은 인격권 침해의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의 성격은 인격권 침해의 사전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23)</sup> 다만, 해당 피해의 범위를 추상적 일반적 성격을 갖는 법률 문언 상으로 확정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청구권의 보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의 경우 모두 삭제요청이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에 따른 정보의 삭제 요청보다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신청의 대상을 사업자가 아닌 행정청을 향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23) 대판 1996.4.12.93다40614.40621.

국가의 역할을 확장하여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격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이용자의 경우 또한 이용자의 사회적 지위, 국민의 알권리 등과 구체적으로 조우하여 침해의 인정가능성을 타진하여야 할 것이다. 유통을 금지 혹은 삭제를 요청하는 개별정보의 대상은 의사표시한 개인의 정체성이 표시되지 않은 정보로서 관련성이 없는 서로 다른 정보들의 조합을 통해 특정한 개인의 동일성이 확보되거나 정체성이 노출되어 해당 의사표시를 한 주체로서 드러난 경우로 조합을 통하여 의사표시의 주체라는 연관성을 통한 모든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임을 드러내어 표시한 표현이라도 하더라도 유통 및 공개의 범위를 설정하였음에도 표시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범위를 넘어 공개가 확정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정지·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 2) 개정안의 한계

인격권 특히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훼손 및 침해 사실을 객관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 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sup>24)</sup>라고 판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중장하고자 하는 침해의 대상 및 보호법익이 민법 제 764조의 명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를 통한 정보의 삭제요청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법률이 이용자에게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직접 소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삭제 요청에 대한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행정청의 정책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2. 보충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권리의 법적 보장

‘잊혀질 권리’가 도입된다면 극히 제한적 요건 하에 예외적·보충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요건으로는 i)제 3자의 이해와 가분적인 경우, ii)남아있음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심히 침해될 경우, iii)다른 방안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동시에 국가나 기업이 비합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인격적 이익의 발로로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으며, 안전한 활용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규범과의 조화, 글로벌 추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 역시 세계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바 유럽, 미국 등 비교법적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4) 대판 1997.10.24.96다17851.

### 3.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이용자 보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 3항 제9호에 따라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제8항의 사무국 운영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1월18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관련 전문 상담센터인 118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18센터의 경우 해킹, 바이러스, 스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침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 및 불편과 관련 역기능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전문센터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118센터와 같은 적극적이고 이용자 편의중심의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적 행정업무와 구체적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이용자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제도적인 청구권의 확보와 더불어 행정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기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센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이용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는 전문창구를 개설하고, 전문적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심대한 침해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공개되어 있는 해당정보를 임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확정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소명 등에 관하여 상당 및 신고 접수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자의 삭제 및 블라인드 조치에 유효한 근거를 마련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이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행정기관 혹은 공공영역에서 행정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 삭제요청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사적관계에 공적역무가 개입하여 그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통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 제 6 장 결 론

기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오랜 기간 남겨질 뿐만 아니라, 그 전파와 유통 또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디지털과 온라인 중심의 사회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과 다른 형태의 위험과 불안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의 정보까지 영속하고 제한 없이 전파되도록 하는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정보의 제공자 혹은 주체입장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던가, 개인정보의 무한확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 또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므로 ‘잊혀질 권리’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록의 의미가 변화하고 인간의 삶이 온라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유한한 기억에 기반을 둔 잊혀짐 이외에 영속적인 기록에 대한 인위적 삭제 및 제거에 대한 고민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잊혀질 권리’를 도입함에 있어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와 현실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잊혀질 권리’를 온전히 기술적 수단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보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완전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핵심기반(정보의 속성이나 검색엔진 등)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실정법체계에 수용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된다.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외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리적 수단을 입법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위적 망각이 과연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 헌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잊혀질 권리’의 수용이 문제가 될 것이다. 온전한 인격권의 발현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심화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정법상 권리 창설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제가 개선하되, 확장의 한계를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다른 헌법적 가치로 두는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통해 일부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가능성을 살펴볼 때 사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이미 촘촘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상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비해서 협소한 범위의 개인정보를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과거의 개인의 행적이 복합적으로 집적되어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는 사실과 같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들이 타의에 의하여 공개되는 등 사실상의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확장된 보호범위를 포괄하는 법령의 정비뿐만 아니라 해당 입법목적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구본권 옮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지식의 날개, 2011, P96~ p1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집부, 2012, P70~P89

### 2. 학위 논문 및 학술지

서계원,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공법학회, 「세계헌법연구」 제11권 1호, 2006.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의의와 한계-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 10권 제2호, 2011, 09, p8

한국정보화진흥원, “잊혀질권리의 법적쟁점과 개선방향”, 법제연구10호, 2012.10, p5, p11

최경진,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정보법학」 제16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 p58~p63

ENISA, “The right to be forgotten-between expectations and practice“, 2011.

조소영, “잊혀질 권리-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12

EU,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1995.10. 24)

김선택, “헌법상 인격권의 보장체계와 보호법익”, 「헌법논총」 제19집, 2008, p409~491

정영화,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제39집, P567~598,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06,30

민윤영, “인터넷상에서 잊혀질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고찰”, 「고려법학」 제6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P24

### 3. 사이트

뉴욕타임스 (<http://www.nytimes.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

한국정보화진흥원(<http://www.nia.or.kr>)

#### 4. 그 외 참고자료

조선일보, 홍재희기자, “[사설] ‘잊혀질 권리法’ 필요한 단계 됐다”, 2013-06-20  
(<http://blog.hani.co.kr/hhhon/56503>)

대법원판례 (대판 1996.4.12.93다40614.40621.)

대법원 판례(대판 1997.10.24.96다17851.)

논문수상작  
**2013 인권작품 공모전**

**최우수상**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이 받는 차별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

황성민



## 요 약

1985년 국내에서 HIV 감염인이 발견된 이후 28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감염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9월 4일 질병관리본부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생존하고 있는 내국인 HIV 감염인의 수는 7,788명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011년 이후, 매해 800명이상의 새로운 감염인이 발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즉, 21세기 ‘현대판 주홍글씨’로 감염인들을 낙인 찍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제 HIV는 죽음의 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인들은 차별상황에 놓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가운데 하나는 HIV 감염인들 중에 상당수는 ‘남성 동성애자’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까지 남성 감염인들 중에 42.7%가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HIV를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천형과 같은 질병으로 생각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통계자료는 실제로 이 질병이 동성애자들에게 취약한 질병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로서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밖에 없다. HIV 감염인이라고 말했을 때 사회에서 당할 수 있는 차별과 더불어 자신이 소속해있는 동성애 커뮤니티 내에서의 소외까지 받을 수 있는 이중적 차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질문을 토대로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이 받는 차별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이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가 제시한 이론으로 대표적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일반인들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연구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상에 대한 분석적 구조를 생성 또는 발견하여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조직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확보한 심층 인터뷰를 근거이론의 3단계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해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가능한 많은 범주를 발견하고 필요한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연구 문제에 대한 정보의 초기 범주들을 파악한다. 두 번째로 축코딩 단계에서는 범주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들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논리적 도표를 사용하여 중심현상을 파악하고 인과적 조건을 구체화하여 현상의 결과를 묘사한다. 이를 통해 가설 및 이

론적 관계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에서는 해당 연구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서술하는 과정으로 이전 단계에서 발견한 범주 중 핵심 범주를 규명하고 이를 서술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 HIV 감염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관심을 표한 대상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이들과 인터뷰를 한 후 이들이 알고 지내는 감염인을 소개 받는 식의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총 7명의 연구 대상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만나게 된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고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이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있는 차별과 인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13년 4-5월 두 달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사전에 주요 질문을 이메일로 전달했으며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식사 및 다과를 함께 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본 연구의 특수성과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시끄러운 카페 또는 밀폐된 스터디룸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질문에 대답이 곤란할 경우, 대답을 거부해도 무방함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사전에 이메일로 보낸 내용을 토대로 하되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진행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녹취하여 원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의 삼단계 분석 방법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단계에서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조건들로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차별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을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HIV 교육과정에서 얻어지는 잘못된 정보로 분석할 수 있었다. 즉, HIV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는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맥락적 조건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 조건들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이를 ‘편견의 확산’으로 보았다. 하위 범주로는 ‘죽음을 강조하는 것’과 ‘HIV 감염인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의식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중심현상이란 ‘여기서 무엇을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단계로써 중심 생각이나 사건 자체가 바로 중심현상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차별 경험’이었다. 차별 경험은 의료 차별, 건강검진, 집단의 차별, 동성애자 커뮤니티내의 차별로 분류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중재적 조건이란 중심현상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면 돌파’와 ‘회피’라는 개인적 특성이 차별경험에 변화를 주는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다섯 번째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 즉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 현상인 ‘차별 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해 참여자들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결국 참여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하여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개방코딩을 통해서 도출해 낸 결과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모형화(구조화) 단계인 축코딩을 진행할 수 있었다. 즉,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이 받는 차별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HIV에 대한 잘못된 교육에서 인과적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인식’,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 ‘죽음을 강조하는 모습’이 사회에 계속 확산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바탕 아래 의료차별, 건강검진, 소속 집단과 동성애 커뮤니티내의 차별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은 차별 상황에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회피하였으나 결국 자기 자신을 은폐하는 모습으로 귀결되고 이로 인하여 무지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하여 선택코딩을 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경우, 크게 의료차별, 건강검진 문제, 소속 집단내의 차별,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 행위의 차별과 건강 검진 문제는 감염인들의 실제적, 경제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속 집단내의 차별과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차별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HIV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 이 현상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더 깊이 분석해보면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과 HIV를 ‘동성애 질환’이라고 가르치는 등 교육의 문제가 핵심에 깔려 있었다. 또한 이러한 편견을 언론 등에서는 더욱 크게 확산하여 또 다른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다. 즉, HIV 감염인들은 받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핵심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 차별 문제는 결국 함께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주홍글씨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먼저 ‘동성애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HIV 감염인들에게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생존권의 문제는 법적 장치를 통해서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이 받는 의료적 차별로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건강한 감염인들이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건강검진 문제 역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정부는 HIV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행하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 형태는 바로 잡아 나가면서 동시에 HIV 감염인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이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 더 나아가 국내 HIV 감염인들의 차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방법

1. 연구이론: 근거이론 접근 방법
2. 연구대상
3. 자료수집 : 심층 인터뷰
4. 분석 방법

### III.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 개념화 및 범주화 : 개방코딩
  - 1) 인과적 조건 : 사람들의 선입견
  - 2) 맥락적 조건 : 편견의 확산
  - 3) 중심 현상 : 차별 경험
  - 4) 중재적 조건 : 개인별 특성
  - 5) 작용/상호 작용 전략 : 은폐
  - 6) 결과: 무지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의 지속
3. 패러다임 모형 : 축코딩
4. 선택코딩
  - 1) 의료행위에서의 차별
  - 2) 건강검진
  - 3) 집단 내의 차별
  - 4) 커뮤니티 내의 차별

### I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 I. 서 론

지난 1985년 국내 HIV 감염인이 처음 발견된 이후 28년의 시간이 지났다. 감염인의 수는 <표 1>과 같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지난 2013년 9월 4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 총 7,788명의 내국인 HIV 감염인이 있음을 발표하였다.<sup>1)</sup>

<표 1> HIV 감염 내국인 연도별 발생현황(1985~2011.12)

(단위: 명)

구분	계	'85~'8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8,544	51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4	610	680	749	740	797	768	773	888
남성	7,860	453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2	557	640	687	698	743	710	723	827
여성	684	64	12	17	18	26	25	35	35	32	53	40	62	42	54	58	50	61
전년대비 증가율(%)			-1.9	18.1	4.0	44.2	17.7	49.3	21.7	34.2	14.2	11.5	10.1	-1.2	7.7	-3.6	0.7	14.9

출처: 2012 HIV/AIDS 관리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2

초창기 HIV/AIDS가 한국 사회에 소개 되었을 때만해도 사람들은 ‘현대판 흑사병’, ‘성적 타락에 의한 징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러나 HIV 감염인의 숫자가 매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HIV 감염인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HIV 감염인 차별금지에 대한 권고가 계속 되고 있고, 국제기구들에 의한 감염인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초창기의 인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서 HIV 감염인들의 인권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HIV 감염인들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한국 사회는 HIV를 전염성 높은 질병으로 인식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낙인(Stigma)을 찍고 있으며 HIV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방송에서는 에이즈 포비아를 조장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으며 채용에 있어서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존재한다. HIV 감염인들의 경우, 약 복용 후에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음과 동시에 전염력이 극히 낮아짐에도 이들을 둘러싼 낙인효과는 HIV 감염인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1)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2012 HIV/AIDS 신고 현황”

[http://www.cdc.go.kr/CDC/intro/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1-MNU0005-MNU0011&fid=21&q\\_type=&q\\_value=&cid=21517&pageNum=](http://www.cdc.go.kr/CDC/intro/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1-MNU0005-MNU0011&fid=21&q_type=&q_value=&cid=21517&pageNum=)

이 문제와 더불어 HIV 감염인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 동성애자들의 감염율이 높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985년 이후,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인 비율은 42.7%(2,732명)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한해 45.3%(218명)로 그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특수성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존에도 HIV 감염인들의 삶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그 대상자를 남성 동성애자 감염인들로 한정시킨 연구는 국내에는 주혜주 교수의 논문만이 유일하다. 주혜주(2008)의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이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이중의 소외 속에 경계인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이 받는 차별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표 2> 국내 HIV/AIDS 감염경로(1985~2011)<sup>2)</sup>

구분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	백분율(%)	감염인수	백분율(%)	감염인수	백분율(%)
계	6,962	100	6,393	100	569	100
이성간 성접촉	4,173	59.9	3,614	56.5	559	98.2
동성간 성접촉	2,732	39.2	2,732	42.7	-	-

출처: 2013 HIV/AIDS 관리지침 재편집, 질병관리본부, 2013

<표 3> 신규 HIV 감염 내국인 감염경로(2011)

구분	감염경로 밝혀진 경우			
	남자		여자	
	감염인수	백분율	감염인수	백분율
계	481	100	41	100
이성간 성접촉	263	54.7	41	100
동성간 성접촉	218	45.3	-	-

출처: 2013 HIV/AIDS 관리지침 재편집, 질병관리본부, 2013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이 받는 차별이 무엇인가’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그들이 받는 차별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였다. 이 논문은 HIV 감염인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문헌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HIV 감염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내, 외부적인 차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방법을 통해서 ‘동성애자’, ‘HIV 감염인’이라는 이중 소수자로 살아가는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차별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이들에 대한 차별을 환기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감염경로가 확인된 인원 중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자수는 46명, 마약사용에 의한 감염자수는 4명, 수직감염자수는 7명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이론 : 근거이론 접근 방법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에 의해 제안된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일반인들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고 발전하여 왔다.<sup>3)</sup> Glaser의 근거이론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거이론의 방법은 실질분야에 관해 귀납적인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응용된 일단의 방법을 이용하는 자료수집과 관련된 일반적인 분석방법론이다.”<sup>4)</sup> 따라서 근거이론 연구는 특정 상황에 관련된 이론을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상에 대한 분석적 구조를 생성 및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특정 상황이란 개인이 현상에 대해 반응 및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 및 행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먼저 면접 자료를 수집하며, 현장을 방문하고, 정보의 범주들을 상호관련 시키며, 이론적 명제 및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근거이론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이론을 개발 혹은 생성하는 것이다. 즉, Strauss와 Corbin은 이론이란 개념 혹은 일련의 개념 군들 간의 그럴듯한 관계임을 말하였다.<sup>5)</sup> 이를 통해 개발된 이론은 연구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면서 더욱 분명해지며 진술, 시각화된 그림, 명제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근거이론연구는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하며 문헌, 면접노트, 현장노트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생각들을 체계화한다.<sup>6)</sup> 연구자는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을 가지고 시작하기 보다는 연구 분야를 가지고 시작하며 관련된 이론이 연구과정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이론과 이 이론이 근거하는 자료는 본질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다. 이론은 복잡할 수도 있으며, 반복적인 자료 분석과 수집한 자료로부터 나타나는 이론 체계를 만들기 위해 그 관계가 조사되는 핵심개념의 전개를 통해 형성된다. 근거이론연구는 수집한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며, 연구자, 독자, 행위자에 대한 자료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자료에 구조를 부여한다. 행위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설명의 기초로 이용될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총 3단계의

3) Charmaz, K, “Grounded theory: Objectivist and constructivist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509-534. Thousand Oaks, CA: Sage, 2000.

4) Glaser, B.G,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California: Sociology Press, 1992.

5) Strauss, A. and J. Corbin,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Overview”, Denzin, N.K. & Y.S. Lincoln (eds), Strategies of Quality Inquiry, London: Sage, 1998.

6) Strauss, A,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Strauss와 Corbin이 저술한 “근거이론의 단계”에 제시된 분석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개방코딩(open coding)이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범주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집대상자, 상황, 장소에 대해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 즉, 연구자는 정보를 구분하여 연구 대상 현상에 대한 초기 범주들을 형성해야 한다. 연구자는 각 범주 내에서 몇 가지의 속성 또는 하위범주들을 찾아내며, 개념화하기 위한 자료들을 찾으며 이론 구축을 할 수 있는 초기 과정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로 축코딩(axial coding)과정에서는 범주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코딩 패러다임 또는 논리적 도표를 사용하는데 연구자는 중심현상을 확인하고, 인과적 조건을 구체화하고, 상황적 맥락, 즉 중재적 상황을 확인하며 이 현상의 결과를 묘사한다. 그리하여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하여 도출해낸 범주들 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단계로써 이론적 관계를 찾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과정의 표집으로 이는 판별표집(discriminative sampling)이라고도 불린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발견한 범주 중에서 핵심 범주를 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 진술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선택코딩은 관심 현상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이고 의도적 표집을 진행한다. 즉,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와의 관계를 연결한 후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연구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서술해 보고 이를 통해 핵심범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3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친 후 이론을 완성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성 동성애자 가운데 HIV 감염인들이다. 연구 대상자 표집은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1차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HIV 감염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 후 관심을 표시한 대상자로 인터뷰를 진행한 후, 그들이 알고 지내는 감염인들을 소개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자료 수집 : 심층 인터뷰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관심을 표한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주요 질문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인터뷰 진행 전에 참여자와의 rapport 형성을 위해 식사 및 다과를 통해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대상자가 만남을 요청하는 장소 근처의 카페 및 밀폐된 스테디룸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인터뷰 내용의 특수성 및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터뷰 내용이 주변에 들리

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다. 본격적으로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질문에 대해 답변이 곤란한 경우 대답을 거부하여도 무방함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사전에 이메일로 보낸 질문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 4. 분석 방법

녹취된 자료는 분석을 위한 원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개방, 축, 선택코딩 총 세 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각 한 줄씩 세밀하게 분석해 나가는 줄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축코딩 단계는 인과 조건, 중심현상, 맥락 조건, 중재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라는 분석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개방, 축코딩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리하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었으며 20대가 2명, 30대가 4명, 40대가 1명이었다.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업의 경우,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그 밖의 특성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나이	감염사실을 알게 된 연도	학력	직업	교제 여부	기타
A	남	43	2004	대졸	회사원	무	
B	남	34	2005	대학 중퇴	고시생	유	C와 동거
C	남	39	2011	고졸	공장 근로자	유	B와 동거
D	남	38	2011	대졸	회사원	무	
E	남	26	2010	대졸	방송 프리랜서	유	
F	남	34	2004	대졸	간호사	유	
G	남	29	2005	고졸	사육사	무	

## 2. 개념화 및 범주화 : 개방코딩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 7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은 개념이 도출되었다.

<표 15>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개념화 및 범주화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 사람들의 선입견	동성애에 대한 인식	죄, 병에 걸림,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음, 문란함, 더러움.
	HIV에 대한 교육의 문제	학교에서 행해지는 부적절한 교육, 올바른 교육 기회의 부재, 편견을 확산시키는 교육.
맥락적 조건 : 편견의 확산	죽음을 강조	죽음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에이즈’란 표현 사용, 죽어가는 환자 이미지 전시, HIV에 감염 되면 죽음.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	범죄자,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 감염을 확산시키는 사람, 성범죄 주범자들.
중심현상 : 차별경험	의료 차별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할 때 치료 행위의 거부, 환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수술 거부, 병원 진료실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의 진료, 공개적으로 감염 사실을 알림, 환자에 대한 모욕 등.
	건강검진	직장에서의 퇴사 종용, 회사에서의 건강 검진으로 인한 고용차별 상황.
	집단의 차별	감염인으로 드러났을 때 집단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 따돌림, 감염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함, 가족의 해체.
	동성애자 커뮤니티내의 차별	커뮤니티 내의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더한 차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 잠재적 파트너라는 점, 감염의 공포.
중재적 조건 : 개인별 특성	정면 돌파	HIV 감염인이 겪는 차별과 불합리한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딪힘, 감염 사실을 동의 없이 알리는 행위 및 진료 거부에 대한 항의.
	회피	차별행위나 불합리한 경험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숨김.
작용 /상호작용 전략 : 은폐	감염 사실을 숨김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에 대하여 결국은 자신을 숨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약을 먹지 않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자리를 회피 함.
결과	무지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의 지속	HIV/AIDS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따른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형식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염유식 외, 2011)

## 1) 인과적 조건 : 사람들의 선입견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다(Strauss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차별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과 원인을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 HIV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로 분석할 수 있었다.

HIV 감염인 차별 문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G씨는 HIV 문제에 앞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말하였다.

“동성애란 것이.. 종교에서도 죄라고 하잖아요. 이거라 하면 더러운 놈.. 이미 그 자체가.. 동성애 자체는 나쁘다고 말하면서 이 병 자체도 나쁜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 G (남, 29세)

인권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B씨 역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성애자 자체를 심하게 말하잖아요.. 동성애자라는 가뜰이나 현재 사회로서 안 좋은데..”

- B (남, 34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던 F씨도 의사들이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말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진료중에 폭언이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

- F (남, 34세)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외에도 교육에 대한 문제도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주변 지인들에게 차별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G씨는 차별의 원인에 대해 무지를 이야기하였다.

“차별이란 것은 저한테 같은 경우에는.. 무지.. 무지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다면 차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모르니까.. ”

- G (남, 29세)

10-20대 감염인들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E씨 역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어렸을때부터 HIV에 대한 교육을 하다보면 동성애자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다, 동성애를 하면 꼭 에이즈에 걸린다 교육을 하다보니까 더 그런 인식이 있는게 아닐까..(생각해요) HIV나 동성애자나 교육에서 마저 차별이 있으니까 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를 구성했을 때 그 차별은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그 교육이 바뀌지 않는 이상..”

- E (남, 26세)

이와 더불어 간호학을 전공한 F씨 역시 의료인의 HIV에 대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하였다.

“의료인조차도 인식이 없어요. 만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배웠다는 것이 에이즈 관련 챗터 하나인데.. (그것도) 감염인에 대한 생태가 아닌 리스크에 대해 배워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거..”

- F (남, 34세)

직장인 A씨는 편견을 만들고 있는 잘못된 교육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매스컴이나 기존에 알려졌던 의학상식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매스컴이 편견을 키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병을 보여주면서 말기 환자들의 모습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미세현미경으로 혈관까지 들어간 혈액의 모습이라든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옆에 같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은... 만약에 제가 지금 직장에서 그것이 알려진다면 제 동료들도 등을 돌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편견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성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편견이 클 것 같아요.”

- A (남, 43세)

## 2) 맥락적 조건: 편견의 확산

맥락적 조건이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작용 및 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하는 구체적 조건이다.(Strauss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맥락적인 조건으로 ‘편견의 확산’으로 보았다. 하위 범주로는 ‘죽음을 강조하는 것’과 ‘HIV 감염인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사회에서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죽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과 보건소의 행태에 대해 E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언론 관련해서 제가 방송이쪽이다 보니 (자주 접하는데).. 소나무 재선충에다가 소나무에이즈라는 표현을 붙여요. 그거 걸리면 소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에 관해 권고 조치가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은 아직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난 버젓이 살아 있는데..”

- E (남, 26세)

20대 초반에 감염이 된 G씨 역시 감염 당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신문에서 막 나왔어요.. 이 병 자체를 공포 분위기로 조성을 해버렸어요. 죽음 병이다.”

- G (남, 29세)

B씨는 모보건소의 전시회 사례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는 공공기관의 이야기를 하였다.

“모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 알린다고 전시회를 했었어요.. 알리기는 알렸죠. 부정적으로 알리는거죠. 걸리면 죽는 병. 사진도 끔찍한 사진들.”

- B (남, 34세)

그 다음으로 HIV환자들에 대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편견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씨는 이와 관련한 언론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 말하였다.

“작년에 HIV 감염인이 재미교포와 성관계를 하고 지갑을 훔쳤는데 언론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의 몇 배가 더 튀겨지는 경우가 있죠. 일반 이성애자가 저질렀으면 그냥 아무 뉴스거리가 안 되는 문제가 HIV 감염인 그리고 동성애자가 하면 백배 튀겨지는 문제라고 보여 저요... 언론의 경우 기본적으로 HIV가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론 조사 연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조사를 보면 에이즈 보도 형태를 보면 90%는 자극적 소재인 거예요. 10%는 인권 관련된 뉴스 밖에 없어요. 그것도 12월에 에이즈의 날에 맞춰서 하고.. ”

- F (남, 34세)

B씨와 C씨 역시 언론이 만들어내는 HIV 감염인들의 범죄자 이미지에 관해 언급하였다.

“감염인이 성과 관련된 범죄와 엮어 있으면 굉장히 크게 터뜨리고..”

- B (남, 34세)

“좋은 면은 안 보여주고 안 좋은 면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많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무슨 짓을 했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공중파고 페이지 언론이고.. 무슨 특종 잡듯이 신상털기식으로 해버리니까..”

- C (남, 39세)

범죄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HIV

감염인인 경우 전 후 상황이나 사건의 내용 보다는 HIV 감염인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더욱 크게 보도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언론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보도 행위는 HIV 환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 이라고 편견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중심현상 : 차별 경험

중심현상이란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써 참여자가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 중심현상인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차별 경험’ 이었다.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면 HIV 감염인들은 많은 차별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별의 경험은 의료 차별의 경험, 건강검진, 집단의 차별, 동성애자 커뮤니티내의 차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간호사로 일했던 F씨는 자신이 받았던 병원에서의 차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모 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걱정되서 저 HIV 양성자인데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체크를 하고 복도에 앉아 있는데 인턴이 다 오더니 ‘HIV 말고 다른건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는거예요. 복도에서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되는거죠. 복도에 있는 사람이 다 아는거예요. 옮겨 앉았죠.”

- F (남, 34세)

E씨 역시 감염인인지 밝혀지고 난 다음에 받았던 차별 사례에 대해 언급하였다.

“운동을 하다가 제가 다니는 병원의 재활의학과를 갔어요... 바늘을 찌르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하자고 처방을 내렸었는데 갑자기 그 검사의 처방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차트에서 발견했나봐요. 그래서 그 검사가 없어졌더라고요. 감염내과 진료 기록이 있으시네요라고 하다가..”

- E (남, 26세)

B씨는 자신의 파트너 C씨가 받았던 차별 사례에 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제 애인이 항문쪽에 질환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수술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거부하더라고요. 감염인은 자기 병원에서 수술 못한다.. 그 당시에 정도가 심해서 제가 짜주는 걸 했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 자가치료 할 수 밖에 없었죠.”

- B (남, 34세)

환자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HIV환자인 것을 공개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E씨의 경우 HIV 감염인임이 알려지기 전에는 정기적으로 받던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취소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파트너가 수술을 거부 받아 자가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사례에서 의료 차별을 당한 경우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A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10년전에.. 맹장수술을 해야 했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환자가 세 개 네 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말로 표면적으로 거부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모병원에 가서 30시간이 지나서 입원이 가능 했을 거예요. 수술 받은 것도 다음날 이었고.. 그래서 결국 맹장이 터져서 크게 번졌구요.”

- A (남, 43세)

간호사로 일하는 F씨 역시 인터뷰에서 타인이 받았던 진료 차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한분이 앞니가 떨어져서 떼우러 갔어요. 그 앞니를 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동일한 진료 장소가 아닌 창고 같은데서 진료를 받게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오염될까봐 할 수 없다는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되는거거든요. 그리고 의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일반병원의 경우, 어떤 사람이 모수술을 받고.. HIV 양성 검사가 나온거예요... 순진한 마음에 내가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원장실에 후다닥 들어갔다가 흰 봉투를 주면서 원래 자기가 냈던 돈이 들어있더라. 그러면서 절대 우리 병원에 왔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 F (남, 34세)

이와 더불어 의료 종사자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알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의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감정 및 정서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HIV 감염인들에게 차별을 느끼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A씨, D씨, E씨, F씨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병원에 입원했을때부터 차별은 많이 느꼈어요... 그 싸늘한 시선들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보는데 눈빛이 싸늘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혈을.. 6개월이나 3개월마다 꼭 한번은 해요. 그때 체혈하던 사람들이 끼지 않던 장갑을 끼고 나서 갑자기 버린다든

가.. 오랫동안 환자를 봐왔던 의사들도.. 이 병을 다루는 감염내과 이외의사들에게는 차별이 커요. 당장 그 눈빛부터 어쩔 줄 몰라 하던..”

- A (남, 43세)

“최근에 감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갔어요.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대뜸 중증질 환자 등록이 되어 있네요. 물어보더라고요. 당황해서 네라고 대답했어요. 병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그 순간에 이야기해나 말아야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HIV라는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똑같은 의사인데 별거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 다시는 여기 오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

- D (남, 38세)

“감염내과 진료 기록이 있으시네요라고 하다가.. ‘네’ 대답했는데 ‘그러면 동성애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그게 너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속으로..”

- E (남, 26세)

“모병원에 있었던 케이스에서는 의사가 당신 호모냐 물어보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감염되었다고 하니까 당신 호모냐..왜 그런 짓을 해서..”

- F (남, 34세)

이외에도 경제적 활동에서 직면하는 차별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차별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 없거나 자신의 능력에 맞는 회사를 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씨는 구직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고용 차별 사례에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용접일을 하기 전에 취업 원서를 쓰는데 건강검진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고 회사를 골랐거든요. 회사를 좋은데 갈 수 있었는데 이 검사가 있으면 안 가고.. 제가 이런 모임(감염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요. 카페 같은데.. 글을 보면 회사 다니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보험 아니면 건강검진 문제예요.”

- G (남, 29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대기업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병원이 전산시스템을 다 바꿔서 우편으로 보내주던 (HIV)결과를 전산으로 보냈어요. 그 동안에 안 나오던 데이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행히 바뀐 것이 이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2-3일내에 보내고 회사에 추후 통보하게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래

서 이들 사이에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항의를 해서 데이터를 없앴어요.. 이것이 사실은요. 개인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타인에게 공지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가 회사로 나가는거죠. 그런데 그걸 본인이 알아서 조치할 수 있게끔 된다면 그것이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

- A (남, 43세)

A씨는 모 대기업에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모계열사에서 모병원의 신입사원 채용 검진을 하면서 양성자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데이터가 본인에게 가지 않고 회사에 통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발각 뒤집혔어요.. 입사해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불려가서 면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입사가 취소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게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다니는 병원의 상담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A (남, 43세)

간호사로 일했던 F씨는 건강검진 후 자신의 상관이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자신이 일했던 직종에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회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지는 않지만 알게 되었을 때 받는 불이익이라든지 차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차라리 몰랐을 때 빨리 나오면 다른 병원에 알려지지 않고.. 의료계라는 것이 좁잖아요. 우리 학교 출신도 많고.. 다른 병원에 제 동기들도 있고..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다른 병원에 가려면.. 사회적으로 내가 매장되지 않으려면 담당하시는 분만 알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잠재적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한거죠.”

- F (남, 34세)

많은 감염인을 상담했던 F씨는 이러한 차별이 감염인의 생존권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생존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알고 60-70%는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꼭 그게 감염 사실이 알려져서 그러기보다도.. 너무 많이 아프고 나서.. 그랬을 경우에 내가 만약 40대일 경

우 대기업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휴가도 낼 수도 있고 병가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영세한데서 일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입원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능직 숙련직 40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가나와서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거의 갈 수 없거든요. 사실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지만 그들이 치료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을 때 생존에 대한 차별.. 그 차별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F (남, 34세)

E씨는 HIV 감염으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과거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제가 전투경찰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경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력도 있고 나랑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아.. 제대를 하고 경찰 준비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깐 경찰, 군인, 소방관 이런 직업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방 쪽, 군무원 등 전쟁 관련 일들은 다 못한다고... 그때는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해야하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였는데 못하니까... 상실감도 생기고.. 한동안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로도 제대로 결정 못하고.. 경찰을 해야겠다고 느꼈던 그런 감정이 다른 직업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간절함이..”

- E (남, 26세)

이와 더불어 집단내의 차별도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는 감염인의 사례를 통해서 감염 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행했던 한 언어폭력의 사례를 이야기해주었다.

“아는 형한테 들은 얘기인데 모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간호사가 실수로 이 병명을 이야기하고 환자를 부른거예요... 완전히 공황상태가 온 거죠... 그때 사람들이 한순간에 멍해있다가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70대인가 60대인가 할머니였는데 욕을 했대요. 환자형한테.. ‘야 이 더러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욕을 하자마자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전부다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 G (남, 29세)

F씨 역시 한 감염인이 방송에서 나온 후 감염인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인간극장은 아니었고 그런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모자이크를 하고 그 사람의 생활이 밀착취재 되었던 거예요. 공중파에서.. 그런데 자

기네 동네가 나왔잖아요. 동사무소 민원이 난리가 난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고 감염인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 F (남, 34세)

사회 운동을 했던 C씨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자기들이 같이 하고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막상 자기네들하고 의견이 다르면 언제든 공격하고 테러 가하고.. 언제든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거죠. 그렇게 공격(HIV 감염 사실)해서 처내기는 너무 쉬우니까..”

- C (남, 39세)

또한 E씨와 G씨는 자신의 가족 공동체에서 발생한 차별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감염인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한번은 중국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탕수육을 저희 집은 소스를 찍어먹는 편인데 탕수육을 집어서 소스에 찍었는데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왜 너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먹느냐..’ 좀 많이 혼났어요.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었죠... 오히려 집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힘들었죠. 집에서는 빨래도 제 것만 따로 돌려요. 화장실도 따로 썼고.. 초반에는 식기도 따로 썼었어요. 서럽죠. 그게 차별인데. 같이 밥을 먹는다고, 화장실을 쓴다고, 빨래를 같이 돌린다고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전염력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가족마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구나. 가족이라고 다 받아들여 주진 않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 E (남, 26세)

“집에 오니까 내 물건들을 전부 다 따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수건, 식기류.. ‘이건 너만 써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렇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막상 당하다보니까 환자가 아니라 벌레 취급 받는 것 같고.. 한번은 형이 몸에 작은 반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건소 계장님한테 가서 자기 이 병 아닌지 검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서.. 죽고 싶고 맨날 울고... 사람이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밖에서도 뭐를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 G (남, 29세)

이 사례에 덧붙여 A씨는 감염 사실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던 타인의 사례들을 알려주었다.

“환우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 사례를 들면 이 일로 가족들이 해체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고 다시는 보지말자고 하는 형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부모가

지도.. 자식과 연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 A (남, 43세)

또한 G씨는 자신의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감염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우 받았던 차별에 대해서 말하였다.

“본의 아니게 말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인식이 최악이어서 거의 별레보듯.. 그런 식으로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너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 빨리 집에 들어가던지 해라..’ 내가 솔직해서 말을 한거죠. 힘들어서.. 누구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을 했는데 뒤통수를 맞은거죠. 나한테 대하는 것이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 G (남, 29세)

마지막으로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의 경우, HIV 감염인이면서 동시에 남성 동성애자라는 교집합에 놓여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상황에 대해서 말하였다. B씨는 감염 되기전에 활발하게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감염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커뮤니티에 공개하였고 더 이상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 되었으면 어쩔 뻔 했냐는 반응.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었죠. 일상생활로는 걸리지 않은데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커뮤니티를 떠났죠.”

- B (남, 34세)

이와 더불어 게이바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관해서도 B씨와 C씨 모두 언급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술집 같은 곳에서.. 너 힘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손님이 나가면 그 잔 값다 버리라는 케이스도 있고.. 개가 마신 술잔 더러우니 값다 버리라고.. 술 팔때는 좋다고 이야기하다 나가고 나면.. 걸으로 만날때는 아무 말 안하다가 가고 나면 썩 바뀌는..”

- B (남, 34세)

“게이바 같은 경우에 특히 만약에 알게 되었을 경우 지금은 나아졌는데.. 테이블하고 의자까지 값다 버렸어요. 재수없다고.. 이쪽에서 게이라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 C (남, 39세)

G씨는 일반인들보다 게이 커뮤니티내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강도가 훨씬 심하며 근본 이유가 이들이 잠재적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일반인들보다 이쪽 사람들이 더 해요. 같은 동성애자들이 더 하다가요.. 감염이 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자기들도 감염될까봐.. 그런데 동성애자 자체들은 자기가 잘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거였다 이러면.. 거의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그 누군가는 감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감이죠..”

- G (남, 29세)

#### 4) 중재적 조건 : 개인별 특성

중재적 조건이란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으로서 맥락 내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요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중재적 조건이 개인별 특성이라고 보았는데 개인별 특성 가운데서도 ‘정면 돌파’와 ‘회피’의 개인적 특성이 차별경험에 대한 변화를 주는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대기업에 다니는 A씨의 경우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회사에 알려질 경우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선택 하였다.

“건강검진은.. 35세를 기준으로 항목들이 틀려져요. 35세 이후로는 성인병에 관련된.. 기타 암 내시경 등 다른 항목들이 추가가 됩니다. 제가 그 동안에 35세 이전에 다행히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일반건강검진에 이 테스트가 안 들어가 있었던거죠. 그런데 35세가 되면서 본격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때가 왔어요.. 미루고 미루다 인사과에서 독촉을 받았죠.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정면돌파를 해야되겠다.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든지..’ 그래서 찾아갔죠.. 방문을 해서 수간호사를 찾았어요... 가자마자 상담을 했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회사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병원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들도 처음 있었던 케이스예요... 결론은 한시간 동안 회의한 후 들려주더라고요. ‘저희가 바코드에 홈을 내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게끔 하겠습니까.’ 혈액검사 앰플을 보시면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그것을 검정색으로 지워 주었어요.”

- A (남, 43세)

F씨는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노출된 사례를 항의했던 사례와 다른 HIV 감염인이 의사를 상대로 했던 고소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복도에서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되는거죠. 복도에 있는

사람이 다 아는거예요. 옮겨 앉았죠. 인턴한테 항의를 했어요... 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가 찢렸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은 감염사실을 레지던트가 본인의 동의없이 가족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레지던트를 잘랐던 기록이 있어요.”

- F (남, 34세)

C씨는 행정적 과정에서 받았던 차별을 감염인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사례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행정적으로 차별 받은 적이 있죠... 할 수 없이 모 단체(감염인 인권단체)에 연락해서 이런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보건복지부 공무원한테 연락을 했죠. 감염인 인권단체측에서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 했더니.. 자기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민원 제기하지 말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 C (남, 39세)

회피의 대응을 하는 경우들도 발견되었다. G씨의 경우 직장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대처를 한다기보다는 피해야죠. 건강검진이 없는 쪽을 가야죠. 선택의 문이 많이 좁아지죠... 내가 충분히 능력이 되도 이게 있으면 안 되는거예요. 그리고 또 일할 때 기숙사냐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죠. 기숙사는 생활을 하기 힘들잖아요.”

- G (남, 29세)

##### 5) 작용/상호작용 전략 : 은폐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작용/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데(Strauss · Corbin, 1990), 이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더 나아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차별 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해 참여자에 따라서 개인별로 대응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감염 사실에 대해 은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자신의 감염사실이나 동성애자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잘 감추어야지. 내 스스로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그 동안 감추오고 살아온 것처럼 어떤 나만의 비밀을 하나 더 가지게 된거죠.”

- D (남, 38세)

그는 사회적으로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왕따’ 를 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감염인 또는 환자라는 사실을 절대 밝혀서는 안 되고 누구한테서도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는 순간 난 사회에서 매장 당하지 않을까란..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 D (남, 38세)

E씨의 경우 다양하게 감염자와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다.

“숨기고 고민하는 것 하나씩 있듯이 저 역시 하나 갖고 있는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E (남, 26세)

A씨는 본능이란 말로 숨기는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였다.

“일부러 말 한적은 한번도 없어요. 알아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본능적인 판단이지만 실제로 이야기하면 40년 지기 친구도 아마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어요.”

- A (남, 43세)

C씨는 심지어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에도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겨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작년에 폐렴 때문에 입원했었을 때.. 내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 C (남, 39세)

또한 C씨와 G씨 모두 직장에서 눈치를 보았던 사례를 언급하였다.

“전에 직장의 경우.. 내가 감염자인 걸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을 속여 가지고 몰래 먹고.. 이게 무슨 약이냐고 하면 ‘ 몸에 좋은거야 ’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피했던 것 같아요.”

- C (남, 39세)

“제가 남을 속이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약을 먹는다고 하면 눈치를 봐야된다거나.. TV에서 에이즈 한참 나와서 ‘저런거 어때?’ 라고 물으면 괜히 당황을 해서 그런다거나.. 괜히 사람들이 눈치를 채게 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 G (남, 29세)

F씨는 사람들이 감염사실을 은폐할 수 밖에 없음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가 숨겨야하는 질병이잖아요. 알려진 차별이 아니라 비하인드 차별이 너무 심한거죠. 알려졌을 때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말하면 사망이니까.. 에이즈 환자는 차별 사례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차별인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을 하는 즉시 죽는거예요. 사회적 죽음이 너무 심하니까 말조차 하지 못하는거죠.”

- F (남, 34세)

#### 6) 결과 : 무지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의 지속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중심현상이 조절되면서 나타나게 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서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모두 사람들이 HIV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와 편견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감염인들은 더욱 자신을 숨기고 사회의 무지와 편견은 더욱 견고화되는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씨는 HIV 감염인들이 받는 차별에 관하여 ‘무지’가 원인임을 이야기하였다. 즉,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함으로 차별이 지속됨을 말하였다.

“차별이란 것은 무지.. 무지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다면 차별은 없을 것 같거든요... 모르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사람들이 좀만 더 알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 G (남, 29세)

D씨는 언론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HIV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차별)을 더 견고히 하는.. 다져주는 그런 역할(언론)을 한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 것이 더 어렵겠구나..”

- D (남, 38세)

A씨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HIV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해소된다면 감염인에 대한 차별 문제

가 훨씬 개선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게 특별한 접촉 외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상대방에 알려줄 경우에는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고.. 그런데..그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시킬 수도 없고..”

- A (남, 43세)

감염인 협회에서 일했던 F씨는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른 차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에이즈는.. 입을 열 수 없는 차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밝혀내기 어려운 차별이라고 해요. 이주민 차별은 얼굴에서 들어나요. 그러니까 차별 사례가 있으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장애인 차별도 그렇죠. 차별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이즈 환자는 차별 사례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차별인거예요... 차별이 드러나지 못하는 비하인드 차별이 너무 심한거예요. 숨겨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별 사례를 수집을 했었어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통계가 안 나오는거야. 그러니까 제도 개선 하기도 어려운거야... 차별은 받지만 실제적으로 차별이 보이지 않는.. 숨겨진 차별인거죠... 그 차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다 밝히고 살아야하는데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는거죠.”

- F (남, 34세)

G씨의 사례는 HIV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데 대한 자신의 사례를 말해주었다.

“가족 중에 동생이 있는데 그 애가 많이 알아요.. 어느 날.. 동생한테 고마웠던게..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같이 먹자고 그러더라구요. ‘안 된다 나는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어때?’ 그러면서 ‘이거 감염도 안 되는건데..’ 이러면서 동생과 밥 먹고 그런 생활을 보여주면서 엄마와 형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동생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하죠.”

- G (남, 29세)

위의 사례들처럼 대다수의 비감염인들은 HIV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감염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숨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염인들은 자신의 차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언론 및 사회는 이들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며 편견을 조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감염인에 대한 차별 지속 및 심화가 이어 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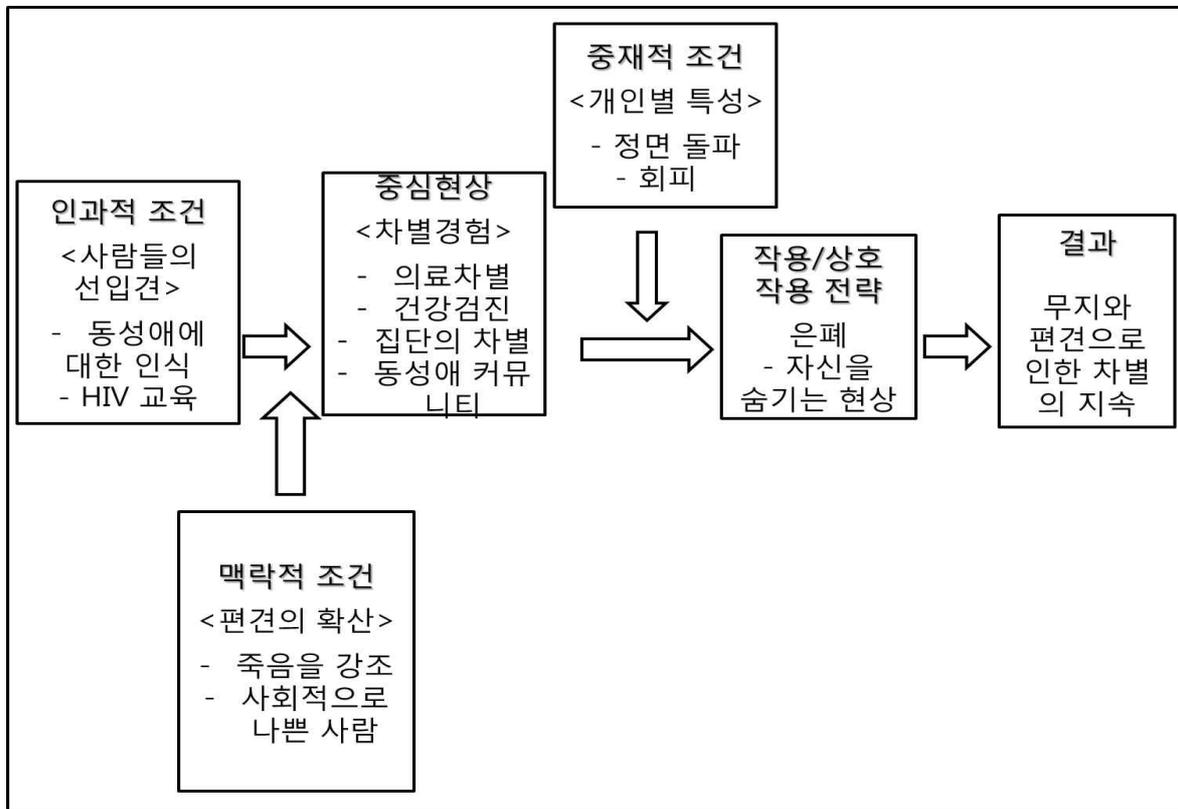
### 3. 패러다임 모형: 축코딩

축코딩의 핵심작업은 패러다임 모형을 만드는 것, 개방코딩에서 이론 범주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모형화(구조, 과정), 범주의 관계 범주와 하위범주의 관계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거이론에서 축코딩 과정은 개방코딩 동안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고 이를 통해서 상위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패러다임, 즉 설명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차별에 관한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이 받는 차별에 관한 연구’의 축코딩 모형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이 받는 차별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HIV에 대한 잘못된 교육에서 그 인과적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정상적인 삶을 앓았으며,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과 죽음을 강조하는 모습이 사회에 계속 확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의료차별, 건강검진, 집단의 차별과,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차별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은 차별 상황에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회피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을 은폐하는 모습으로 귀결되었고 이를 통해 무지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선택코딩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자들의 경우, 크게 의료 차별, 건강검진, 집단의 차별,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 행위에서의 차별 및 건강검진에 대한 문제는 감염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의 차별과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의 차별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1) 의료 행위에서의 차별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자들은 의료 행위에서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문제, 의료 행위의 거부 문제, 진료 과정에서의 폭언, 감정적으로 차별 당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F씨의 경우, 인턴 의사에 의해서 동료 인턴들 및 주변 사람들에게 HIV 감염 사실이 공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응급실에 있던 F씨는 인턴들이 자신을 보러 오고 가십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에서 불쾌감을 느꼈다. E씨의 경우, 자신이 꾸준히 다니던 병원의 다른 과에 가서 진료를 받던 도중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E씨는 그 후 원래 내려졌던 처방에서 바늘을 이용하는 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B씨의 파트너였던 C씨는 감염인이라는 사실로 항문 질환 수술을 받지 못하고 결국 B씨가 C씨를 집에서 직접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사례는 아니었지만 A씨는 한 감염인이 맹장 수술을 받아야만 했지만 병원들로부터 수술 거부를 받다가 30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던 사례를 이야기해주었다. 이러한 수술 거부 사례는 감염인의 실제적 생존에도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F씨는 한 감염인의 사례를 통해 병원을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의사의 사례를 이야기해주었다. 이러한 의료 종사자들이 보이는 감염인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인터뷰 대상자들 대부분이 겪었던 사례였다.

A씨의 경우,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의료인들의 눈빛 및 제철하는 행위에서 보였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A씨는 경력이 오래 쌓인 의사들도 감염내과를 전공하는 의사가 아니면 대부분이 차별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D씨의 경우, HIV 감염 사실을 동네 병원에 이야기 한 후 의사에게 받았던 감정적 차별의 문제로 다시는 동네 병원에 올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사례를 말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E씨는 감염내과 진료 사실을 발견했던 한 의사로부터 동성애자냐고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타의로 밝혀져야 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F씨는 한 감염인의 사례를 말해주었다. 그 감염인의 경우, 의사로부터 호모냐는 질문을 받았고 왜 그런 짓을 했냐는 힐난을 받았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와 같이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원하지 않게 드러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종사자들의 태도에서 느끼는 차별은 대부분의 감염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했던 사례는 비감염인들과 동일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차별의 문제였다. 또한 맹장수술을 받지 못했던 한 감염인의 사례처럼 실제적으로 감염인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의료 과정에서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2) 건강검진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경우, 경제적 활동에서 직면하는 차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 문제는 퇴사, 입사 거부, 기회의 박탈 문제로 연결되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의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에 HIV 감염인임을 밝히고 회사에 통보하지 말 것을 부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병원의 바뀐 전산 시스템으로 회사에 HIV 감염 사실이 통보될 뻔 했던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A씨는 자신의 경우, 이를 병원에 항의하여 해결하였지만 이 문제를 조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 끔찍할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A씨는 실제로 모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검진 단계에서 한 신입사원이 HIV 감염 사실이 밝혀져서 모 대기업으로부터 퇴사를 종용 받았던 사례가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모 대기업은 감염인이었던 신입사원과 면담을 하였고 본인 스스로 그만 두게끔 압박을 행사하였다. 실제 간호사로 일했던 F씨의 경우, 회사 건강검진 단계에서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좁은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 외부로 알려지기 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일하던 병원을 퇴사하였다. E씨의 경우, 자신이 꿈꾸었던 경찰 공무원의 꿈을 HIV 감염으로 인하여 포기하였다. 경찰 공무원은 HIV 감염인은 채용될 수 문제가 존재하였고 꿈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한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하였다.

감염인 협회에서 일했던 F씨는 HIV 감염인이 되면 생존의 문제 그 자체에 직면하게 됨을 말해주었다. F씨는 본인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감염인들이 감염 사실을 알고 직장을 그만 두고 있는 현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영세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재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이 있음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문제로 일할 능력을 잃고 많은 감염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있음을 인터뷰 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었다.

감염인들이 건강검진에서 받는 차별의 문제는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는 없다. 이 문제는 HIV 감염인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들은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상황을 피하고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등, 취업문제에 있어 약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HIV 감염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칠 기회도 박탈당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의 반 타의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로 전락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즉, 건강검진의 문제로 감염인들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 3) 집단내의 차별

HIV 감염인들은 감염 사실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집단 내에서 받는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염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졌을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받는 차별은 감염인의 생활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했다.

G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는 감염인의 사례를 통해서 외부로 감염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한 집단이 어떻게 돌변하는지를 말해주었다. 한 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HIV 감염 사실이 주변에 앳아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한 할머니가 그 감염인에게 ‘더러운 새끼’ 라고 욕을 하였고 주변 사람들 역시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 감염인은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 F씨 역시 한 감염인이 모자이크 처리되어서 방송에서 나왔던 사례를 통해 집단의 차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감염인의 생활이 밀착 취재되었고 이 내용이 지상파 방송국을 통해 방송되었다. 그 후, 방송을 탔던 감염인의 동네는 민원이 빗발치게 들어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게 되었다. 주민들이 주장한 것은 감염인이 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실제 사회 운동을 했던 C씨는 감염 사실을 공개하였다. 함께 사회 운동을 하던 집단에서는 C씨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내었을 경우, HIV 감염 사실을 통해 자신을 공격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G씨는 자신이 일했던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감염 사실이 노출되었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별레 보듯 취급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알려주었다.

특히 HIV 감염인들이 속한 가족 공동체 내에서도 차별이 발견되었다. E씨는 함께 가족들과 밥을 먹던 과정 중에서 아버지로 폭언을 들었던 사례가 있었으며 식기, 화장실을 따로 썼던 사실을 있었다고 말하였다. E씨는 가족들과의 문제가 몹시 힘들었으며 가족이라고 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심한 소외감을 겪었음을 말해주었다. G씨 역시 자신의 물건을 따로 보관하며 공동 물건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의 몸에 반점이 생겼을 때 자신이 HIV에 걸렸다고 검사를 했던 사례를 말하며 G씨는 집에서 자신을 별레처럼 취급했다고 말하였다. 집에서 소외 당한 G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우울증을 겪었음을 말하였다. A

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는 HIV 감염인들 가운데 많은 가족 공동체가 실제로 해체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집단내의 차별의 경우,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만이 한정된 차별은 아니다. 그러나 외부로 알려졌을 경우 집단에서 가해지는 차별의 문제는 HIV가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미지가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는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무지에서부터 기인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HIV가 성적으로 가지는 문란함의 이미지 역시 큰 한 몫을 할 것이다. 특히 HIV가 동성애질환으로 낙인 찍혀 있고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역시 차별의 시너지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분석해보았을 때, 결국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HIV의 이미지에 전이되어 이것이 HIV 감염인들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 4)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의 차별

인터뷰 및 통계 자료를 통해 남성 동성애자들이 HIV 감염 위험에 실제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과 동시에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경우, 동성애자라는 성적 소수자 그룹과 HIV 감염인이라는 특수한 교집합 상황에 놓여 있다. 인터뷰 결과,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HIV 감염인들을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차별의 이유 역시 동성애자 커뮤니티내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B씨는 HIV에 감염되기 이전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인권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HIV에 감염이 된 후 동성애자 인권 단체에 자신이 감염되었음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동성애자 인권 단체의 반응은 그를 옹호하는 사람과 B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되었으면 어쩔 뻔 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공격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다. 일상생활로 감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B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활동하던 인권 단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실제로 게이바에서 술집의 주인이 감염인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였으니 감염인이 떠나고 난 후 감염인이 마신 술잔이 더러우니 갔다 버리라고 말했던 사례를 이야기해주었다. G씨 역시 게이바에서 감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재수없다는 이유로 감염인이 있었던 테이블과 의자까지 갔다 버렸던 과거의 사례가 있었음을 말하였다. G씨는 일반인들보다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강도가 훨씬 극심하다고 하였다. 이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 HIV 감염에 대한 잠재적 두려움이 있으며 누군가는 감염자일 수 있다는 공포감이 이에 대한 원인일 것 같다고 하였다.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경우,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성애자들은 누군가는 감염자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잠재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

다. 이와 동시에 동성애자들은 서로가 함께 잠을 잘 수도 있는 잠재적 섹스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 하에 누군가가 감염인이라면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 매장 당할 수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즉, 남성 동성애자들은 HIV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누군가는 감염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감염인이 나타났을 때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을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욱 심한 차별을 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 I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국내의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검토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으로 의료 행위에서의 차별, 건강검진, 집단 내의 차별, 커뮤니티내의 차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료 행위에서 발생하는 치료 및 수술 거부 행위는 감염인들의 실제적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의사 및 간호사로부터 감염 사실이 노출되는 일, 진료 과정에서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에게 행해지는 폭언 및 감정적 태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강검진’의 문제로 현재 회사에 다니는 직원은 건강검진 자체로 자신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걱정하며 실제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또한 신입사원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퇴사의 압박을 받아 스스로 회사를 그만 들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HIV 감염으로 자신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건강 검진은 남성동성애자 HIV 감염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HIV 감염인들의 경제적 생존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HIV 감염인들은 감염 사실이 외부로 노출 되었을 때 언어폭력 및 거주권 등에 대한 문제에도 직면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 공동체에서도 차별 받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심지어는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등 가족 공동체 자체가 해체되는 상황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남성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차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감염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었을 때 자신과 친했던 동성애 커뮤니티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동성애자 업소에서도 외면 받는 존재였다. 즉,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을 커뮤니티 내에서도 차별 상황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HIV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 이 문제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를 더욱 깊이 분석해보면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과 HIV를 ‘동성애질환’이라고 교육하는 점, 제대로 된 교육 자체를 하지 않는 문제가 깔려 있었다. 이러한 편견을 언론 등에서는 더욱 크게 확산하여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확대 재

생산하고 있었다. 즉, HIV 감염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죽음’을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잘못된 편견을 통해 만들어진 이 사회의 시스템을 통해 감염인들은 직접적인 차별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다. 감염인들은 직면하는 차별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결국은 감염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감염인들은 자신이 받은 차별을 침묵하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편견은 계속 일어나고 HIV에 대한 잘못된 교육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HIV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사람들의 오해와 질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처럼 에이즈 환자들은 사회가 던지는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일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동시에 정당한 의료 혜택 역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HIV의 경우, 우리 사회의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의식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성애 자체가 ‘더럽다’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는 상황에서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경우, 저주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프레이밍을 생산했던 언론의 HIV 감염인에 대한 보도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HIV 감염인들이 마땅히 누려야하는 생존권의 문제 역시 법적 장치를 통해서 지켜져야만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많은 감염인들이 의료 행위에서 수술 및 진료 거부 행위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HIV 감염인의 ‘생존’ 과도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이자 이들의 권리이다. 단지 ‘감염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존과 직결된 수술을 받지 못해 생명이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차별을 용인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건강검진’의 문제 역시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를 하면서 만났던 감염인들은 실제로 근로의 능력과 의지가 있었으나 감염인이라는 사실로 회사를 그만 두거나 일을 하더라도 건강검진의 두려움에 떨며 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으로 연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로 퇴사를 종용 받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경제적 생활에서 소외되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심지어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감염인들이 회사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는 ‘무지’가 그 근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HIV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리는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바로 잡아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 특히 ‘동성애’에 대한 인식부터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때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의 차별 문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동성애를 하다가 귀결되는 것이 ‘에이즈’ 이고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의식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한 주홍글씨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이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들, 더 나아가 국내 HIV 감염인들의 차별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제적 연구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질병으로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길 고대해본다.

## 참고문헌

2012 HIV/AIDS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012.

2013 HIV/AIDS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013.

김소선,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12권 1호, 2003.

박영숙 외, “HIV 감염자의 삶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1권 제2호, pp 110-119, 2005..

스트라우스, 코빈 저, 신경림 역, “근거이론의 단계 : 질적 연구”, 서울 : 현문사, 2001.

염유식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사회학회, 45호, pp 91-129, 2011.

이지영, “종합병원 남녀 비서직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13.

주혜주, “HIV 감염인의 대처과정 - 남성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1호, pp 97-108, 2008.

최귀순,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82-90, 2005.

Charmaz, K, “Grounded theory: Objectivist and constructivist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2000.

Denzin, N.K., “The art and politics of interpretation”, in N.K. Denzin and Y.S. Lincoln(Ed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Thousand Oaks : CA : Sage, 1998.

Glaser, B.G.,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California: Sociology Press, 1998.

Strauss, A.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London : Sage, 1990.

Strauss, A.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Strauss, A. and J. Corbin,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Overview“, Denzin, N.K. & Y.S. Lincoln (Eds), Strategies of Quality Inquiry, London: Sage, 1998.

논문수상작  
**2013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상**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관한 연구**

-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

김재완

## 요 약

전세계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을 통해 인권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피해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권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청정에너지기술 등 환경친화적기술,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기술, 기술이전 등을 통해서 개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의 이전과 협력이 중요한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기술의 경우, 국가간 기술 이전과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의 이전과 협력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TRIPs 협정에 대한 검토와 이해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뿐만 아니라 TRIPs 협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나타나고 있는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려운 TRIPs 협정의 목적 규정에 따른 한계이다. TRIPs 협정은 제7조(목적)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행하는 것은 기술혁신의 증진, 기술이전과 기술의 전파,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 공동의 이익, 사회·경제 복지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조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추상적·선언적 규정일 뿐 구체적인 실천력과 집행력을 갖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목적대로 국제사회가 기술의 이전과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기후관련 기술 특허의 선진국 집중에 따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이 개도국과 기술의 이전과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워져서 개도국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나아가서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의 위협은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전세계의 모든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

셋째,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로는 환경친화적 기술 특허 공유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투자위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서의 기술공유가 어려워질 수 있고, 기업의 특허공유 동기유인이 없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공유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만으로는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과 개발을 촉진하는데 어렵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막대한 피해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준비의 어려움에 따른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 가령, 외국의 다수 국가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우리나라로 다량 유입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나 다양한 기상재해의 발생, 폭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은 인권을 위협하는데, 이러한 점은 선진국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섯째,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한 질병(특히,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일곱째,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에 따른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시 이 분쟁에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쟁 기간동안 국제사회의 기술 이전과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지원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서 공유하는 정보 보안을 통한 개도국의 기술 이전·개발 촉진이다.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2020년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기후변화체제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 산정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명시한다면 국제사회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에 특허권이 갖는 배타적 권리의 제한적 예외 사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보호를 받는 기후변화 대응기술로 인해 전세계가 균형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인간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허권이 갖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 예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특허권에 따른 제한을 감소시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에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자의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이용하면서 지식재산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자가 기술이전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 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상금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예방·통제 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라 인간은 다양한 질병(특히, 전염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질병을 통제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인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국내적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근로자의 임신에 따른 출산으로 인한 질병 발생시 별도의 휴가 제공,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야간근로에 기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제시한다. 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 제183호인 「모성보호협약(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과 ILO 협약 제171호인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Night Work, 1995)」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 역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교통약자는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 전략을 통한 지하철 역사의 안전성 강화, 지하철 내 교통약자 배려석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 강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대학교 소속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제시한다.

주제어 : 건강권, 기술이전, 기후변화, 민관협력파트너십, 온실가스

## 목 차

### I.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방법과 범위

### II. WTO TRIPs 협정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1. WTO TRIPs 협정의 내용
2. 기후변화협약상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3.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의 관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4. 도하 기후변화총회에서 기술이전에 관한 각국의 입장

### III.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1.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려운 TRIPs 협정의 목적 규정에 따른 한계
2. 기후관련 기술 특허의 선진국 집중에 따른 한계
3. 환경친화적 기술 특허 공유의 한계 :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
4. 기후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막대한 피해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준비의 어려움에 따른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5.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6.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한계
7.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에 따른 한계

#### IV.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1.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지원
2.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서 공유하는 정보 보안을 통한 개도국의 기술 이전·개발 촉진
3.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명시
4. 새 기후변화체제에 특허권이 갖는 배타적 권리의 제한적 예외 사례 규정
5.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새 기후변화체제에 마련
6.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예방·통제 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7.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국내적 방안

#### V. 결 론

#### 참고 문헌

## I. 서 론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1)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의 문제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의 국민안전 전략 중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이 있는데, 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의 주요 추진계획 중에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9차,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 및 기후변화 정상회의(2014년) 등 국제기후변화 협의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 하는 것이 있고, 이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의 주요 추진계획 중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기인 건강피해 예방 및 감염성 질병관리를 강화” 가 있다.<sup>1)</sup>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 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 문제는 외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국의 기후변화에 의해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되고, 외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온실가스가 국경을 넘어서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기후변화에 따른 인간의 건강권 위협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모든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고, 외국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들이 외국의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건강권, 이동권, 안전보장에 관한 권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건강권, 이동권, 안전보장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 사람들의 인권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2) 인권 중 건강권, 이동권, 안전에 대한 권리는 중요한 권리

1)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2013. 5. 28, 170~171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전문에서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차별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건강의 증진과 질병의 억제(특히, 전염병)에 대한 개별 국가들 간 불균등한 성장은 공통의 위협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5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음식, 의류, 주택, 의료 그리고 필수적인 사회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인권 중 건강권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인권 증진을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활동하는데 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장애인의 이동권 역시 인권 중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의해 인간의 건강권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된다면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권뿐만 아니라 이동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다. 특히, 교통약자<sup>2)</sup>의 이동권과 안전 보장은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면 날씨나 건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임신한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때 이동권이 불완전하거나 그 보장이 안 된다면 장애인은 이동할 때 어려움 겪을 수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나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교통약자는 이동할 때 더욱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의 위협에 대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이동권 역시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의 위협에 대응하여 기후변화협약과 TRIPs 협정을 통해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을 위한 기후변화협상의 중요성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속화되면 전세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위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1.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1.). 필자는 “교통약자란 장애인, 임산부, 여성, 영유아나 어린이와 함께 이동하는 사람, 만 65세 이상 연령의 사람, 건강 악화로 인하여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가령,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사람), 영아(叛兒, baby), 어린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협하는 요인이 증가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내의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법만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국내의 법과 제도 등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기후변화협약”)을 고려하여 전세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WTO 회원국은 2013년 9월 16일 현재 159개국이고<sup>3)</sup>,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은 2013년 9월 16일 현재 195개국이다.<sup>4)</sup>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5개국 중 154개국이 WTO 회원국이다. 바꿔 말하면 WTO 회원국 154개국이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이다.<sup>5)</sup> WTO의 TRIPs 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이다(부속서 1 C). 그래서 WTO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규정 그리고 행정절차가 TRIPs 협정에 규정된 자국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sup>6)</sup> 즉, WTO 회원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내의 법률·규정 그리고 행정절차 등을 TRIPs 협정 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WTO 회원국 중 거의 모든 회원국이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이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대다수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11월 26일~12월 8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도하 기후변화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였다(당초 교토의정서의 효력은 2012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할 예정이다. 2011년 11월 28일~12월 11일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더반 기후변화총회”)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고,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들은 이 새 기후변화체제 출범을 위한 기후변화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2013년 9월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이 기후변화협상을 완료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 기후변화협상을 통해서 2020년 이후 시작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법적 성질(가령,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는 규정을 포함시킬지 등)·권리와 의무·원칙·재정

3) WTO, *Understanding the WTO : Members and Observers*,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검색일 : 2013. 9. 16.)

4) UNFCCC,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Observer States*,  
[http://unfccc.int/parties\\_and\\_observers/parties/items/2352.php](http://unfccc.int/parties_and_observers/parties/items/2352.php)(검색일 : 2013. 9. 16.)

5)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WTO에 가입해서 WTO 회원국 목록에 포함된 것이고, 중국은 WTO 회원국,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WTO 회원국 중 156개국이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이라 할 수 있다.

6) WTO 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제16조 제4항 참조.

지원·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기술이전·절차·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20년에 만료되고, 2020년 이후에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15년까지 기후변화협상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 9월 현재 이 기후변화협상은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 증진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매우 긴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기후변화협상은 개별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에 이해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통한 지구의 기온상승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 전염병 확산, 폭풍이나 홍수의 증가 등은 지구의 전세계에 있는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2015년에 완료되는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에서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대다수가 WTO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인 WTO 회원국은 기후변화협상을 할 때 지식재산권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이전 등에 대해서는 TRIPs 협정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하거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게 되면 전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하는데 균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기후변화 대응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한다면 지식재산권을 환경문제와 결부시켜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하여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등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취약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기술이 필요한데, 개도국은 이 점에서 어려운 면이 있고,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증대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개별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가령,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청정에너지기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친화적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기술이전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sup>7)</sup>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 준비를 위한 2015년까지의 기후변화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기후

7) 안미정 외,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간 기술이전에 대한 지적권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연구』(대전 : 특허청, 2009), 82~83면.

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전세계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이 없으면 인간의 건강과 안전 등의 인권증진은 쉽지 않다는 점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한 국가나 일부 국가들만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외국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전세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국내적으로도 국내의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 등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논문, 국내외 웹사이트, 기후변화회의 자료, TRIPs 협정, 기후변화협약 등을 참고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서 새 기후변화체제 내에서 필요한 방안, 즉,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방안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의 연구를 연구범위로 한다.

## II. WTO TRIPs 협정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TRIPs 협정은 전문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시행 조치와 절차 등의 보장을 위하여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의 이용가능성·범위와 사용과 관련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의 제공, 각 국가 법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의 시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의 공급, 정부간 분쟁의 다자간 방지와 해결을 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절차의 제공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의 필요성을 인정” 하고 있다. 나아가서 동 전문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가 제도의 근원적인 공공정책 목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건전하고 실용적인 기술적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법률과 규정을 국내실정에 맞게 이행할 때 최대한 융통성 있게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특별한 요구를 인정” 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상하고, 사후적으로 그 질병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지식재산권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들을 아무런 제한없이 공유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서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데, 이러한 기술들에 특허에 따른 제한으로 특허권자 등이 이 기술을 수입하는 국가에 비용을 많이 요구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경우 이 기술 수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한 고찰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장에서는 TRIPs 협정 상의 목적·원칙·최빈개도국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 협력·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협력과 재정적 협력 의무, 특허권 제한이나 예외 규정 등 TRIPs 협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상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논의 등에 대해 알아 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 등이 필요한데,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등을 살펴 본다.

## 1. WTO TRIPs 협정의 내용

### 1) TRIPs 협정의 목적과 원칙

#### ① TRIPs 협정의 목적

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행하는 것은 기술혁신의 증진, 기술이전과 기술의 전파,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 공동의 이익, 사회·경제 복지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조화에 기여해야 한다(제7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통해서 미래의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기술의 이전·전파를 통해서도 지식재산권이 있는 기술이 기술의 생산자와 기술의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국가의 사회복지·경제복지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권자의 의무도 균형있는 비중을 둔다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② WTO TRIPs 협정의 원칙

##### 가. 내국민대우 원칙

TRIPs 협정 제3조는 “각 회원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 국민에게 해선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환언하면 각 회원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자

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 나. 최혜국대우 원칙

TRIPs 협정 제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WTO 회원국이 “다른 국가(WTO 비회원국 포함)” 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특혜조치를 할 때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 다.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의무 배제의 원칙

TRIPs 협정 제5조는 “TRIPs 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른 의무와 TRIPs 협정 제4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의무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와 관련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의 후원 하에 맺어진 다자간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WIPO 후원 하에 체결된 조약에서 지식재산권의 취득이나 유지와 관련한 절차 규정에는 TRIPs 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른 의무와 TRIPs 협정 제4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라. 분쟁 방지와 해결을 위한 투명성

TRIPs 협정 제63조에서는 분쟁 방지와 해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회원국 정부와 권리자가 TRIPs 협정의 주요한 문제(지식재산권의 이용가능성·범위·취득·시행 그리고 남용방지)에 관련되는 회원국에 의해 유효한 법,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부의 최종판결과 행정상의 결정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국의 언어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이 공표가 실무상 가능하지 않다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 정부나 회원국의 정부기관 간에 효력이 있는 TRIPs 협정의 주요한 문제에 관한 협정도 공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중요하다. 이 조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취득·이용·시행·남용 예방 등에 관한 회원국의 법령·대법원 판례나 행정상 결정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나 국가의 지식재산권 활동을 돕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서면 요구를 하면 TRIPs 협정 제63조 제1항에 언급된 부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법부의 판결이나 행정상의 결정 또는 양자 협정이 TRIPs 협정 하에서 자국의 권리에 영향을 준다는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 역시 특정한 사법부의 판결, 행정상의 결정 또는 양자 협정에 대한 접근이나 충분한 세부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회원국의 법 시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이익

에 반할 때 또는 특정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에 손해를 야기할 때에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동조 제4항)” 는 예외가 있다.

## 2) 최빈개도국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 협력 의무

TRIPs 협정 제66조 제2항은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건전하고 실행 가능한 기술적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국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기업과 기관이 최빈개도국 회원국에게 기술이전을 증진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여 최빈개도국의 기초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3)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협력과 재정적 협력 의무

TRIPs 협정 제67조는 “TRIPs 협정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상호합의된 기간과 조건이 있을 때, 선진국 회원국은 개도국 회원국과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위하여 기술협력과 재정상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에 관한 법과 규정의 준비를 위한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사무소와 기구의 설립 또는 증설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여 선진국이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기술협력과 재정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4) 특허권 제한이나 예외 규정

TRIPs 협정 제5절에서는 특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중에서는 특허권을 제한하거나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통해 회원국은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특허권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특허 대상 제외

회원국은 발명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사람과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공서양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동 발명의 특허권을 배제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법에서 금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 배제가 이뤄져선 안 된다(제27조 제2항 단서). 요컨대, 당해 발명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이후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공서양속의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② 특허권에 의해 부여된 배타적 권리의 제한적 예외

회원국은 특허권에서 부여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 이용을 비합리적으로 모순되게 하거나 특허권자의 적법한 이익에 비합리적으로 손해를 야기해선 안 된다(제30조). TRIPs 협정 제30조는 이 내용까지만 규정하고 있고, 이 제한적 예외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국내법이나 양자협정·다자협정 등을 통해서 특허권이 갖는 배타적 권리의 예외 규정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sup>8)</sup>

③ 권리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루어지는 기타 사용

TRIPs 협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자의 승인없이 이루어지는 기타 사용<sup>9)</sup>」은 “권리자의 승인없이 특허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용에는 정부의 사용 또는 정부의 승인을 얻은 제3자의 사용을 포함하고, 이러한 사용은 회원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한다”, 이 경우 이러한 사용은 여러 가지 요건<sup>10)</sup>을 지켜야 하는 데, 이 요건 중 중요한 일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적인 건에 따른 사용의 상대적 결정

이러한 사용을 승인하려면 개별적인 건(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제31조 (a)).

나. 사용이 예정된 자의 권리 승인 노력과 그 예외

이러한 사용은, 이러한 사용을 하기 전에 사용이 예정된 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기간과 조건을 통해 권리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성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되어질 수 있다(제31조 (b)).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있다. 회원국이 국가적인 비상 상황, 극단적인 긴급상황 또는 공중의 비상업적 사용이 있을 때 이러한 노력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 상황 또는 그 밖의 극단적인 긴급상황에서 권리자의 승인없는 사용이

8) 우리나라 특허법 제96조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등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없다(특허법 제96조). 이 제96조는 TRIPs 협정 제30조에서 규정한 특허권에 부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 예외의 구체적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여기서 기타 사용(Other Use)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TRIPs 협정 제30조상의 특허권이 갖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통해서도 권리자의 승인없는 사용이 가능해서, TRIPs 협정 제31조상의 사용은 TRIPs 협정 제30조상의 사용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TRIPs 협정 제31조상의 권리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루어지는 기타 사용에는 동 협정 제30조상의 사용이 제외된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TRIPs 협정 제31조상의 권리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용에는 동 협정 제30조상의 사용이 제외된다.

10) TRIPs 협정 제31조에 규정된 요건

이루어진 이후 신속하게 권리자는 통지받아야 한다. 공중의 비상업적 사용 건에서,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나 계약자가 특허검색 없이 알거나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권리자는 즉시 통지받는다(제31조 (b)).

다. 사용의 범위와 기간

이러한 사용의 범위와 기간은 이 사용 승인의 목적 내로 제한된다(제31조 (c)).

라. 사용의 비독점성

이러한 사용은 독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제31조 (d)).

마. 국내시장 공급을 위한 승인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을 승인한 회원국의 국내시장 공급을 위하여 주로 승인되어야 한다(제31조 (f)).

바. 사용 승인의 종료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용 승인을 허용한 상황이 끝나고, 재발할 것 같지 않다면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종료되어질 수 있다. 관할권이 있는 당국은 타당한 신청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존재를 재검토할 권한이 있다(제31조 (g)).

사.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그 심사

권리자는 사용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개별 건(사안)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제31조 (h)). 이러한 보상금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그 회원국의 사법 심사 또는 별개의 고위 관청에 의한 독립적인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제31조 (j)).

## 2. 기후변화협약상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전염병 유입 예측 기술, 전염병 등 질병치료를 위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기술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 1)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기술이전 등 협력의무

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1항과 동 항 (c)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고려하고, 자국의 특수한 국가적·지역적 개발 우선순위, 목표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운송·산업·농업·임업 그리고 폐기물관리 영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야에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억제하지 않은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의 억제·감축 또는 방지하는 기술·관행과 공정을 개발·적용·이전 그리고 보급시키는 것을 증진하고 협력한다”고 규정하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자국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하는데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2)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 이전·개발·지원

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5항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I에 포함된 기후변화협약의 선진국 당사국과 동 협약의 그 밖의 선진국 당사국은 다른 동 협약의 당사국들 특히, 개도국 당사국들이 기후변화협약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기술과 노하우의 이전과 접근을 적절하게 증진·촉진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선진국 당사국은 동 협약의 개도국 당사국의 내생적 능력과 기술의 개발·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돕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 3) 최빈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기술이전·자금 지원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은 자금 조달과 기술이전와 관련된 조치를 할 때 최빈개도국의 특수한 요구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9항)

## 4) 기술이전을 위한 개도국의 자원 이용

기후변화협약 제11조에서는 재정에 관한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기술이전을 위한 자원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제11조 제1항), 동 협약의 선진국 당사국들은 양자적, 지역적 그리고 다자적 경로를 통해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재원을 공급할 수 있고, 동 협약의 개도국 당사국은 이 재원을 이용할 수 있다(제11조 제5항).

# 3.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의 관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 1)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의 관계에 관한 기후변화 회의에서의 논의

2009년 11월 2~6일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회의에서 “비공식문서(non-paper) 36”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5가지 선택적 조치가 제시되었는데, “선택 1 : 기술의 개발, 보급과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균형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증진, 선택 2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기술 풀(pool) 만들기,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 이용,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등적 가격 실시, 선택 3 : 개도국, 최빈개도국 또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국가에게 필수적이고 긴급한 환경친화적기술의 특허를 배제하고, 이 기술의 현존하는 특허를 철회할 것을 요청함, 선택 4 : 특허 그리고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역점을 두고 다루는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함, 선택 5 : 특허와 라이선스가 기술이전을 하는데 장벽으로 작용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특수한 기술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요청함” 이 바로 그것이다.<sup>11)</sup>

WIPO 총재는 코펜하겐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회의에 2009년 12월 16일에 참석하여 “지식재산권 제도, 특히 특허는 녹색혁신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신속한 전세계적인 보급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녹색혁신을 위해서는 중대한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특허제도는 발명품을 상품화함으로써 기술 협력과 상업적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허가하거나 할당함으로써 기업에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특허 보호는 민간 영역의 국제적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고 지적했다.<sup>12)</sup>

더반 기후변화총회에서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ICTSD”）」는 “기후변화협약에서 지식재산과 기후변화에 관한 곤경의 극복: 앞으로 가야 할 길”이란 새로운 정책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에서 ICTSD는 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기술 이전·접근·재원 제공 등)를 언급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조치를 하려면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위한 원칙 수립의 긴급성을 강조했다.<sup>13)</sup>

## 2)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 ① 선진국의 입장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은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그들의 견해를 재확인한 바 있다.<sup>14)</sup> 일본은 “지식재산권은 연구와 개발투자를 보상하고, 더 좋은 기술이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 영역

11) *Technology Debated In UNFCCC Barcelona Talks; IP To Follow*, 『Intellectual Property Watch』, 5 November 2009. <http://www.ip-watch.org/2009/11/05/technology-debated-in-unfccc-barcelona-talks-ip-to-follow/>(검색일 : 2013. 9. 16.)  
 12)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Outlines How It Can Help Meet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December 16, 2009,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09/article\\_0060.html](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09/article_0060.html)(검색일 : 2013. 9. 16.)  
 13) *Ways Forward Proposed For Tech Transfer & IP At Durban Climate Talks*, 『Intellectual Property Watch』, 4 December 2011. <http://www.ip-watch.org/2011/12/04/ways-forward-proposed-for-tech-transfer-ip-at-durban-climate-talks>(검색일: 2013. 9. 16.)  
 14) Peet du Plooy, *Technology Diffus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novating to Combat Climate Change* 『Occasional Paper』 No. 144(Johannesburg, South Africa : 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pril 2013), p. 6.

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증진을 기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보호를 포함한 기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sup>15)</sup> 또한 일본은 “지식재산권은 미래의 더 낫은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위한 강한 동기를 제공하고, 기업 경쟁력의 근원이 된다”고 보고 있다.<sup>16)</sup> 호주는 “지식재산권은 기술의 협력이나 이용을 하는데 중요한 장벽이 아니고, 지식재산권의 불충분한 보호는 투자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한다.<sup>17)</sup>

## ② 개도국의 입장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쿠바같은 개도국들은 지식재산권은 기술이전을 하는데 있어 장벽(barrier)으로 작용한다고 했다.<sup>18)</sup> 2009년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전(前)단계인 국제기후변화 토론에서 선진국들이 소유한 탄소감축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개도국의 노력에 있어 주요한 장벽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sup>19)</sup>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개도국까지 기술의 알맞은 배치·보급·효과적인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합작사업을 증진시키고, 특수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관련 당사국들에게 지식재산권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sup>20)</sup> 중국은 “현존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기술의 개발·이전 그리고 배치하기 위한 점증하는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서 특허된 환경친화적기술의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혁신적인 지식재산권 공유제도가 환경친화적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해 발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sup>21)</sup> 잠비아는 “지식재산권은 현존하는 기술의 보급과 알맞은 배치를 억제하는 장애물이고 장벽”이라고 한다. 즉, 잠비아는 지식재산권이 기술을 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sup>22)</sup>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식재산권이 기술이전을 하는데 장벽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 가령, 강제실시와 특가(preferential pricing)를 통해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sup>23)</sup> 필리핀은 “지식재산권이 기술의 이전·협력과 보급의 장벽으로 작용하

15) UNFCCC, *Ideas and proposals on the elements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e Bali Action Plan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ifth session, Bonn, 13 March 2009, FCCC/AWGLCA/2009/MISC.1, p. 46.

16) UNFCCC, *Ideas and proposals on the elements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e Bali Action Plan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ourth session, Poznan, 10 December 2008, FCCC/AWGLCA/2008/MISC.5/Add.2(Part II), p. 23.

17) UNFCCC, *Ideas and proposals on the elements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e Bali Action Plan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ourth session, Poznan, 10 December 2008, FCCC/AWGLCA/2008/MISC.5/Add.2(Part I), p. 93.

18) Plooy, *supra* note 14), p. 6.

19) Copenhagen Economics & The IPR Company, *ARE IPR A BARRIER TO THE TRANSFER OF CLIMATE CHANGE TECHNOLOGY ?*, Copenhagen : Copenhagen Economics, 19 January 2009, p. 4.

20) UNFCCC, *supra* note 15), p. 11.

21) UNFCCC, *supra* note 15), p. 23.

22) UNFCCC, *supra* note 15), p. 82.

23) UNFCCC, *Ideas and proposals on the elements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e Bali Action Plan : Submissions from*

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의 긴급한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기술의 특허 보호를 배제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가령, 강제실시권)을 실행하고, 강화하는 국가들을 장려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sup>24)</sup> 볼리비아는 “지식재산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에 접근하고, 이 기술을 이전하는데 장벽이 되는데, 필수적이고 긴급한 환경친화적기술의 특허를 철회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sup>25)</sup> 베네주엘라는 “지식재산권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모든 조치를 억제시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고 하면서 “TRIPs 협정상 강제실시권을 포함한 모든 유연성 조항을 사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베네주엘라는 “환경친화적 기술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벽과 압박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규정을 재검토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합작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지식재산권 공유제도의 증진, 기후친화적인 기술 (climate-friendly technologies)에 관한 특허의 제한/감소” 를 주장하고 있다.<sup>26)</sup>

#### 4. 도하 기후변화총회에서 기술이전에 관한 각국의 입장

도하 기후변화총회에서 스리랑카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개도국에게 지급 가능한 환경친화적기술의 접근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장치를 기대하고 있다.<sup>27)</sup> 파키스탄에서는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지원을 위한 장벽의 제거를 원한다.<sup>28)</sup> 이란도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이전은 개도국 사이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9)</sup> 탄자니아, 베트남, 라이베리아, 짐바브웨, 르완다, 방글라데시, 앙골라도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다.<sup>30)</sup> 필리핀에서도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Sixth session, Bonn, 19 May 2009, FCCC/AWGLCA/2009/MISC.4(Part II), p. 83.

24) UNFCCC, *supra* note 23), p. 67.

25) UNFCCC, *Ideas and proposals on the elements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e Bali Action Plan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Seventh session, Bangkok, 17 September 2009, FCCC/AWGLCA/2009/MISC.6, p. 9.

26) UNFCCC, *Views on the elaboration of market-based mechanisms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ourteenth session, Bangkok, 21 March 2011, FCCC/AWGLCA/2011/MISC.2, p. 88.

27) U. D. Basnayake,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ri Lank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t its 18th Session(COP18) and 8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a Meeting of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CMP8) ,6 December 2012, pp. 4~5.

28) M. A. Gardezi,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Federal Secretary, Ministry of Climate Change, Pakistan*,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 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pp. 4 ~5.

29) M. J. M. Zadeh,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Vice President and Head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Islamic Republic of Iran*,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4 December 2012, p. 2.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다.<sup>31)</sup> 몽골은 기술이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하게 바라 고 있다.<sup>32)</sup> 나이지리아는 기술이전이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에 의해 결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3)</sup> 크로아티아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환경친화적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4)</sup> 잠비아는 기술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한데, 기후관련기술과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주장한다.<sup>35)</sup> 소말리아는 저탄소(low-carbon) 기술과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필요성을 언급했고<sup>36)</sup>, 우간다에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기술이 부족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sup>37)</sup>, 기후변화 대응기술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레소토는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을 원하고 있고<sup>38)</sup> 우즈베키스탄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기술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sup>39)</sup>

- 30) T. L. Huvisa,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State - Vice President's Office Responsible for Environment 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p. 3. ; Tran Hong Ha,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Vice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the head of Vietnamese Delegation*,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p. 1. ; J. D. Cassell,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Gender and Development, Republic of Liber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p. 7. ; F. R. Nhekairo,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by the Head of Delegation for Zimbabwe*,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p. 6. ; S. Kamanzi,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the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Republic of Rwand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p. 2. ; Hasan Mahmud,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s, Bangladesh*,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p. 4. ; M. F. Jardim,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of Angol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p. 3.
- 31) M. A. Limport Sering,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Vice-Chairperson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Philippine*,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pp. 5~6.
- 32) S. Oyun,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and Green Development of Mongol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p. 2.
- 33) H. I. Mailafia,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Environment, Federal Republic of Niger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p. 6.
- 34) Mihael Zmajlovic,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Environmental and Nature Protection, the Republic of Croat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p. 2.
- 35) W. C. Simuusa,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Lands,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Republic of Zamb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p. 5.
- 36) B. M. Hamza,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Head of the Somali Delegation*,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p. 2.
- 37) E. Kamuntu,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Water and Environment and Head of the Ugand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p. 3.
- 38) T. T. Thahane,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the Minister of Energy, Meteorology and Water Affairs of the Kingdom of Lesotho*,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p. 2.
- 39) A. Merkusshkin,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Head of the Delegation of Republic of Uzbekistan*, Doha,

### Ⅲ.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 1.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려운 TRIPs 협정의 목적 규정에 따른 한계

TRIPs 협정 제7조의 목적 규정은 구체적으로 집행력을 갖는 규정이 아니다. 이 목적대로 시행된다면 선진국 또는 선진국 소재 기업의 지식재산권 제한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의 이전을 개도국에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적 규정은 사실상 추상적·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이 지식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해 쉽게 개도국으로 이전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개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전세계가 균형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다. 이를테면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확산·환경오염 등의 피해·폭풍이나 홍수의 증대 등이 외국의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내의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해서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한계까지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국가들,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경우 이러한 피해가 야기되었을 때 이 피해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워 자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 2. 기후관련 기술 특허의 선진국 집중에 따른 한계

환경친화적 기술인 청정에너지기술(Clean Energy Technologies : CETs)에 관한 모든 분야의 특허권 중 거의 80%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등 6개국이 갖고 있다.<sup>40)</sup>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특허권이 거의 없다.<sup>41)</sup>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의 보고서인 「세계경제사회 조사 2009 : 개발 증진, 지구 보호(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09 : Promoting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p. 2.

40)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EPO(European Patent Office) & ICTSD(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tents and Clean Energy: Bridging the Gap Between Evidence and Policy : Final Report*(Geneva : UNEP, Munich : EPO, Geneva : ICTSD, 2010), p. 9.

41) Ahmed Abdel Latif et al., *Overcoming the Impass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Climate Change at the UNFCCC: A Way Forward*, 『Policy Brief』 No. 11(Geneva : ICTSD, November 2011), pp. 4~5.

*Development, Saving the Planet*)」에서도 기후관련 기술의 특허권이 주로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2)</sup> 그래서 환경친화적 기술 등 기후관련기술 특허의 선진국 집중으로 인하여 개도국에서는 선진국과 기술협력·이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기 어려워져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더 취약해 질 수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어려워지면 가령,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염병 등 질병 출현에 따른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야 할 경우 질병통제기술을 개발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들이 기후관련 기술 특허를 주장하면서 기술공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예컨대,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질병의 출현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선진국의 발전된 기후관련 기술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인권 증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질 수 있다.

### 3. 환경친화적 기술 특허 공유의 한계 :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

전세계의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 대응관련 기술을 공유해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등 인권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BCSD” )」의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는 기업과 기타 지식재산권자가 보유한 환경친화적 특허기술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목표는 환경보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과 해결방안이 쉽게 공유되어 지도록 하는 수단의 제공, 특허 제공 기업과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의 잠재적 사용자가 서로 환경에 이익이 되는 해결책의 개발과 더 나은 공동혁신을 조장하기 위해 협력·협동의 증진과 장려”이다.<sup>43)</sup> 그러나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를 통한 환경친화적기술 공유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되긴 어렵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 1) 기업의 투자 위축

혁신적인 환경친화적기술이 발명되어서 기업이 이 발명품에 대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향후 이 발명품이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 제공될 것이 예견된다면 이 발명품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42) UN/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09 : Promoting Development, Saving the Planet*(New York : United Nations, 2009), pp. 127~128.

43)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co-Patent Commons : A leadership opportunity for global business to protect the planet*(Geneva : WBCSD, July 2011), pp. 1~2.

## 2)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른 기술특허 공유의 어려운 점

기업에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기술특허에 대해서는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 이 특허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기술특허를 공유하면 기업에서는 그러한 이윤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 기업의 특허공유 동기유인이 사라질 때 특허공유의 어려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또는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도움을 얻고자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 참여했을 때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제고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비즈니스를 통한 장점이 없다면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 참여한 기업의 더 이상의 특허공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sup>44)</sup>

## 4) 개도국의 기술 이전·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움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서 공유하는 특허는 WBCSD의 홈페이지에서 특허번호를 통한 기본정보 제공, 링크된 출원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상세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 공유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이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만으로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하우를 얻기 어렵고, 당해 기술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서 제공하는 특허 정보만으로는 개도국의 기술개발이나 이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45)</sup>

## 4. 기후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막대한 피해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준비의 어려움에 따른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표 1> 전세계의 2007~2011년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단위 : 10억 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중 국	7.01	7.79	8.27	8.90	9.70
미 국	5.91	5.74	5.33	5.53	5.42
인 도	1.48	1.56	1.75	1.86	1.97

44) 신지연 외,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공유화에 대한 연구』 (대전 : 특허청, 2010. 12), 95면.

45) 신지연 외, 앞의 주 44), 94~95면.

러 시 아	1.81	1.80	1.74	1.78	<b>1.83</b>
일 본	1.33	1.25	1.18	1.26	<b>1.24</b>
독 일	0.84	0.86	0.80	0.84	0.81
한 국	0.52	0.54	0.54	0.59	0.61
캐 나 다	0.59	0.57	0.53	0.54	0.56
인도네시아	0.40	0.41	0.44	0.49	0.49
영 국	0.54	0.53	0.49	0.50	0.47
사우디 아라비아	0.36	0.38	0.40	0.43	0.46
멕 시 코	0.45	0.45	0.44	0.44	0.45
브 라 질	0.39	0.41	0.39	0.44	0.45
호 주	0.42	0.44	0.44	0.40	0.43
이 탈 리 아	0.47	0.46	0.41	0.42	0.41
남 아 공	0.37	0.37	0.35	0.36	0.36
프 랑 스	0.39	0.40	0.38	0.38	0.36
폴 란 드	0.32	0.32	0.31	0.34	0.35
우크라이나	0.35	0.34	0.28	0.30	0.32
스 페 인	0.37	0.33	0.30	0.29	0.30
대 만	0.28	0.27	0.26	0.27	0.27
태 국	0.22	0.23	0.22	0.23	0.23

출처 : Jos G. J. Olivier et al.,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2012 Report*(The Hague/Bilthoven :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2012), p. 28.

위 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온실가스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97억톤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출을 하고 있고, 미국 54.2억 톤, 인도 19.7억 톤, 러시아 18.3억 톤, 일본 12.4억 톤, 독일 8.1억 톤, 한국 6.1억 톤, 캐나다 5.6억 톤, 영국 4.7억 톤, 호주 4.3억 톤, 대만 2.7억 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주요배출국인 중국·미국·인도·러시아·일본이 배출하는 CO<sub>2</sub>의 양을 합치면 전세계에서 배출하는 CO<sub>2</sub>의 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CO<sub>2</sub>의 배출량이 일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대만, 태국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우리나라에 다량 유입되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5.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기후변화는 선진국, 개도국 등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취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발생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의 변동이 심해지면 다양한

기상재해의 발생에 따른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여 물이 부족하게 되거나 노동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져 피해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저지대에 있거나 작은 섬에 있는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야기되어 가옥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기게 되는 피해를 겪게 된다.<sup>46)</sup> 나아가서 태풍, 폭풍, 해일, 홍수 등으로 인하여 실종자와 사망자가 증가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급증하면 기업이 활동하기 어렵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피해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의 Germanwatch가 2012년 11월에 발행한 「글로벌 기후위기지수 2013(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10개국 모두 개도국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기후위기지수(Climate Risk Index : CRI) : 1992년~2011년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10개국의 특별지표에 따른 연평균 결과**

순위	국 가	CRI 점수	연평균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 당 연평균 사망자 수	GDP의 연평균 손실률 (%)
1	온두라스	10.83	329.25	4.96	2.84
2	미얀마	11.00	7,137.25	13.79	1.41
3	니카라과	18.50	160.0	2.82	1.89
4	방글라데시	20.83	824.4	0.58	1.18
5	아이티	21.17	301.1	3.43	1.08
6	베트남	23.67	433.15	0.55	1.06
7	북한	26.00	76.65	0.33	7.64
8	파키스탄	30.50	545.9	0.38	0.73
9	태국	31.17	160.4	0.26	1.38
10	도미니카 공화국	31.33	211.6	2.47	0.35

출처: Sven Harmeling & David Eckstein,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 (Bonn: Germanwatch, 2012), p. 6.

기후변화는 기업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영국무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과 전세계 약 200개국의 정치·경제·기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2011년 1월~2월에 기업 영역을 대표하는 전세계 705개 기업을

46) 정지원·박수경,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12~14.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기업의 기회와 위기 등에 설문조사한 결과 “약 90%의 기업이 지난 3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았고, 기업의 55%는 기후와 관련된 피해가 증가했다고 했고, 조사대상 기업의 9%만이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기업의 17%는 기후변화로 인해 건물이나 장비가 손상을 입어 피해를 받았다” 고 했다.<sup>47)</sup> 그리고 “동 조사대상 기업의 31%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상품이 묶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익을 잃었다고 답했고, 20%는 투자에서 손해를 입거나 투자 실패로 피해를 입었다” 고 한다.<sup>48)</sup> 이처럼 기후변화는 기업활동을 하는데 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는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선진국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여 그들의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 6.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한계

기후변화로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알레르기 환자 등이 증가할 수 있다. 박해심의 “기후변화가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 에 따르면 「 “온도 상승은 꽃가루를 생성하는 나무나 잡초의 성장을 증가시키고, 꽃가루 수 생산과 확산능이 증가함으로써, 꽃가루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며, 이러한 기후 변화에 민감한 꽃가루가 있다(예 : 돼지풀, 환상덩굴). 꽃가루는 직접적으로 기도 점막에 알레르기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면역세포(Th2 면역세포) 반응을 강화시켜 알레르기 증상을 증가시킨다. 또한 꽃가루와 대기 분진이 결합하여, 단백질의 변성을 유도하여 알레르기 발생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폭우와 같은 날씨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꽃가루에 농도가 증가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실내 집먼지 진드기의 농도가 증가하고, 습도가 감소하면서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이 증가할 수 있다.” 」 고 한다.<sup>49)</sup>

더욱이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이 증가될 수 있는데<sup>50)</sup>, 이에 따라 이 감염병이 전세계 곳곳으로 유입되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감염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온이 상승하여 매개곤충이 증가에 따른 매개체 전파 감염병 증가, 기온과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수인성·식품매개질병 원인균의 성장 촉진, 기온의 상승에 따른 오존 농도 증가로 호흡기 질환 환자의 증상 악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발생과 심폐질환자의 증상 악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sup>51)</sup>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의 증가가 이루

47) UK Trade & Investment(UKTI)·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dapting to an Uncertain Climate: A World of Commercial Opportunities*(London : UK Trade & Investment(UKTI)·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1), pp. 1~2.

48) UK Trade & Investment(UKTI)·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upra* note 47). p. 6.

49) 박해심, “기후변화가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건강포럼』 제3차 월례포럼: 기후변화와 꽃가루! 알레르기질환 관리방안은 무엇인가?(기후변화건강포럼, 2009. 2), 27~28면.

50) 관계부처 합동,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 전략(안) (2012~2016)』, 2012. 9. 13., 35면.

어질 수 있다. 정기혜의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예측”에 따르면 식품안전분야에서 온도와 습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식중독이 기후 온난화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식품분야에서 식중독 발생 증가 등이 예측되고 있고, 2050년에는 2007년 대비 평균기온이 1.2℃ 상승하면 식중독 발생률은 약 6.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한다.<sup>52)</sup> 또한 피부암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후변화에 따라 인간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 7.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에 따른 한계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개도국과 선진국간 기술 이전·개발·협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기술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 해결의 급박함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TRIPs 협정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TRIPs 협정 제45조에서는 손해배상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 자체가 없다.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준비를 할 때 선진국과의 분쟁으로 인한 상당한 시간을 소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에 따른 시간이 소모되면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IV.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1.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지원

51) 최혜련 외, 『한국의 기후변화 건강영향과 적응대책』 (충북 : 질병관리본부, 2011), 56면.

52) 정기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예측”, 『기후변화건강포럼』 제6차 월례포럼 :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건강포럼, 2009. 6), 81면.

TRIPs 협정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제67조),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기술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c)~(i)호). 그리고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개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보유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을 통해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면 개도국은 이 기술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PPP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유엔재단(United Nations Foundation)은 “일련의 기간 동안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얻고, 자원의 할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협동자가 각자의 힘을 확립하는 자발적인 연합”<sup>53)</sup>으로 PPP를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광범위하게 합의된 PPP의 정의는 없다고 하면서 대체로, PPP는 공공인프라 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동의 목표에 관한 명확한 동의를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하에 민간영역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나 사업의 요소에 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준비”라고 한다.<sup>54)</sup>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2008)의 「ODA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구축 방안 - 우리기업 진출 관련 PPP 시범사업 추진 방향 -」에 따르면 “PPP는 개도국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 정부가 기업의 대개도국 원조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자금, 기술, 전문성 등이 개도국 진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의미(민관 공동사업, 공동기금 등)”한다.<sup>55)</sup> 요컨대, PPP는 민간(Private) 영역과 공공(Public) 영역이 공동의 책임하에 개도국의 경제발전, 공공복리·사회복지증진 등의 개발을 위하여 개도국에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진국 정부, 개도국 정부, 민간기업 등이 PPP를 통해 서로 협력해서 개도국의 환경친화적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 시행할 필요

53) World Economic Forum & United Nations Found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Meeting in the Middle*(Geneva : World

Economic Forum & Washington DC : United Nations Foundation, 2003), p. 2.

54) World Bank, *A World Bank Resource for PPPs in Infrastructure : What a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http://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검색일 : 2013. 9. 16).

55)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ODA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구축 방안 - 우리기업 진출 관련 PPP 시범사업 추진 방향 -』(서울 : 외교통상부), 2008. 11. 14, 1면.

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한 특허로 인하여 개도국에 이러한 기술의 이전이 어려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PPP를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 등의 기술협력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도울 수 있다. 더욱이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PPP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기 전 단계 또는 초기단계에서 PPP를 통한 기술협력을 할 경우 선진국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연구·개발 문제나 지식재산권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상이 2015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회의에서 PPP에 대한 협상을 해서 새 기후변화체제에서는 PPP를 통해 개도국이 기술협력 등의 지원을 받는다면 개도국이 향후 자생력이 있는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강화되면 전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초국경적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후변화로 위협받게 되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PPP는 인권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2.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서 공유하는 정보 보안을 통한 개도국의 기술 이전·개발 촉진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서 공유하고 제공하는 특허정보만으로는 개도국의 기술 개발·이전이 어렵다. 따라서 관련 기술 정보, 투자계획, 기술 개발시 어려웠던 점, 생산설비, 기술개발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준비과정, 기존 기술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개도국이 이러한 정보를 보고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56)</sup> 이렇게 해서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이전받거나 이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결국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등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명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고, TRIPs 협정 제 45조에 손해배상 규정이 있지만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없다.

56) 신지연 외, 앞의 주 44), 102면 참조.

환경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하는 등의 과정에서 기술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가령, 선진국과 개도국간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하게 되어 장기간 법적 공방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를 정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런 시간 소모와 법적 공방으로 인해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을 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선진국의 국내 법원이나 개도국의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할 경우 이러한 소송 결과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지라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긴 어렵다. 그런데 향후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이전·협력·개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기후변화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에 적용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기후변화협상을 통해 도출해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어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4. 새 기후변화체제에 특허권이 갖는 배타적 권리의 제한적 예외 사례 규정

TRIPs 협정 제30조에서는 특허권에서 부여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 예외의 구체적 사례는 열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대한 특허에 부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 예외 사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가령, 환경특허 기술에 대한 시험 연구의 목적을 제한적 예외의 사유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새 기후변화체제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이러한 제한적 예외 사례가 무엇인지 TRIPs 협정과의 해석에서 충돌되지 않도록 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특허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의약품이 이 특허로 인하여 이 의약품 가격이 높을 때 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자국민의 건강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약품이 필요한데, 의약품 가격이 높아서 자국민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외국의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허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이 특허를 제한해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의약품을 쉽게 수입해서 자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허가 갖는 배타적 권리를 어떻게 제한하고, 이 제한적 예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여 2020년 이후 새롭게 출

범하는 기후변화체제에 반영되어야 한다.

## 5.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새 기후변화체제에 마련

TRIPs 협정 제31조에서는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에서는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온실가스 대응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했을 때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개도국이 지식재산권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 이러한 보상금 규정을 잘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자 입장에서는 기술이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판단하여 기술이전을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자에게 제공되는 보상금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6.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예방·통제 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기후변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기후변화를 통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발생을 사전에 예보하거나 이러한 질병의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술을 연구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 국민의 건강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한 기술 특허가 이루어질 때 TRIPs 협정 제31조에 따라 권리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특허대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7.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국내적 방안

### 1) 여성근로자의 임신에 따른 출산으로 인한 질병 발생시 별도의 휴가 제공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그런데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여성근로자가 출산 이후 직무에 복귀했을 때 출산에 따른 질병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이 출산전후휴가와와는 독립된 추가적인 휴가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 제183호인 모성보호협약(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sup>57)</sup> 제5조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야기된 질병, 합병증 또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을 때 출산휴가 전 또는 후에 휴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휴가의 성질과 최대 휴가기간은 국내법과 관습에 따라 명시되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질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성보호협약 제5조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여 출산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 후 휴가 이후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이후 출산에 따른 합병증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산전후휴가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2)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13년 8월 22일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폭염 등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폭염 등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동 법률안 제54조 제3항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sup>58)</sup>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등이 발생하여 근로시간에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이 안 좋을 때 휴게시간이 더 필요한 날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좋은 날에는 휴게시간이 적어도 되는 날이 있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무조건 하루에 8시간 근로해야 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후변화에 따라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제공하되, 주 5일간 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근로자가 기후변화에 의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30분 휴게시간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7시간 30분을 근무했을 경우 그 주 또는 그 달에 해당하는 날에 8시간 30

5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No. 183.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328:NO](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328:NO), 검색일 : 2013. 9. 20).

5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906480, 2013년 8월 22일, 1~5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L3G0F8P2X2L1S4S0Y4M2J7D4L2D9&billname=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L3G0F8P2X2L1S4S0Y4M2J7D4L2D9&billname=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검색일 : 2013. 9. 21).

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건강이 안 좋은 날에는 조금 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른 날에 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더 근로하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시작 전 30분 이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연장근로 시작 전 30분 이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할 경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제공되는 유급 휴게시간이 되어야 한다.

### 3) 야간근로에 기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ILO 협약 제171호인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Night Work, 1995)」에서는 야간근로를 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호, 야간근로에 부적합한 근로자의 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59)</sup>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경우 주간근로보다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의 적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Night Work, 1995)」을 검토하고, 이 협약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①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Night Work, 1995)」 규정 검토

##### 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보장과 불이익 금지

“근로자들이 청구하면 (a) 야간근로의 임무를 맡기 전, (b) 야간근로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c) 야간근로를 하는 동안 야간근로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지 않았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들은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의 근로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4조 제1항).” 그리고 “근로자의 야간근로가 부적당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검진결과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공개되어선 안 되고, 이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4조 제2항).” 따라서 근로자는 야간근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야간근로를 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그리고 야간근로를

59)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Convention concerning Night Work 1990(No. 171)*.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316:NO](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316:NO)(검색일: 2013. 9. 20)

하기 전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야간근로를 하는 동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무료건강진단을 받을 권리, 근로와 관련한 건강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공개/비공개 결정권이 있고, 이 검진결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

나. 야간근로자를 위한 응급조치시설 마련과 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수송 대비책 촉구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적당한 응급조치시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야간근로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장소로 신속히 수송하기 위한 준비도 마련해야 한다(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5조).” 따라서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를 위한 응급조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근로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수송하기 위한 준비도 있어야 한다.

다. 야간근로에 부적합한 근로자의 보호

“건강상의 이유로 야간근로에 부적합한 것으로 증명된 야간근로자는 실행 가능할 때 이 근로자에게 적합한 유사 직종으로의 전환을 제공받아야 한다(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6조 제1항).” “만약 이러한 유사 직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당해 근로자는 근로를 할 수 없거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이익을 부여받아야 한다(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6조 제2항).” “야간근로에 일시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증명된 야간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할 수 없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 또는 해고예고로부터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6조 제3항).” 따라서 근로자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야간근로를 하기 어려울 때 이 근로자에게 적합한 유사한 직종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근로할 수 없거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이익을 가질 수 있고,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일시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건강 문제로 근로할수 없는 근로자처럼 해고나 해고예고로부터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②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Night Work, 1995)」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ILO 협약 제171호인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Night Work, 1995)」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심해지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이 협약을 통해서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Night Work, 1995)」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기 전, 야간근로를 하는 동안, 야간근로를 완료한 이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검진비용 부담을 정부와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병원 치료를 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셋째, 야간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기 어려워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이 근로자가 주간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누적될 수 있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열차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CPTED 전략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성 강화

지하철 역사 내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킬 수 있어도 교통약자의 지하철역 이용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최소화하면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 전략을 통해서 지하철 역사의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교통약자가 이 편의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영역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통약자가 지하철역 출입구 안으로 들어와서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려고 할 때 이 편의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바닥의 색상을 차별화한다면 교통약자의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교통약자 편의시설까지 가는 지하철 역사 내 바닥의 색상을 가령,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하고, 주로 일반인들이 이동하는 지하철 역사 내 바닥의 색상을 하얀색이나 회색 등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하철 역사 바닥의 색상을 차별화하면 교통약자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서 바닥 색상의 차별화에 따른 명확한 영역 구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쉽게 적발할 수 있어 지하철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② 지하철 내 교통약자 배려석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 강화

지하철 열차 내에는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교통약자용 좌석인 교통약자 배려석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 배려석을 이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교통약자가 지하철 열차 내에서 앉아서 이동하지 못하고, 일어서 있는 상태로 불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통약자 배려석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배려석 윗 부분에 “이 좌석은 교통약자 배려석입니다” 라고 써 있는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서 교통약자 배려석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지하철 열차 내 일반인들이 앉는 좌석의 색상을 가령, 회색으로 할 경우 교통약자 배려석의 색상은 파란색이나 분홍색 등으로 해서 일반인들의 좌석과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교통약자 배려석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스티커 부착, 일반인 좌석과 교통약자 배려석의 색상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일반인들이 교통약자 배려석을 앉는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교통약자 배려석에 교통약자가 앉은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일어서서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교통약자 배려석에 앉은 상태에서 바로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교통약자 배려석 근처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면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우 비상벨을 눌러서 지하철역 직원과 신속히 연락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편의와 비상벨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사람의 앉은 키 높이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교통약자가 쉽게 비상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③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대학교 소속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성을 증진시킨다면 교통약자가 더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은 본인의 소속대학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을 쉽게 왕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이후 본인의 소속대학 인근의 지하철역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과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증진되고,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대입구역, 왕십리역, 한양대역, 홍대입구역, 신촌역, 이대역, 교대역, 동대입구역, 숙대입구역, 총신대입구역, 남성역, 성신여대입구역, 한성대입구역, 혜화역, 안암역, 고려대역, 화랑대역, 어린이대공원역, 건대입구역, 숭실대입구역 등의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은 본인이 소속된 대학 근처에 위치한 지하철역을 왕래하기 쉽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 대학생들이 본인이 소속된 대학교 인근의 지하철역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과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V. 결 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등의 인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었고, 2020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새 기후변화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기후변화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향후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협력과 이전 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 등의 환경친화적 기술, 전염병 예방·통제 기술 등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에서는 이러한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선진국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피해 역시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해서 전세계가 균형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피해는 전세계가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는 국가의 국경을 넘는 피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지원, 환경특허공용체(The Eco-Patent Commons)에서 공유하는 정보 보안을 통한 개도국의 기술 이전·개발 촉진,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명시, 새 기후변화체제에 특허권이 갖는 배타적 권리의 제한적 예외 사례 규정,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새 기후변화체제에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예방 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국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TRIPs 협정상 특허권 제한이나 예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예컨대,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기술 특허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TRIPs 협정 제27조 제2항·제30조·제31조의 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 규정을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 시행한다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통해 인권 증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노력만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균형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할 때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국문 문헌

#### 1) 논문 및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 전략(안) (2012~2016)』, 2012. 9. 13.

\_\_\_\_\_,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2013. 5. 28.

박해심, “기후변화가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건강포럼』 제3차 월례포럼: 기후변화와 꽃가루! 알레르기질환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기후변화건강포럼, 2009. 2.

신지연 외,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공유화에 대한 연구』, 대전 : 특허청, 2010. 12.

안미정 외,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간 기술이전에 대한 지적권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연구』, 대전 : 특허청, 2009.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ODA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구축 방안 - 우리기업 진출 관련 PPP 시범사업 추진 방향 -』, 서울 : 외교통상부, 2008. 11. 14.

정기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예측”, 『기후변화건강포럼』 제6차 월례포럼: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건강포럼, 2009. 6.

정지원·박수경,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최혜련 외, 『한국의 기후변화 건강영향과 적응대책』, 충북 : 질병관리본부, 2011.

#### 2) 국내법과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특허법

헌 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906480, 2013년 8월 22일.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L3G0F8P2X2L1S4S0Y4M2J7D4L2D9&billname=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L3G0F8P2X2L1S4S0Y4M2J7D4L2D9&billname=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일 : 2013. 9. 21.

## 2. 영문 문헌

### 1) 영문 보고서

Copenhagen Economics & The IPR Company, *ARE IPR A BARRIER TO THE TRANSFER OF CLIMATE CHANGE TECHNOLOGY ?*, Copenhagen : Copenhagen Economics, 19 January 2009.

Harmeling, Sven & Eckstein, David,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 Bonn : Germanwatch, 2012.

Latif, Ahmed Abdel et al., *Overcoming the Impass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Climate Change at the UNFCCC: A Way Forward*, 『Policy Brief』 No. 11, Geneva : ICTSD, NovemBer 2011.

Olivier, Jos G. J. et al.,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2012 Report*, The Hague/Bilthoven :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2012.

Plooy, Peet du, *Technology Diffus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novating to Combat Climate Change*, 『Occasional Paper』 No. 144, Johannesburg, South Africa : 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pril 2013.

UK Trade & Investment(UKTI)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dapting to an Uncertain Climate: A World of Commercial Opportunities*, London : UK Trade & Investment(UKTI)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1.

UN/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09 : Promoting Development, Saving the Planet*, New York : United Nations, 2009.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EPO(European Patent Office) & ICTSD(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tents and Clean Energy: Bridging the Gap Between Evidence and Policy : Final Report*, Geneva : UNEP, Munich : EPO, Geneva : ICTSD, 2010.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co-Patent Commons : A leadership opportunity for global business to protect the planet*, Geneva : WBCSD, July 2011.

World Economic Forum & United Nations Found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Meeting in the Middle*, Geneva : World Economic Forum & Washington DC : United Nations Foundation, 2003.

## 2) 영문 웹사이트

*Technology Debated In UNFCCC Barcelona Talks; IP To Follow*, 『Intellectual Property Watch』, 5 November 2009.

<http://www.ip-watch.org/2009/11/05/technology-debated-in-unfccc-barcelona-talks-ip-to-follow/>, 검색일 : 2013. 9. 16.

*Ways Forward Proposed For Tech Transfer & IP At Durban Climate Talks*, 『Intellectual Property Watch』, 4 December 2011.

<http://www.ip-watch.org/2011/12/04/ways-forward-proposed-for-tech-transfer-ip-at-durban-climate-talks/>, 검색일 : 2013. 9. 16.

World Bank, *A World Bank Resource for PPPs in Infrastructure : What a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http://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 검색일 : 2013. 9. 16.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Outlines How It Can Help Meet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December 16, 2009,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09/article\\_0060.html](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09/article_0060.html), 검색일 : 2013. 9. 16.

WTO, *Understanding the WTO : Members and Observers*,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검색일 : 2013. 9. 16.

3)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보고서

UNFCCC, *Ideas and proposals on the elements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e Bali Action Plan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ourth session, Poznan, 10 December 2008, FCCC/AWGLCA/2008/MISC.5/Add.2(Part I).

\_\_\_\_\_, *Ideas and proposals on the elements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e Bali Action Plan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ourth session, Poznan, 10 December 2008, FCCC/AWGLCA/2008/MISC.5/Add.2(Part II).

\_\_\_\_\_, *Ideas and proposals on the elements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e Bali Action Plan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ifth session, Bonn, 13 March 2009, FCCC/AWGLCA/2009/MISC.1.

\_\_\_\_\_, *Ideas and proposals on the elements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e Bali Action Plan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Sixth session, Bonn, 19 May 2009, FCCC/AWGLCA/2009/MISC.4(Part II).

\_\_\_\_\_, *Ideas and proposals on the elements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e Bali Action Plan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Seventh session, Bangkok, 17 September 2009, FCCC/AWGLCA/2009/MISC.6.

\_\_\_\_\_, *Views on the elaboration of market-based mechanisms : Submissions from Parties*,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ourteenth session, Bangkok, 21 March 2011, FCCC/AWGLCA/2011/MISC.2.

\_\_\_\_\_,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Observer States*,

[http://unfccc.int/parties\\_and\\_observers/parties/items/2352.php](http://unfccc.int/parties_and_observers/parties/items/2352.php), 검색일 : 2013. 9. 16.

#### 4) 도하 기후변화총회 자료

Basnayake, U. D.,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ri Lank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t its 18th Session(COP18) and 8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a Meeting of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CMP8), 6 December 2012.

Cassell, J. D.,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Gender and Development, Republic of Liber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Gardezi, M. A.,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Federal Secretary, Ministry of Climate Change, Pakistan*,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 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Hamza, B. M.,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Head of the Somali Delegation*,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Hong Ha, Tran,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Vice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the head of Vietnamese Delegation*,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Huvisa, T. L.,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State - Vice President's Office Responsible for Environment 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Jardim, M. F.,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of Angol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Kamanzi, S.,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the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Republic of Rwand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Kamuntu, E.,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Water and Environment and Head of the Ugand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Mahmud, Hasan,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s, Bangladesh*,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Mailafia, H. I.,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Environment, Federal Republic of Niger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Merkushkin, A.,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Head of the Delegation of Republic of Uzbekistan*,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Nhekairo, F. R.,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by the Head of Delegation for Zimbabwe*,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Oyun, S.,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and Green Development of Mongol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Sering, M. A. Limport,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Vice-Chairperson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Philippine*,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Simuusa, W. C.,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Lands,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Republic of Zamb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Thahane, T. T.,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the Minister of Energy, Meteorology and Water Affairs of the Kingdom of Lesotho*,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5 December 2012.

Zadeh, M. J. M.,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Vice President and Head of the Deopartment of Environment, Islamic Republic of Iran*,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4 December 2012.

Zmajlovic, Mihael, *High Level Segment with Statement of Minister of Environmental and Nature Protection, the Republic of Croatia*, Doha, Qata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COP18/CMP8), 6 December 2012.

#### 5) 국제법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Convention concerning Night Work*, 1990(No. 171).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316:NO](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316:NO), 검색일 : 2013. 9. 20.

\_\_\_\_\_,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No. 183.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328:NO](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328:NO), 검색일 : 2013. 9. 20.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논문수상작  
**2013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상**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연구

장하진

## 요 약

우리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있었는데, 본 논문은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 관련 단원이 설정되어 있는 사회과와 기술·가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도덕과 교과서, 그리고 장애인 관련 내용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국어과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할 점과 권장할 점을 모니터링 하였다. 사회과, 기술·가정과, 도덕과 3개의 교과서는 장애인 관련 내용을 독립된 단원으로 설정하여 장애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과, 삽화나 사진도 보행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을 제시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국어과에서는 교과서에 신기에 부적절한 문학작품이 있으므로 그런 작품은 제외할 것과, 반면에 비문학적인 글 중 전기문과 논술문·기사문 쓰기 단원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모든 교과서로 확산할 것을 권장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관련 단원, 교과서 모니터링, 장애인 인식 개선

## 목 차

### I.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제한

###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 유형
2. 장애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3. 교과서와 장애인 관련 단위
4.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

### III. 본 론

1. 사회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단위 분석
  - 1.1 분석
  - 1.2 사회과 교과서 모니터링
2. 기술가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단위 분석
  - 2.1 분석
  - 2.2 기술·가정과 교과서 모니터링
3. 도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단위 분석
  - 3.1 분석
  - 3.2 도덕과 교과서 모니터링
4. 국어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단위 분석
  - 4.1 분석
  - 4.2 국어과 교과서 모니터링

### IV. 결 론

### 참고문헌

## 표목차

- <표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
- <표 2> 사회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 정리
- <표 3> 기술·가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 정리
- <표 4>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비교
- <표 5> 도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 정리
- <표 6> 국어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 정리

## I. 서 론

### 1. 연구 목적

장애는 한번 입게 되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과 갖가지 차별은 장애인과 그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무시·협박·왕따·폭행, 외출시 일상적으로 겪는 이동의 제한, 면접이나 취업시 겪는 질시·차별, 생계수단의 상실로 인한 빈곤 등,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은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만,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속하기 때문에 체념한 채 살아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교과목 시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 장애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교육 활동보다 지속적, 체계적, 연계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sup>1)</sup> 그리고 장애 학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 자신과 ‘다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증진시킬 수 있어, 교과서는 다른 특별한 자료 없이도 그 자체로 장애 이해 교육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이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사용되는 주교재인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의 학습내용 및 삽화 등에 나타난 장애인관은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up>3)</sup> 이 연구는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장애 관련 단원을 분석하고 평가, 보완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개선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인권을 신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1) 이은정, ‘수정된 도덕과 교육과정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28.  
2) 광정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2.  
3) 선혜영,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국어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1.

## 2. 연구의 제한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접하는 교과서가 양적으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2007 개정 국민공통과목으로 제한하였으며, 그 중에서 장애인 관련 단원이 직접 설정되어 있는 사회과, 기술·가정과 교과서와 장애인 관련 자료가 자주 활용되는 도덕과 교과서, 장애를 주된 소재로 삼고 있는 국어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사회교과는 9종 교과서 모두 제7단원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의 하위 단원에, 출판사마다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장애인 관련 내용을 실고 있어서 이 7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술·가정 교과서는 6종 교과서 모두 제1단원 ‘미래의 가족 생활’의 하위 단원인 ‘가족 돌보기’에, 출판사마다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장애인 관련 내용을 실고 있어 이 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도덕 교과서는 독립된 장애인 관련 단원이 없으나 장애인 관련 자료(기사, 사진, 그림, 그래프 등)를 자주 활용하고 있어 그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어 교과서는 15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장애인 관련 단원으로 문학작품 15편, 전기문 4편, 실용문(규약문, 논술문, 보도문, 시평문 등) 8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4개 교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의 교과서는 장애인 관련 내용이 너무 적어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영어과 교과서의 경우도 17종 교과서 중 일부에만 장애인 관련 내용이 실려 있어 제외하였다.<sup>4)</sup>

4) 양혜숙,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32.

## II. 이론적 배경

### 1.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UN 장애인인권선언에서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은 아래와 같다.<sup>5)</sup>

<표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확대예상 장애범주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 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 기타 암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치매	
	자폐성 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기타 신자폐성장애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1, <http://www.law.go.kr>, 2013.05.20.

## 2. 장애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식은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관점과 태도인데, 여기서 태도는 장애인을 대할 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것과 같은 행동경향성과 반응을 나타낸다.<sup>6)</sup>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비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 상태에서는 장애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피상적인 판단이나 미신, 인습에 의해 형성된 태도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sup>7)</sup>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매체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고쳐, 장애인을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인식하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 3. 교과서와 장애인 관련 단원

교과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도록 편찬된 도서이며, 학교의 공식적인 학습활동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내용의 범위를 한정해주며, 입학시험 문제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등 교수-학습 과정의 방향과 내용을 선도하는 변인으로 어떤 교육 자료보다 교육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sup>8)</sup> 그러므로 주된 학습 자료인 교과서에 장애 이해 내용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면, 일반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질감을 보다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애인 관련 단원이란 장애와 장애인을 취급하고 있는 단원으로서 관련되는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보 천치같은 사람’ 처럼 장애·장애인을 단순히 비유적으로 활용하거나 장애인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는가 하면, 장애인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거나 장애인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여러 페이지에 걸쳐 본격적으로 장애문제를 상세히 다룬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교과서의 성격에 따라 장애의 한 측면 즉 신체적, 지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 장애인 관련 내용을 올바른 관점에서 매일의 수업에서 적합하게 학습한다면, 이는 곧 직접 대면하고 상호작용하게 될

6) 김희철, ‘독후감쓰기가 중학생들의 장애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6.

7) 유창숙,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19.

8) 이주연,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활용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10.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 사진, 글 등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치관 및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sup>9)</sup>이란 점에서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관련 단원의 내용과 제시 방법은 중요하다.

#### 4.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은, 교과서가 인권친화적 가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평가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우수한 점은 적극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인권친화적’이란, 인권을 중요한 학습 내용 요소로 다루거나 인권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내용과 삽화를 구성하는 것이며, 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구성방식에서 반인권적이거나 무인권적이지 않고 친인권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sup>10)</sup>

교과서 모니터링의 기준은,

첫째, 모든 개인들이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정당한 권리를 중시하고 존중하는가?

둘째,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함에 있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호’에 규정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조장되거나 묵인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비율로 배치하여 등장인물이 편향되지 않는가?

셋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관례화된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용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가?

넷째,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반영하는가? 등이다.<sup>11)</sup>

이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2007 개정교육과정의 국민공통과목에 실려 있는 장애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정당한 권리를 중시하는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 조장되거나 묵인되지 않는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장애인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쓰는가’ 등을 평가하여 반인권적이거나 무인권적인 내용은 수정을 권고하고, 친인권적인 내용은 장려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자 한다.

9) 배은희,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교과서 장애관련 내용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3.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단 워크숍 교재’, 2013, p56.

11) 위의 책, pp63~66.

### Ⅲ. 본 론

#### 1. 사회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단원 분석

##### 1-1. 분석

○분석대상 교과서 : (주)미래엔(최병모), (주)교학사(허우궁), (주)교학사(김종욱), (주)금성출판사(서태열), (주)천재교육(정원규), (주)천재교육(류재명), (주)한솔교육(강운선), (주)비상교육(이영민), 법문사(이동환)

○사회과 장애인 관련 단원

9종 사회과 교과서 모두 대단원의 명칭과 순서는 동일하다.

I. 국토와 지리 정보 / II.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 III. 문화 경관의 다양성 / IV. 장소 인식과 공간 행동 / V.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 / VI. 사회 변동과 문화 / VII.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 VIII.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 IX. 경제 성장과 삶의 질 / X. 국제 거래와 세계화  
모두 10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있는 단원은 VII단원이다.

VII단원의 하위단원도 출판사마다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짜여 있다.

1. 인권 보장과 법 / 2. 헌법과 기본권 보장 / 3. 개인의 권익 침해와 구제 방법 / 4. 법제도와 국민 참여 / 5. 인권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쟁점

그리고 출판사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 비중을 달리 두고 있어, 장애인 문제를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 개 소단원을 장애인 인권 문제로 할애한 교과서도 있다.

9종 사회과 교과서를 ‘장애인 관련 내용의 제시 방법, 제시된 그래픽(사진, 그림), 제시된 장애인 관련법의 종류, 장애인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 장애인 관련 단원의 분량과 기타 특기할 만한 점’ 등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표 2> 사회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 정리(고등학교 검정도서 목록 순, ( )안은 대표저자)

연번	교과서 (대표저자)	해당 쪽	제시 방법	그래픽(사진, 그림)	관련법 제공	인권침해 사례	비고 (분량)
1	(주)미래엔 (최병모)	202	‘사회적 약자’란 말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 요소(이주민, 동성애자, 장애인 등)가 없음.				

연번	교과서 (대표저자)	해당 쪽	제시 방법	그래픽(사진, 그림)	관련법 제공	인권침해 사례	비고 (분량)
2	(주)교학사 (허우궁)	218 238		보행·뇌병변(사진/휠체어) 시각(사진/흰지팡이/장애 체험)	▶장애인 차별금 지 및 ...	토의 시험 불편 사례	(1/2쪽)
3	(주)교학사 (김종욱)	214~ 215	독립된 소 단원 설정 (VII-3-3)	보행(그림/휠체어) 시각(그림/흰지팡이) 청각(사진/수화로 면접)	▶장애인 차별금 지 및 ... (5개항 제시)	기본권(참 정권) 제한 사례	(2쪽)
4	(주)금성출판사 (서태열)	210 215 237		보행(사진/휠체어) 보행(그림/휠체어)			(3행)
5	(주)천재교육 (정원규)	215		시각(사진/점자 투표용지)			(1쪽-2쪽 지)
6	(주)천재교육 (류재명)	209 223 249		보행(사진/휠체어/차별금 지 시위) 보행(사진/휠체어) VIII단원:보행(사진/휠체어)	▶장애인 차별금 지 및 ...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법	이동권 제한 사례	(1쪽-2쪽 지)
7	(주)한솔교육 (강운선)	231		시각(사진/안내견)			(3행)
8	(주)비상교육 (이영민)	219 221	독립된 탐구활동 제시	보행(사진/휠체어/이동권 확보 시위)	▶장애인 차별금 지 및 ... (2개항 제시)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법		(1쪽)
9	법문사 (이동환)	198 200		보행(사진/휠체어/이동권 확보 시위)			(1/2쪽-1 쪽지)

### 1) 장애인 관련 내용의 제시 방법

9종 교과서의 장애인 관련 내용의 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9종 교과서 중 (주)교학사(김종욱)만 장애인 관련 내용을 독립된 소단원으로 제시하여(VII-3-3) 2쪽을 할애하고 있으며, (주)비상교육(이영민)은 독립된 탐구활동으로 1쪽을 배분하고 있다.
- ② (주)미래엔(최병모)은 ‘사회적 약자’란 말만 나오며, (주)금성출판사(서태열)와 (주)한솔교육(강운선)은 다른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장애인’이란 말을 언급하고 있으나, 더 이상 장애인 관련 세부적 내용이 없다.
- ③ 나머지 교과서는 신문기사, 장애인 관련법, 장애인 차별 사례 등으로 1/2쪽~1쪽 정도 할애

하고 있다.

## 2) 장애인 관련 그래픽(사진, 그림 등) 분석

9종 교과서 장애인 관련 사진과 그림은 모두 14개인데, 보행장애(휠체어) 9개, 시각장애 4개(흰지팡이 2개, 점자 투표용지 1개, 안내견 1개 등), 청각장애(수화)가 1개로서 보행장애가 9건(64%)으로 월등히 많다. 그리고 사진 중에서 장애인들이 권익을 찾기 위해 벌이는 시위 사진이 3개가 있어(주)천재교육(류재명), (주)비상교육(이영민), (주)법문사(이동환)) 자칫하면 장애인들은 비이성적이며 투쟁적이란 인식을 심어줄 염려가 있다.

## 3) 9종 교과서에 제시된 장애인 관련법

제시된 장애인 관련법은 모두 6건으로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 4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건으로서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법 중 위 2가지만 소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법 조문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주)교학사(김종욱), (주)비상교육(이영민) 2종이며 다른 것은 법명과 간단한 법 제정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4) 장애인 인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

장애인이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는 3건으로, 토익 시험 불이익 사례((주)교학사(허우궁)), 기본권(참정권) 제한 사례((주)천재교육(정원규)), 이동권 제한 사례((주)천재교육(류재명)) 등이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입사지원 거절, 광고 내용 차별, 취업 불이익, 복지 혜택 불이익, 정보 소외 등과 같은 차별 종류를 나열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당한 구체적인 차별 사례는 앞의 3건뿐이다.

## 5) 그 외 특기할 만한 점

9종 교과서 장애인 관련 단원의 평균적인 분량은 2/3쪽 정도이다. 그리고 (주)천재교육(류재명)은 쟁점화부터 법제화까지 이른 입법의 예로써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들고 있다. 2001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전철에서 사고를 당한 뒤부터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시내버스 절반 이상을 저상 버스로 교체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Ⅷ.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단원’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예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 후보자를 제시하고 있다.

### 1-2. 사회과 교과서 모니터링

## 1) 장애인 관련 내용의 제시 방법

사회과의 ‘VII.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단원은 인간의 인권을 설명하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인권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단원이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다루면서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언급한다면 비장애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독립된 단원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장애인 관련 내용을 독립된 소단원으로 제시한 위의 ①번 (주)교학사(김종욱)를 살펴보면,

### VII-3-3. 장애인의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214~215쪽)

- A. 기사 소개 : 투표소가 2층에 설치되어 투표 못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함.
- B. 장애인 차별 종류 설명 : 직접 차별, 간접 차별
- C.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의 4가지 유형 설명(그림 첨가)
- D. 장애인 인권 보호 방안 해설
- E. 사진 자료 : 수화로 면접보는 장애인 사진
- F. 자료1 : □□여대에서 지적 장애인 5명 채용했다는 신문 기사  
학습활동1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례 찾아보기
- G. 자료2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 구제 절차 소개  
학습활동2 : 위의 법이 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기

A에서 기사를 소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다음 차별의 종류, 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소개, 복습을 위한 학습활동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타 교과서도 이러한 정도의 장애인 관련내용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2) 장애인 관련법

9종 교과서에서 제시한 장애인 관련법은 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다른 관련법도 제시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보장된 권리를 학습하도록 한다.

### ○헌법을 통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에는 당연히 장애인도 포함됨. 예를 들면,

▷헌법 제10조 1문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여기서 모든 국민

속에 당연히 장애인도 포함됨. 즉 장애인에게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기본권이 보장됨.

- ▷ 헌법 제34조 5항 :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이 조항은 장애인에 관한 특별 보호 조항으로서 헌법상에 장애인 보호가 명시되어 있음.

#### ○여타 장애인 관련법

- ▷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 장애인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997) : 장애인의 시설이용 및 이동에 접근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사회 참여의 장벽 제거를 법적으로 보장함.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4) :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함.
- ▷ 그 외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법」 등이 있다.<sup>12)</sup>

#### ○장애인 인권을 위한 국제적 규약

- ▷ 국제인권선언(1948) 제25조 : 실직, 질병, 신체장애, 배우자의 상실, 노쇠,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에 처할 때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국제인권규약(1996) B-26조: 법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기타 지위와 같은 어떤 이유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유효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 ▷ 정신지체인의 인권선언(1971) : 정신지체 장애인에게도 사회의 정의와 평등의 규범이 실시되어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함.
- ▷ 장애인 권리선언(1975) : 장애인이 당연히 향유하여야 할 17가지의 권리를 선언함.
- ▷ 세계 장애인의 해에 즈음한 장애인 행동계획(1980) :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12개 항목에 이르는 실천적 조항을 공포함.
- ▷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기준규칙(1993) : 장애인의 권리행사와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해야 할 국가의 책무와 장애인 단체의 조직원칙 및 역할에 대해 22개 항목에 걸쳐 규정함.

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관련 9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0.

### 3) 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

9종 교과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3가지밖에 없다. 국제법 국내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심각한 정도의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함을 제시하여 학생의 문제의식을 유도하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 문제의 핵심인 시설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도 함께 실어야 한다.

#### ○장애인 인권침해의 실태

- ▷노동의 차별 : (장애를 이유로)채용면접 탈락, 원서접수 거부, 한직 발령, 부당해고, 퇴직 강요, 승진 누락, 임금 체불, 모집공고시 제한, 직업훈련 제한, 구조조정에서 장애인이 1순위가 됨.
- ▷교육의 차별 : 입학 거부, 타 학교로 전학 강요, 편의시설 학습지원시설 미비, 모집요강 제한, 원서접수 거부, 편·입학 거부, 통합교육 거부, 적절한 시험환경 부재, 학습도우미 부재
- ▷주거생활의 차별 : 주거선택의 차별, 입주 거부, 월세의 부당지불, 주택개조의 거부, 이주 강요,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 제한
- ▷이동권 및 접근권 차별 : 승차 거부, 장애인의 보조기구 보조권 거부, 자막방송, 안내표지판, 수화통역, 점자 안내문 부재, 주차제한, 지역주민 접근 거부, 건축물 편의시설 미비, 승강기 미비
- ▷사법절차 및 참정권 차별 : 적법절차 없이 인신 구속,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진술 무시, 투표권 침해, 선거 정보 접근권 침해, 투표소 접근권상 차별
- ▷문화양유권 차별 : 문화시설 접근 불가, 장애인 출입 거부, 문화행사 참여 제한
- ▷복지시설 차별 : 시설 강제 입소, 시설 퇴소 거부, 시설내 소통 제한,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권 침해, 언어적 신체적 폭력, 거주이전권 침해, 장애인 진료거부,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 상태 공개
- ▷여기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면서 여성이기에 차별이 더욱 심각함.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의 문제도 심각함. 장애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이유로 버려지거나 가정에서 버림받고 강제로 시설에 입소

#### ○시설중증장애인의 현실(입소·퇴소의 경우)<sup>13)</sup>

-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가족에게 전가하기 싫지만 자립해서 살 지원체계가 없어 입소할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2005, pp93~100.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

- 입소 결정은 가족의 설득이나 강요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시설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차에 태워져 보내졌음.
- 입소시 장애인이 불의의 사고나 사망을 당하여도 일체의 책임이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함.
- 퇴소를 희망하지만,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퇴소할 수 없으며 퇴소하여도 빈곤하여 독립할 기반이 없음
- 많은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으나,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용시설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순응해 왔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선택하기가 어려움.

## 2. 기술·가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단원 분석

### 2-1. 분석

- 분석 대상 교과서 : (주)교학사(정성봉), (주)교학사(윤인경), (주)지학사(한경혜), (주)천재교육(이승신), (주)삼양미디어(이병욱), 두산동아(주)(정철영)
  - 기술·가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단원 : 기술·가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3> 기술·가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 정리(고등학교 검정도서 목록 순, ( )안은 대표저자)

연번	교과서 (대표저자)	해당 쪽	제시 방법	그래픽(사진, 그림)	현실적 문제와 각종 지원
1	(주)교학사 (정성봉)	52~ 53	1-3-2의 하위단원	시각장애(사진/흰지팡이) 보행장애(사진/휠체어)	가족의 부담 사회적 지원 언급
2	(주)교학사 (윤인경)	62~ 63	1-3-3 독립된 소단원	보행장애(사진/휠체어)	가족의 부담
3	(주)지학사 (한경혜)	72~ 73	1-3-5 독립된 소단원	보행장애(사진/휠체어)	가족의 부담 사회적 지원 언급
4	(주)천재교육 (이승진)	70~ 71	1-3-2의 하위단원	보행장애(그림/휠체어) 보행장애(사진/휠체어)	가족의 부담 사회적 지원 언급
5	(주)삼양미디 어 (이병욱)	64~ 65	1-3-2의 하위단원, 노인 돌보기와 동일하게 취급	보행장애(사진/휠체어)	가족의 부담
6	두산동아(주) (정철영)	64	별도 학습활동	보행장애(사진/휠체어)	가족의 부담

### 1) 장애인 관련 단원의 제시 방법

기술가정 교과서 장애인 관련단원의 제시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6종 교과서 모두가 대 단원 ‘1. 미래의 가족생활’ 안에 중단원 ‘3. 가족 돌보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

- ① ‘장애인 가족 돌보기’란 소단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② 다른 소단원의 하위 단원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 ③ 단원 이름 없이 장애인에 대한 간단한 기사, 사진이나 별도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 우이다.

### 2) 그림, 사진 제시 방법

그래픽(사진, 그림 등)의 내용도 6종 교과서에 8회가 제시되었는데 모두 시각장애에 관련된 것 으로(휠체어 6회, 흰지팡이 1회, 안내견 1회)이다.

### 3) 장애인을 보는 관점

6종 교과서 모두 장애인을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생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홀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 가족들에게 얹혀사는 사람으로 보게 할 여지가 많다.

###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장애인이 처한 현실적 문제로 6종 교과서 모두 가족의 부담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지원 혹은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2-2. 기술·가정과 교과서 모니터링

기술·가정 교과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의 실천적 경험과 실생활에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교과이므로 인간의 지·정·의·덕·체 의 다양한 능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교과이다.

기술·가정 교과서는 이처럼 바로 일상의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다루는 현실적인 교과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교과보다 학생들에게 더욱 현실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며, 병약하거나 노쇠하면 수년 혹은 그 이상 장애로 지내야 하므로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고민해 보도록 해야 하며, 다른 어떤 단위보다 장애인의 고통과 장애인을 둔 가정이 처한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장애인 관련 단원의 제시 방법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장애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sup>14)</sup> 장애인 돌보기 단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2) 그림, 사진 제시 방법

그래픽이 모두 시각장애에 관련된 것은 보편적으로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이 시각장애인용 흰 안내지팡이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보행장애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이 피동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거나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밝은 모습을 보이는 긍정적 사진이나 삽화를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장애인을 보는 관점

장애인을 평생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관점은 장애인을 치료적·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재활 모델(Rehabilitation Model)의 사고 방식이어서 장애인을 동정적, 시혜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 장애인도 다른 비장애인과 학습을 같이하는 학습주체로 보고, 자립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현재 변화하고 있는 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자립생활 모델(IL : Independent Living Model)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4)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012, p1.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소개

우리나라도 근래 10년 사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장애인 복지는 ‘재활’이었다. 전통적 재활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자가 의사였다. 의사는 의료적 기준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회복 가능 여부와 재활방법을 결정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는 의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의사의 결정권을 극대화하며, 장애인에게는 환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자립생활이다. 즉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자신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위험이 동반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장애인 당사자가 지고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표 4>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비교

구분	재활 모델 (Rehabilitation Model)	자립생활 모델 (Independent Living Model)
형태	분리 격리 수용	통합(사회 통합)
문제의 근원	개인	사회(환경)
관리 주체	전문가	당사자, 이용자, 소비자
접근방법	전문적 기술적 접근	동료상담적 접근 (Peer Counseling)
기대효과	직업훈련, 신변처리 기능 향상	자기관리, 사회적 가치 향상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우리 사회의 실천을 요구하는 문제이지만, 6종 교과서의 내용은 구체성이 없고 피상적이어서 학습자로 하여금 실천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가정이 처한 현실의 문제와 그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가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 한 예로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같은 경우를 설명하면서 현실성 있는 사회적 지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 ○중증장애인 가정의 현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와 가정의 부양부담이 일반 장애보다 월등함에도 대다수 교과서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현실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근의 동향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는 자녀의 출생부터 노적된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경험으로 무기력이 심화되고 중증장애인 자녀의 장기적인 의존성으로 인해 가중되는 부양부담을 경험함.
- ▷노령화 되어가는 부모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불안함과 만성적인 슬픔, 나이를 먹으면서 퇴행하는 자신의 신체, 노후 대책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재원의 감소,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함.
- ▷향상 또는 치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자녀의 재활 또는 자활에 노력해 왔음에도 별 차도가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좌절을 경험함.

### ○중증장애인 부모의 수기 소개<sup>15)</sup>

중증장애인 부모의 수기를 소개하여 장애인 가족이 처한 현실에 공감을 유도한다.

- ▷(예시) “내 나이가 곧 80인데 아무래도 죽은 뒤가 문제지. 시설에 맡겨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복지관처럼 사람답게 존중해 주는 곳이 과연 있느냐 이거야. ○○이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고 심지어는 맞고 들어오는데, 속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지. 나이에 맞게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해 주는 시설이라든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 곳이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맡기고 싶어.”
- ▷(예시) “오늘 하루하루 같이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 일은 생각도 못하죠. 지금 하루하루도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사실 나중에 대해서는 걱정만 하고 있죠. 구청에서는 장애인끼리 모여 있는 시설로 보내라고는 하는데, 아는 데도 없고 거기에 보낼 돈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데 죽은 후에는... 형님네가 보살피고 맡아준다고 하는데... 나도 내 핏줄이지만 이렇게 힘든데, 다른 식구야 오죽하겠어요. 아직까지는 폐 끼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15) 안수환,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부담하는 부모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p18~19.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

PAS는 장애인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인적 보조서비스이다. 그 목적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와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PAS는 자원봉사 서비스와는 달리 장애인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시간, 용도 등을 결정한다. 즉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원봉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간에 일종의 계약관계로 서비스 제공시간에 비례한 일정한 급여를 장애인 당사자가 지급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과 실질적 수평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원봉사와 차이를 보인다.

### 3. 도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단원 분석

#### 3-1. 분석

○분석 대상 교과서 : (주)미래엔(김호성), (주)금성출판사(문용린), 천재교육(박찬구), 천재교육(변순용), 비상교육(조성민)

○도덕과 장애인 관련 단원

도덕 교과서의 장애인 관련 단원도 5종 교과서가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먼저 대단원은 모두 동일하다.

I. 인간과 자유 / II. 사회 정의와 윤리 / III. 국가와 민족의 윤리 / IV. 이상적인 삶

그러나 중단원과 소단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음 표는 출판사마다 비슷한 중단원 소단원 안에 있는 장애인 관련 내용을 뽑은 것이다.

<표 5> 도덕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 정리(고등학교 검정도서 목록 순, ( )안은 대표저자)

교과서 단원	(주)미래엔 (김호성)	(주)금성출판사 (문용린)	천재교육 (박찬구)	천재교육 (변순용)	비상교육 (조성민)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 자율	장애극복한 이희아 사진(14)				
배려적 사고	타인 위해 통불권 시각장애인(40) 휠체어 밀어주는 사진(43)	도로 횡단하는 장애인 사진(51) 장애 발생원인 그래프(51)	시각장애 체험 사진(45)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내려주는 사진(44)	
불공정한 사회	해고 당한 장애인(66) 장애인 의무고용률 어긴 회사(68)	이동권 요구하는 시위 사진(78)	장애인 차별 금지법 추진 시위 사진(64)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 사진(76)	점자 읽는 장애인의 손 사진(75) 계단 앞에서 정지한 장애인 사진(75) 선거권 포기한 장애인(80) 계단 앞에서 정지한 장애인 사진(80)	장애인 차별 철폐 시위 사진(69)
사회정의의 복지실현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는 장애인 사진(88)	투표권 행사하는 장애인 사진(71) 밝은 표정으로 연주하는 이희아 사진(80)	점자 시험지로 시험치는 장애인 사진(96)		장애인 우대하는 ○○항공사(78)
시민참여	도로 턱에 막힌 장애인 그림(95) 법 통과를 지켜보는 장애인 사진(120)				
평화·조화로운 삶		웃고 있는 오토다케 사진(184)			
이상적인 인간사회		헬렌켈러와 설리번 사진(193)			

5종 도덕 교과서의 장애인 관련 내용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 1) **장애인 관련 단원 제시 방법** : 5종 도덕 교과서에는 장애인과 관련하여 독립된 단원이 없다. 단원별 학습목표를 위해 그때그때 장애인 관련 자료(기사, 사진, 그림)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여 교과서마다 자료를 활용하는 의도도 유사하다.
- 2) **‘인간의 자유 의지’ 단원** : 인간이 자연의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는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장애마저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사진을 활용함.
- 3) **‘배려적 사고’ 단원** : 배려되어야 할 존재의 예로 대다수 교과서에서 장애인을 들고 있다. 즉 장애인=배려되어야 할 대상, 베풀어 주어야 할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4) ‘**불공정한 사회(사회제도와 정의)**’ 단원 :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예로 장애인을 들고 있다. 즉 장애인=불공정의 피해자이면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위를 하는(주)금성출판사(문용린)-78쪽, 천재교육(박찬구)-64, 76쪽, 비상교육(조성민)-69쪽 존재로 제시되어 있다.
- 5) ‘**사회정의(분배정의, 복지실현)**’ 단원 : 사회정의가 실현된 예로 장애인의 긍정적인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환하게 웃는 보행장애인의 얼굴, 투표권을 행사하는 장애인 모습, 밝은 표정으로 연주하는 이희아 씨, 점자로 된 문제지를 몰입하여 풀고 있는 모습과 같은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즉 장애인=복지 실현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제시되어 있다.
- 6) ‘**시민의 참여**’ 단원 : 참여하는 시민의 예로 법 통과를 지켜보는 장애인이 제시되어 있다.
- 7)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 단원 : 심한 지체 장애를 갖고 있으나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오토다케 히로타다 씨의 모습을 제시하여, 평화로운 삶은 신체나 외모와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강조한다.
- 8) ‘**이상적인 인간사회**’ 단원 : 헬렌켈러와 그의 스승 설리반을 통해, 자신이 품고 있는 꿈이 상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9) **그림, 사진 제시 방법** : 그 외 도덕과 교과서에서 사용된 그래픽(사진, 그림)은 사회교과와 기술·가정교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전체 그래픽 22개 중에서 보행장애 사진이 12개(휠체어 11개, 목발 1개), 시각 장애 6개(점자, 희지팡이, 검은 안경 등), 기타 4개이다.

### 3-2. 도덕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

- 1) **장애인 관련 단원 제시 방법** : 5종 교과서 모두 장애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단원이 없다. 장애 관련 내용이 그 자체가 학습목표가 되지 못하고, 다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2)~8)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즉, ‘장애인=배려되어야 할 대상’ 이거나, ‘장애인=복지 실현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 ‘사회복지가 실현된 상태=장애인의 웃는 모습’, ‘장애인=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면적인 삶을 성취한 사람’ 등으로 장애인 관련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혜자로서보다, 자신의 의지로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와 같은 사례를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9) **그림, 사진 제시 방법** : 장애 유형에 보행장애 관련 자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이 유형의 장애 유형이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서장애, 정신지체, 중복장애 등 다른 장애 유형도 문장 속에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 유형을 제시하여 장애에 대한 학생들의 균형잡힌 인식을 유도해야 한다.

## 4. 국어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단원 분석

### 4-1. 분석

- 분석대상 교과서 : (주)미래엔(윤여탁), (주)교학사(조남현), (주)지학사(박갑수), (주)지학사(방민호), (주)더텍스트(김병권), (주)금성출판사(윤희원), (주)천재교육(김대행), (주)천재교육(박영목), (주)천재교육(김종철), (주)창비(문영진), (주)디딤돌(이삼형), (주)유웨이중앙교육(박호영), (주)비상교육(한철우), (주)해냄에듀(오세영), (주)두산동아(우한영), (주)좋은책신사고(민현식)
- 분석대상 교과서 : 국어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은 <표 5>와 같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장애인 관련 작품에 나오는 장애를, 장애 종류나 장애시기(선천, 후천)에 따라 분석하고 있으나, 국어과 장애 관련 단원은 모니터링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고 문학은 주제나 용도별로, 비문학은 갈래별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

#### 1)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소재로 한 장애인 관련 작품

- ▷좋은책신사고(민현식)상3-2.겨울나들이(박완서) : 자식이 인민군에게 사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할머니가 충격후 스트레스 장애로 평생 도리질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
- ▷(주)천재교육(박영목)상7-2.종탑아래에서(윤희길) : 부모가 적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소녀가 정신적 충격으로 눈뜬장님(당달봉사)이 된 후, 마음에 맺힌 간절한 소원을 위해 종을 치는 이야기
- ▷(주)천재교육(박영목)상7-2.수난이대(하근찬) : 6·25 전쟁 중에 한 다리를 잃은 아들과 일제 강점기에 정병갔다가 한 팔을 잃은 아버지가 서로를 신뢰하며 둘의 장애를 보완하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 2)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써 장애를 활용한 작품

- ▷(주)미래엔컬쳐그룹(윤여탁)상4.심청전 : 심청의 효성에 하늘이 감복하여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를 시각장애로 설정함.
- ▷(주)지학사(방민호)상5.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 난쟁이로 상징되는 가난한 노동자의 좌절된 삶을 그리기 위해 왜소한 난쟁이를 소재로 함.
- ▷해냄에듀(오세영)상4-1.선학동 나그네(이청준) : 인간의 한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시각을 포기하는 치열한 예술적 삶을 그림.

<표 6>국어과 교과서 장애인 관련 내용 정리(고등학교 검정도서 목록 순, ( )안은 대표저자)

연번	출판사 (대표저자)	단원	쪽	장애 용어	연번	출판사 (대표저자)	단원	쪽	장애 용어
1	(주)미래엔 (윤여탁)	상-1-3	24~40	중풍	27	(주)천재교육 (박영목)	상-7-2	275	당달봉사
2		상-4	166	심봉사	28		상-7-2	301	지체장애
3	(주)교학사 (조남현)	상-3-2	161	(특이한 모색)	29		하-5-2	196	얼금뱅이
4		하-3-2	141	화상 장애	30	상-4-2	146~147	장애인	
5	(주)지학사 (박갑수)	상-1	40~45	(반편)	31	천재교육 (김종철)	하-1-2	30	얼금뱅이
6		상-2-2	60~65	화상 장애	32		하-6	248~253	언청이
7		상-5-3	156~166	곱사등	33	(주)창비 (문영진)	상4-2	136	언청이
8		하-1	37	얼금뱅이	34		상4-3	152	봉사
9		하-6-1	184	장애	35		상6-1	210	(반편)
10	(주)지학사 (방민호)	상-1-3	21	(반편)	36	(주)도서출판 디딤돌 (이삼형)	상-1-2	22	(반편)
11		상-5	212	난쟁이	37		상-4-1	152	언청이
12	더텍스트 (김병권)	하-6-2	254	(특이한 모색)	38		상-4-2	168	천치, 바보
13	(주)금성출판사 (윤희원)	상-2	94~97	장애인	39	(주)유웨이 중앙교육 (박호영)	상-2-2	100	얼금뱅이
14		상-5-2	170~175	장애인	40		하-1-2	26~27	장애
15	상-1-3	60~66	허짚배기	41	하-2-3		94~109	언청이	
16	천재교육 (김대행)	상-3-2	132~134	장애인	42	비상교육 (한철우)	상-2-3	57	얼금뱅이
17		상-6-2	256~260	이통증	43		상-4-2	118	청맹과니
18		하-1-1	19	불구자, 컴맹	44		상-6-1	216	언청이
19		하-1-1	24	절단 장애인	45		상-3-2	123	장애인
20		하-1-2	34	얇은뱅이, 문둥이, 장님, 절름발이	46	해냄에듀 (오세영)	상-4-1	144~173	장님, 맹인
21		하-2-1	62	절름발이	47		상-7-2	305	(특이한 모색)
22		하-2-3	86~92	언청이	48		하-1	50	얼금뱅이
23		하-2-2	108~109	수화	49		하-4	187	바보
24	하-3-2	140~168	청맹과니	50	두산동아(주) (우한용)	하-1-2	23	얼금뱅이	
25	하-6-1	297~313	(반편)	51	좋은책신사고 (민현식)	상-3-2	118	(스트레스장애)	
26	(주)천재교육 (박영목)	상-5-3	207	언청이		52	상-6-1	222	언청이

### 3) 평범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인물을 그리기 위해 반편 인물 등장시킴

- ▷창비(문영진)상6-1.달밤(이태준)/ (주)지학사(방민호)상1-3.달밤(이태준) : 황수건은 외모도 특이한데다 하는 일마다 엉뚱하다. 자기 마누라가 도망갔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50분 간격으로 쳐야 할 학교 종을 20분만에 치고 집에 간다든가, 일본인 장학사를 상대로 엉터리 일본말을 지껄여 장학사를 화나게 한다든가, 감사의 뜻으로 남의 포도를 훔쳐와서 나에게 줄 정도로 사리판단이 부족하지만 서술자는 동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천재교육(김대행)하6-1.봄봄(김유정)/ (주)지학사(박갑수)상1.봄봄(김유정) / (주)도서출판디딤돌(이삼형)상1-2.봄봄(김유정) : ‘나’는 딸 점순이를 준다는 장인 말을 믿고 3년 7개월 동안 세경 한푼 받지 못하고 며슴살이 하는 어수룩하고 우직한 인물이다. 점순이의 충동질에 장인에게 어서 혼인시켜 달라고 따지지만 장인의 교활한 설득에 감동하는 순박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 4) 장애 상태를 불운으로 보고, 장애를 비하하는 경우

- ▷천재교육(김대행)상1-3.햄릿 : 햄릿이 여자를 비난하면서 사용한 말로서 ‘허짤배기’
- ▷천재교육(김대행)상6-2.삼대(염상섭) : 내 귀가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롱증’
- ▷천재교육(김대행)하1-1. : 김훈 선생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자신을 가리켜 ‘불구자, 컴맹’
- ▷해냄에듀(오세영)하4 : 책에 파묻혀서 다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을 가리켜 ‘바보’
- ▷천재교육(김대행)하2-1.맹진사댁 경사(오영진) : 신부측 마음을 떠보기 위해 신랑이 보행장애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림 ‘질름발이’
- ▷천재교육(김대행)하3-2.눈길(이청준) / 비상교육(한철우)상4-2.눈길(이청준) : 농어촌 지방 개량사업을 독촉하는 면사무소 직원을 가리켜 ‘청맹과니’
- ▷(주)도서출판디딤돌(이삼형)상4-2.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오영진) : 이중생이가 자기 재산을 엉뚱한 곳에 쓰는 사위 송달지를 가리켜 ‘천치’
- ▷‘봉산탈춤’의 경우, 제6과장 양반춤(兩班舞)이 여러 교과서에 널리 실려 있는 데(천재교육(김대행)하2-3 / (주)유웨이중앙교육(박호영)하2-3 / (주)도서출판디딤돌(이삼형)상4-1 / 비상교육(한철우)상6-1 / 좋은책신사고(민현식)상6-1 / (주)천재교육(박영목)상5-3 / 천재교육(김종철)하6 / 창비(문영진)4-2) 이 작품에서는 민중의 전형적인 인물인 말뚝이가 등장하여 양반의 허세, 위선적 태도를 재담을 통해 풍자한다. 그 과정에서 양반 형제를 ‘한 줄 언청이, 두 줄 언청이’로 비꼬고 있음.
- ▷또한 ‘봉산탈춤’의 제7과장 미얄춤(해냄에듀(오세영)상7-2 / 더텍스트(김병권)하4-2 / (주)교학사(조남현)상3-2)도 남편과 아내의 특이하게 생긴 얼굴과 신체의 모양을 강조하여 웃음과

해학을 유도하고 있음.

▷그리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 (주)지학사(박갑수)하1 / 두산동아(우한용)하1-2 / 천재교육(박영목)하5-2 / 비상교육(한철우)상2-3 / (주)유웨이중앙교육(박호영)상2-2 / 해냄에듀(오세영)하1 / 천재교육(김종철)하1-2)에서 못생긴 데다 가진 것 없이 떠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 ‘얼금뱅이’ 라는 신체적 특징을 드러냄.

##### 5) 전기문, 논술문, 규약문, 보도문, 시평문 등을 학습하기 위한 소재로 장애인과 장애문제를 가져옴.

###### <전기문>

- ▷천재교육(김대행)하1-1.세상에 하나뿐인 구두를 만드는 사람 : 구두장이로 일하다 오른팔 절단장애를 입고 다시 구두장이로서 재기에 성공한 남궁정부 씨의 이야기. 주로 장애인을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 수제화를 제작함. 그간 쌓인 한이 너무 커서 70살임에도 5,700m 히말라야 칸진리봉을 절단 장애인 7명과 함께 등반함.
- ▷(주)지학사(박갑수)상2-2 / (주)교학사(조남현)하3-2.불꽃처럼 살다 간 사람 : 교통사고로 화상을 당하였고 여러 번 수술 끝에 얼굴과 손, 팔 등 걸음으로 드러나는 모든 부위에 흉한 흉터 자국이 남는 큰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 희생적 삶을 살다간 채규천 선생의 전기.
- ▷(주)유웨이중앙교육(박호영)하1-2.헬렌켈러 자서전 : 헬렌켈러가 청각 시각 장애를 입기 이전 시기의 전기
- ▷천재교육(김대행)하1-2 : 주로 장애를 가진 소외된 인물을 주로 그린 아동문학 작가 권정생 선생의 삶을 그린 전기문.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연약한 사람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역정과, 명예욕과 물욕을 떠난 권정생 선생의 사심 없는 천진무구한 삶을 감동적으로 그림.

###### <논술문, 보도문, 시평문, 규약문>

- ▷(주)금성출판사(윤희원)상2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중, 장애인 차별 정도를 제시한 원형 그래프와, 15가지 주요 법정 장애의 원인을 제시한 원형그래프를 제시한 다음, 두 자료를 참고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300자 분량의 논술문을 쓰게 하고 있다.
- ▷(주)금성출판사(윤희원)상5-2.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 한 소단원 전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소재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느냐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토론을 전개한 다음 단원의 마지막 학습활동에서 심화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해냄에듀(오세영)상3-2.문제상황 보도하기-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 : 학생들에게 생활 주변의 쟁점을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소재로 활용하였다.

▷천재교육(김종철)상4-2.장애인 복지는 선진국의 척도 : 이 글은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평가하여 논평한 시평(時評)문인데, 장애인 복지를 시평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주)지학사(박갑수)하6-1.세계인권선언 : 규약문의 예로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25조에 장애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 4-2. 국어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

위의 분석에서 1)~4)는 문학적인 글을, 5)는 비문학적인 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소재로 한 장애관련 작품**은 남북한의 분단상황을 사지가 온전치 못한 장애상태로 비유하고 있다.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현재에도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외상 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장애상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문학 작품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장애를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2)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써 장애를 활용한 작품**의 경우, 장애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신체적 한계로서, 장애가 아니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낼 수 없어서 장애를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으나 이 또한 장애를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3) **평범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인물을 그리기 위해 반편 인물 등장시킨 경우**, ‘달밤’의 황수건은 속되게 말하면 반편(idiot) 즉 지적장애인이다. 세상을 정상 : 비정상으로 나누고 장애인의 특이한 외모나 행위를 통해 비정상적 세계를 비판하거나 정상세계를 비꼬는 것은 장애인의 불행한 현실을 이용한 차별의 한 예에 해당한다. 비록 작중화자인 ‘나’는 황수건에 대해 매우 동정적이나, 황수건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한 인격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황수건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를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4) **장애 상태를 불운으로 보고, 장애를 비하하는 경우는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 중 가장 반인권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1)~3)의 경우는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4)의 경우는 너무 의도적이다.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는 바꾸도록 하고, 작품 전체가 관련되는 경우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교과서에 실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작품은 오영진의 ‘맹진사댁 경사’이다. 신랑 측에서 신부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신랑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 소문을 들은 신부 집에서는 장애인에게 시집을 보낼 수 없어 몸종을 신부로 속여 결혼식을 치른다.

결혼 당일 신랑이 온전한 다리를 지닌 당당한 남자임이 밝혀지자 다시 진짜 신부로 바뀌치는 소동을 벌인다. 참된 사랑은 외모보다 서로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신랑을 장애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장애인은 결혼 상대자로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장애 학생에게는 큰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 그리고 치매에다 청각장애가 있는 맹진사의 아버지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이것도 장애인을 웃음거리의 대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봉산탈춤에서 무능하며 허세만 부리고 위선적인 양반을 풍자하기 위해 양반들을 ‘언청이’ 나 기형적인 얼굴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방법은 장애인은 비정상적이며 기이하기 때문에 조롱받고 비판받아야 할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과서에 실을 때 피해야 할 내용이라 본다.

‘봉산탈춤’ 이나 ‘메밀꽃 필 무렵’ 과 같은 작품은 7~8종 교과서에 폭넓게 실려 있으므로 이러한 작품을 접하는 학생이 타 작품에 비해 많다. 그러므로 이 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업할 때 고려해야 한다.

**5) 전기문, 논술문, 규약문, 보도문, 시평문 등을 학습하기 위한 소재로 장애인과 장애문제를 가져온 경우는 장애인 관련 단원 중에서 가장 친인권적이다.**

먼저 장애인의 삶을 등장시킨 전기문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되살린 장애인 주인공을 제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규약문, 보도문, 시평문에서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장애인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있다.

특히 (주)금성출판사(윤희원)상2와 상5-2와 같은 단원은 캠페인이나 구호에 그치는 장애인 인식 개선과 인권보장 운동의 한계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장애인 문제에 대해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해냄에듀(오세영)상3-2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여 방송보도문과 신문기사문을 스스로 작성해보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인이 처한 현실적 고통과 장애인 복지의 문제를 깊이 체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천재교육(김종철)상4-2은 인간의 기본권이 장애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나라야말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살고 싶은 선진국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사회라는 주제를 매우 쉽게 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몇 번의 캠페인 활동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내용의 교과서와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교육과정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IV. 결 론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중 사회과, 기술·가정과, 도덕과, 국어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단원을 분석해보고 보완할 점을 제시해 보았다. 각 교과별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 사회교과에서는 ‘VII.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장애 학생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단원을 독립된 단원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단원에는 국내·국제사회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법과 구체적인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실려 있어야 하고, 특히 시설중증장애인의 현실과 문제점이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보완 자료로 헌법과 장애인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이 처한 차별 실태 특히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다.
- 가정교과에서는 대단원 ‘I. 미래의 가족생활’ 안에 있는 중단원 ‘3. 가족 돌보기’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90.5%를 차지하고,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가족 돌보기’ 단원을 독립시키고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실태와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IL(Independent Living)과 장애인 지원 체제인 PAS(Personal Assistance System)에 관한 내용을 보완자료로 제시하였다.
- 도덕교과에서, 5종 교과서 모두 장애 관련 내용이 그 자체가 학습목표가 되지 못하고, 다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자료도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배려되어야 할 대상이거나,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쉬운데, 장애인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혜자로서보다, 자신의 의지로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 기술·가정, 도덕 교과 모두 그래픽(그림,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장애 유형에 보행장애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장애 유형을 제시하여 장애에 대한 학생들의 균형잡힌 인식을 유도해야 한다.
- 국어교과에서는 장애인 관련 단원을 문학적인 글과 비문학적인 글로 나누되, 5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1)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소재로 한 장애인관련 작품’ 과 ‘2)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써 장애를 활용한 작품’ 과 ‘3) 평범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인물을 그리기 위해  
반편 인물을 등장시킨 작품’ 은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 장애를 부정적이고 불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4) 장  
애 상태를 불운으로 보고, 장애를 비하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오영진의 ‘맹진사댁 경사’ 는,  
장애인은 결혼 상대자로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봉산탈춤’ 에서  
무능하며 허세만 부리는 위선적인 양반을 풍자하기 위해 그들을 ‘언청이’ 라 표현하는데, 이  
것은 장애인은 비정상적이며 기이하기 때문에 조롱받고 비판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므  
로, 이러한 작품을 교과서에 실을 때 피해야 할 내용이다. ‘5) 전기문, 논술문, 규약문, 보도  
문, 시평문 등’ 은 장애관련 단원 중에서 가장 인권친화적이다. 장애인의 삶을 등장시킨 전기  
문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되살린 장애인 주인공을 제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규약문, 보도문, 시평문에서는 장애인이 처  
한 현실과 장애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  
만, 이러한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I. 논문

- 곽정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희철, ‘독후감쓰기가 중학생들의 장애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배은희,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교과서 장애관련 내용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선혜영,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국어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안수환,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부담하는 부모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양혜숙,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유창숙,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이은정, ‘수정된 도덕과 교육과정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이주연,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활용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단 워크숍 교재’, 2013.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2005.
-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012.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관련 9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0.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humanrights.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II. 교과서

### < 국어(상/하) 교과서 >

(주)미래엔(윤여탁 외 12)  
(주)지학사(박갑수 외 7)  
주식회사 더텍스트(김병권 외 11)  
(주)천재교육(김대행 외 8)  
(주)천재교육(김종철 외 9)  
(주)도서출판 디딤돌(이삼형 외 7)  
(주)비상교육(한철우 외 11)  
두산동아(주)(우한용 외 20)

(주)교학사(조남현 외 7)  
(주)지학사(방민호 외 7)  
(주)금성출판사(윤희원 외 11)  
(주)천재교육(박영목 외 10)  
(주)창비(문영진 외 7)  
(주)유웨이중앙교육(박호영 외 7)  
(주)해냄에듀(오세영 외 8)  
(주)좋은책신사고(민현식 외 11)

### < 도덕 교과서 >

(주)미래엔(김호성 외 15)  
(주)천재교육(박찬구 외 8)  
(주)비상교육(조성민 외 7)

(주)금성출판사(문용린 외 11)  
(주)천재교육(변순용 외 10)

### < 사회 교과서 >

(주)미래엔(최병모 외 10)  
(주)교학사(김중욱 외 9)  
(주)천재교육(박병익 외 12)  
(주)한솔교육(강운선 외 9)  
법문사(이동환 외 6)

(주)교학사(허우궁 외 9)  
(주)금성출판사(서태열 외 9)  
(주)천재교육(류재명 외 10)  
(주)비상교육(이영민 외 8)

### < 기술·가정 교과서 >

(주)교학사(정성봉 외 5)  
(주)지학사(한경혜 외 7)  
(주)삼양미디어(이병욱 외 9)

(주)교학사(윤인경 외 8)  
(주)천재교육(이승신 외 7)  
두산동아(주)(정철영 외 16)



논문수상작  
**2013 인권작품 공모전**

**장려상**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

- 서울시와 대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희근, 이승현, 임서현

## I.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교육과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발전해가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조례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2010년 10월 5일부터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인권조례 발표, 2012년 5월 15일 대구에서는 교육권리헌장<sup>1)</sup>이 선포되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학생의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및 헌장(이하 학생인권조례라 칭함)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신장과 학생인권침해 방지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우려의 의견이 있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효용성과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의견들이 많다.

그 예로 ‘2011년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sup>3)</sup>을 참조하면, 학교폭력의 피해율은 2009년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조례가 실시된 이후인 2010년과 2011년에 오히려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반면에 가해율은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까지 10%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가 2011년 15% 이상을 기록했다.<sup>5)</sup> 특히 2011년은 피해율과 가해율 모두 전년과 비교했을 때,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유혹은 30%가 넘고, 이들 중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한 학생들은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조항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학생인권 증진에 기여하려고 의도하였다.<sup>6)</sup> 이 중 일부 수정되어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올해 9월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울교육청에 ‘인권옹호관제’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역차별이라 볼 수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

1) 교육권리헌장은 조례와 달리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헌장의 목적 또한 학생의 인권신장이라는 다른 학생인권조례의 목적과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연구하는 것에 별 다른 문제는 없을 듯하다.

2) 실제 시행일은 9월 1일이다.

3)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4) 2009년 9.4%, 2010년 11.8%, 2011년 18.3%

5) 피해율 =  $\frac{\text{피해경험응답학생}}{\text{설문응답자}}$ , 가해율 =  $\frac{\text{가해경험응답학생}}{\text{설문응답자}}$

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해사례가 2009년에 비해 2011년에는 3.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타 지역에서는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학교인권조례가 2010년에 발표된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학교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하면, 학생의 인권존중이 목적을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효 이후에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에 역행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학생인권조례가 목표하는 바가 적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실태를 살펴보고, 학생인권조례가 가지는 한계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인 조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적을 앞으로의 학생인권과 관련된 타 조례나 법령 제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학생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수정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간 자료로써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며, 후에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법령으로 개정될 때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라는 화제를 바탕으로 집필된 논문들 중 많은 것들이 본 논문과 같은 연구 목적, 즉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그것을 보완할 방안을 세울 것을 목적으로 쓰여 졌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다룬 기존의 여러 논문들<sup>8)</sup>은 주제가 ‘학생인권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논의의 핵심이 되는 ‘학교’와 ‘학생’에서 동떨어져 대상을 연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팀은 모두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큰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학생이라는 특징 때문에 학생의 입장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구자라는 위치에 있어 연구 내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다.

## 2.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닌 한계점을 구체적인 조항과 전체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본 연구팀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대구권리헌장의 조항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해결책

7) [국감 브리핑] 무너진 광주 교권...2009년 16건에서 올 1학기만 283건', 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848479>

8)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최형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에 대해서 논의해본 후 학생인권조례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학생인권의 정의 및 법적인 근거와 법과 사회가 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3장은 설문 조사와 조례 분석을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조적인 해결방안과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대구교육권리현장 조항의 수정·삭제를 통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4장은 본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생인권

#### 가. 정의

학생인권은 인권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기반 또한 인권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의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 천부적 권리로 본다. 하지만 일반적 인식과 달리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헌법상으로 정의한 인권의 개념들과 그 정의들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상 인권의 정의들로부터 인권의 정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의 경우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는 ‘인권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나이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종류에는 생존, 자유, 생명·신체의 안전과 같은 민주주의 헌법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시민권(civil right), 즉 임의 구류·구속·유형으로부터의 자유, 공평한 재판에 의해 공정한 공판과 공청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또는 결사를 갖는 자유를 말한다. 또 노동, 교육, 사회적 안전에 관한 권리 같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권리들, 즉 지역사회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과학의 진보와 예술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권의 정의를 토대로 학생인권에 대해 정의하자면, 학생인권은 학생이 학교와 사회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나이 등에 차별을 받지 않으며, 학교와 사회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 또는 결사의 자유, 문화생활을 영유할 자유 등의

학생이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나. 법적 근거

### 1)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헌법<sup>9)</sup> 제2장 제10조에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은 이 조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음과 이에 따른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대한민국 인권 보장의 법적 근거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교육기본법<sup>10)</sup> 제 2장 제 12조 1, 2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학생인권의 기본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또, 초·중등 교육법<sup>11)</sup> 제18조 4호에서는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학교의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법에서는 헌법부터 교육기본법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법에 까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 규정<sup>12)</sup>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도 학생인권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래의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여 18세 이하의 아동, 즉 학생을 포함해 이들의 복지권과 자유권, 평등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비차별의 원칙(2조) :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 이는 “아동 자신과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

9)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25]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 개정])

10) 교육기본법([시행 2008. 6.22] [법률 제8915호, 2008, 3.21, 전부개정])

11) 초·중등 교육법([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3.21, 일부개정])

12) 제 6조 제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총회참가국들에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다.

- 아동 최상의 이익(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 한”이라는 의미에서 “발달”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한다.
-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sup>13)</sup>

이상에서 우리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국제법에서도 학생인권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 2. 법과 사회와의 관계

법학에서 정의하는 법의 기능은 5가지가 있는데, 사회통제, 분쟁의 해결, 부의 재분배, 개혁, 교육적-계몽적 기능이 그것이다. 여기서 사회통제의 기능이란 어떤 행동이 사회라는 규범에서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명확히 해준다는 것이다.<sup>15)</sup>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가지는 의의는 학생의 인권이 사회적 규범이란 틀 아래에서 어떤 행동이 비인권적(불법적)행위며, 학생들에게 어떤 처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종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1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각국에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아동관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규정 신설기념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 지역순회토론회-대구·경북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sup>13)</sup>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

14) 아동권리협약이 말 뿐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협약의 준범을 위해 꾸준히 감독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각국에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아동관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1,2차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에 몇 가지의 권고를 내놓은 바가 있다. 특히, 위원회가 한국 교육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한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2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3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4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5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라고 권고하였다. - ‘학생인권시민공청회, 대구학생인권연대 숭tong’

15) ‘법학개론’, 박상기외 12인, 전영사. 5p

개념이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면, 무엇이 학생을 대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인 행동이고 불법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제시를 해주는 학생인권조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게 학생인권을 침해한 교사나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이 실제로 그 기능-사회통제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들이 그러하다. 서론에서 언급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실효성의 의문에 관한 부분들, 최근에 나타난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현시점에서의 학생들은 이 조례의 도입 취지, 즉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sup>17)</sup>보다는 1차적인 이익만을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즉, 학생인권조례를 두발이나 복장의 자율화로 나아갈 수 있는 탈출구로밖에 보지 못한다. 결국 이런 인식들이 현재의 문제들처럼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그러나 법의 잘못된 해석이 그릇된 결과를 만든다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하면 된다. 즉, 법이 제정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사회에 의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려면,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들의 한계를 설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Ⅲ. 연구 내용

#### 1. 문제점 분석

##### 가. 설문 조사

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교내<sup>18)</sup>에서 190명, 서울, 경기도 5개 학교<sup>19)</sup> 100명, 대구 5개 학교<sup>20)</sup>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크게 네 가지 부문, 즉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체감성, 학생의 의견 반영, 학생대표단의 대표성의 문제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16) '법학개론', 박상기외 12인, 전영사. 4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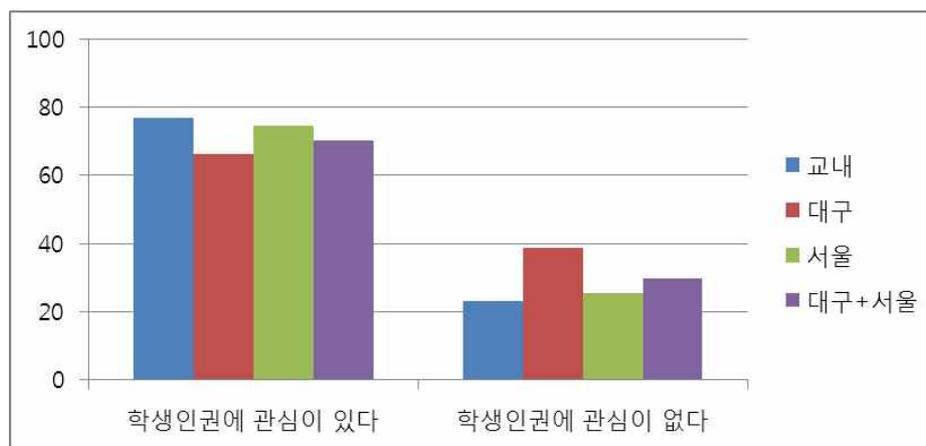
17)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 조례 제 4085호), 2010년 10월 5일 선포

18)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9)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용인외국어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각 20명씩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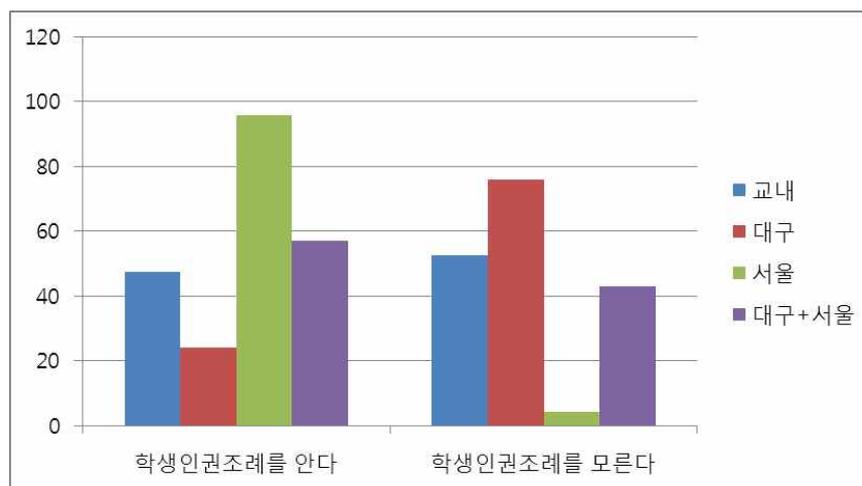
20)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덕원고등학교 각 20명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학생들은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이 있는가?



<그림 1>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위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대체로 학생인권에 관한 관심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아시나요? (%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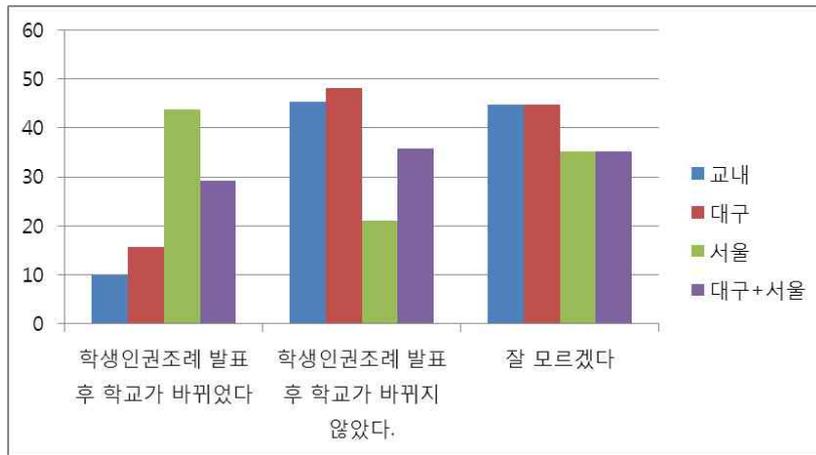
그러나 학생인권조례<sup>21)</sup>의 인식도면에서는 대구와 서울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대구외고와 대구 모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은 절반을 밑돌았다. 그에 반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21) 앞서 밝혔듯이, 여기서의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을 띠는 대구교육권리현장 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설문지에도 명기하였던 사항이다.

모른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4.2%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학생들 모두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나 이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은 대구가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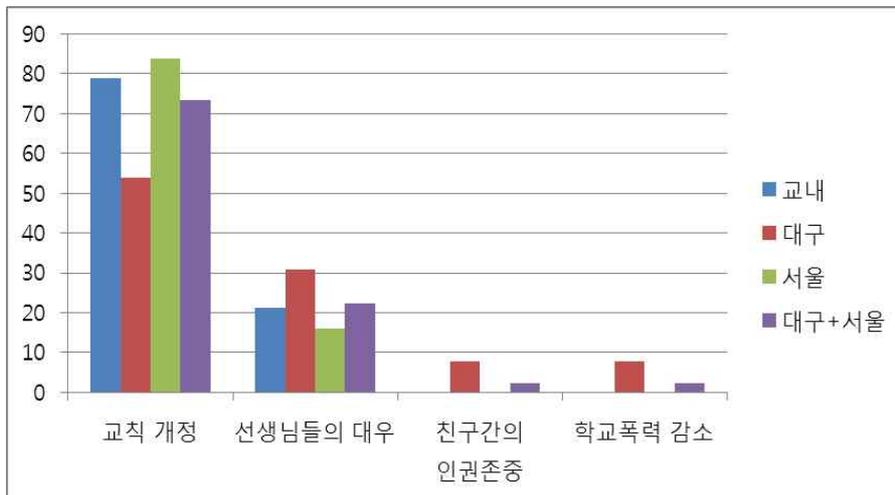
2).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을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가?



<그림 3> 학생인권조례 발표 후 학교가 바뀐 것 같나요? (%로 표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가 바뀌었다는 학생의 수는 전부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다. 특히 학교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은 대구에서 두드러진다. 교내와 대구 모두 학교가 바뀌었다는 생각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바뀌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가 바뀌었다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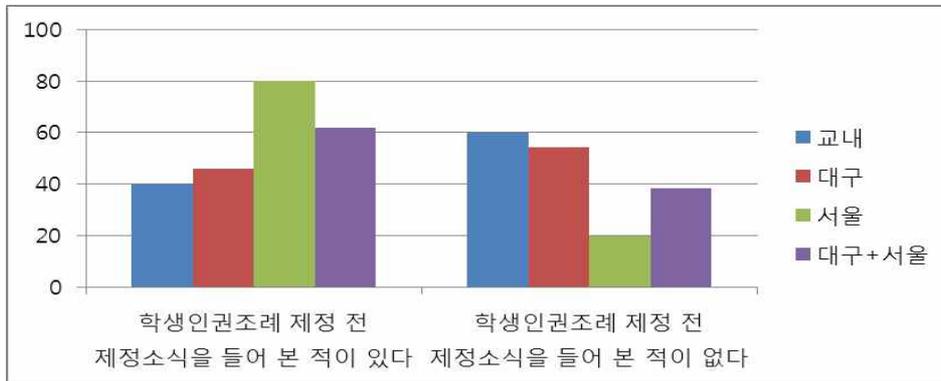


<그림 4>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학교가 변한 것 같나요? (%로 표시)

교칙개정이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부분은 교칙개정이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대우 부분과 친구간의 인권존중, 학교폭력 감소부분에서는 학생들이 그다지 체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칙이라는 형식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지 사실상 그들이 의도하였던 학생인권신장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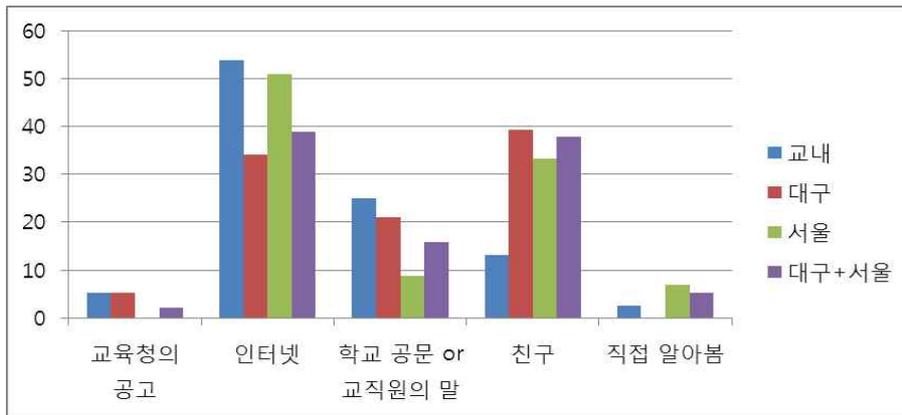
3). 조례의 제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보장이므로 학생들은 조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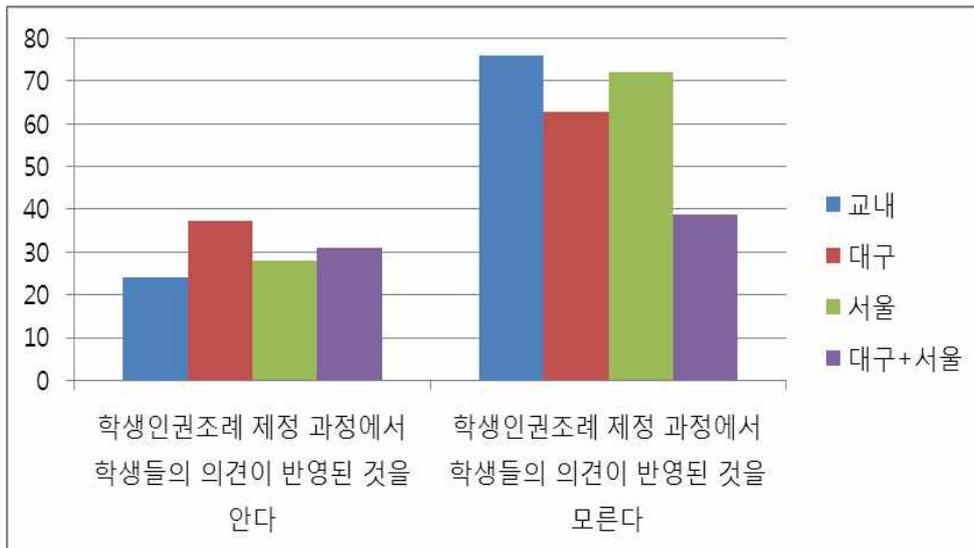
<그림 5>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에 조례제정소식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로 표시)

인권 조례 제정 전 제정소식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울은 80%가 제정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림 6> 들어본 적이 있다면, 보기 항목 중 어떤 것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로 표시)

그러나 조례 소식을 알게 된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80% 이상이 인터넷과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정 전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곧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림 7> 학생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로 표시)

예상대로, 학생들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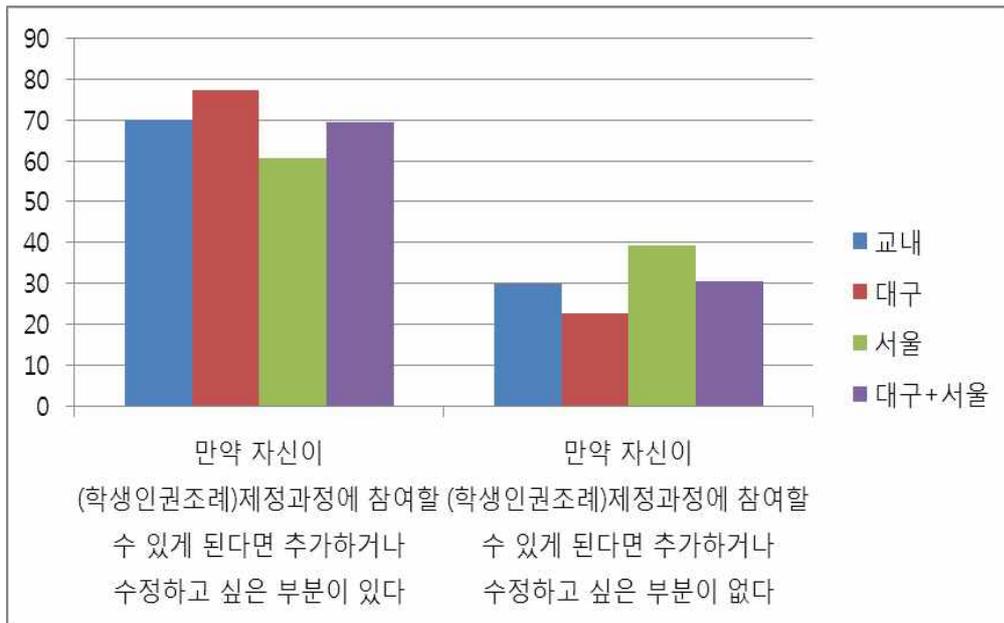
대구시와 서울시 모두 제정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대구교육권리현장의 경우, 현장을 공개하는 공청회 날까지도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이나 장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청 측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현황조사였을 뿐 현장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는 아니었다. 항의가 빗발치자 학생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40명의 학생을 선출했지만, 공청회가 시험기간에 이루어져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없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참여단을 구성한 과정은 대구시교육청에 비해서 매우 체계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참여단 모집을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모집 인원, 추첨일, 학생참여단 발단식 날짜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놓았다. 특히 학생참여단의 역할에 있어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 37조 제 4항’을 근거로 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학생참여단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설치된 조례상의 공식기구임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sup>22)</sup>에는 서울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들 가운데 540여 명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신청을 하였다. 5월 11일에는 공개 모집을 통한 추첨으로 80명, 다양성과 소수자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교육감이 위촉한 20명 등 총 100명(초등학생 22명, 중학생 30명, 고교생 48명)으로 학생참여단을 구성하였다. 5월 14일에 선정된 학생들의 명단을 공표하였고, 5월 17일에는 학생참여단으로 위촉된 학생들에 한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학생참여단 발단식을 거쳤다. 학생참여단으로 선출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학생참여단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과정은 참여 학생의 과반수가 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되어 최대 3차까지 투표를 치러 총 4명의 학생참여단 대표가 선출되었다.

다음과 같이 대구는 제정과정 자체부터 학생들의 의견 수렴에 부족했던 면이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꽤 공정하게 의견수렴이 진행된 서울시의 학생들도 대부분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는 일부 학생들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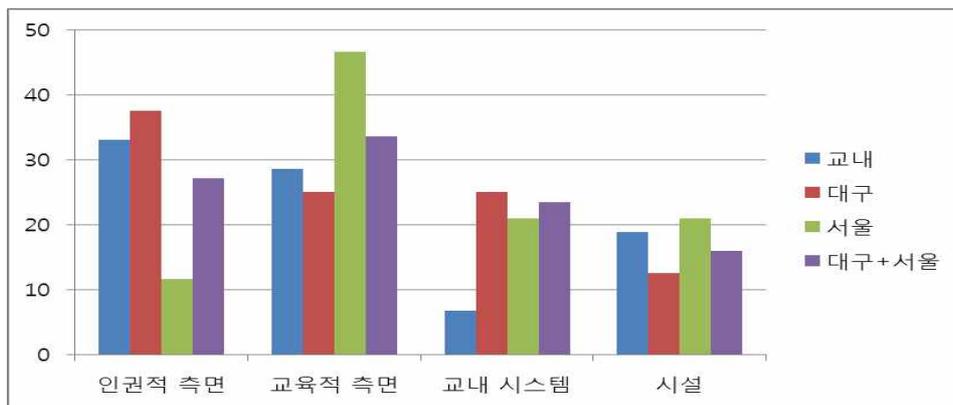
---

22) <http://www.st-rights.or.kr/>



<그림 8> 만약 자신이 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로 표시)

이는 조례에 대해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70%가 넘는 학생들이 조례에 대해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사항들은 지역 별로 조금씩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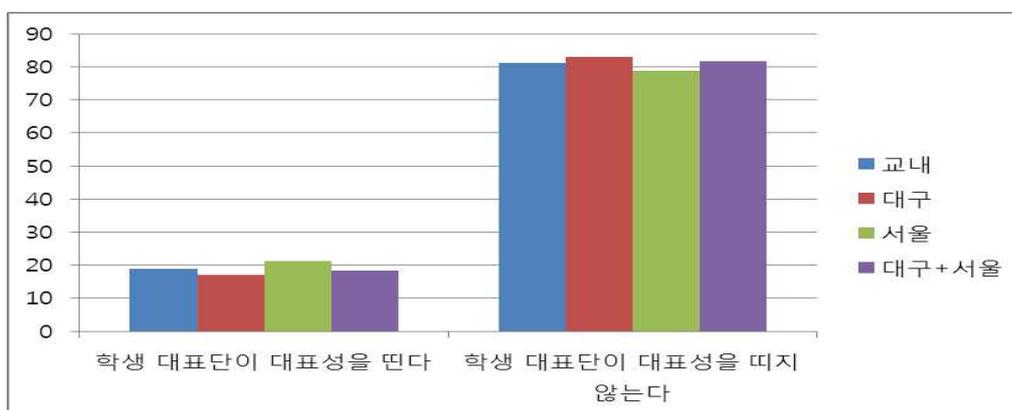
<그림 9>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입니까? (%로 표시)

교내와 대구에서는 인권적 측면에서 조례를 수정하고 싶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구는 학생인권의

신장 부분에서 학생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교육적 측면, 즉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 커리큘럼 같은 측면에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목적과 조례제정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비율을 고려해보면 대구가 서울보다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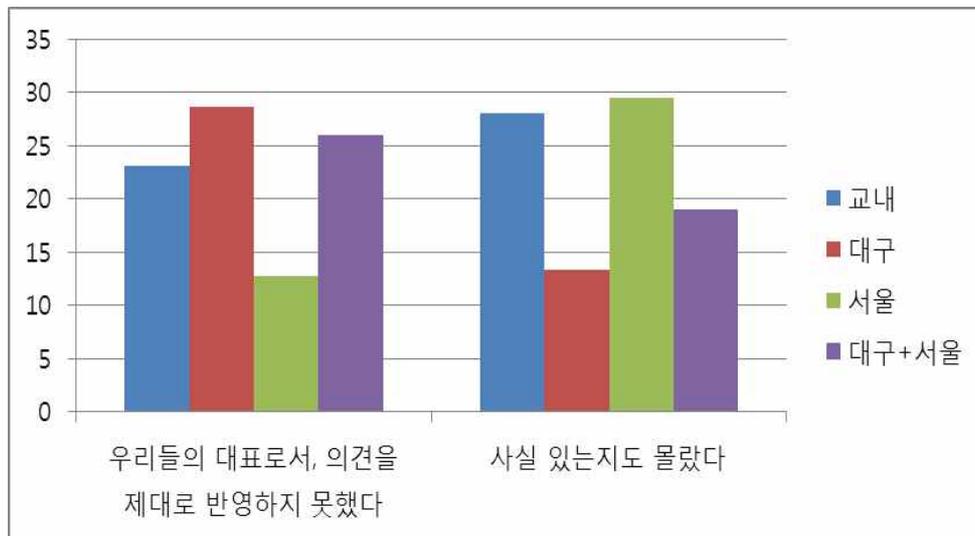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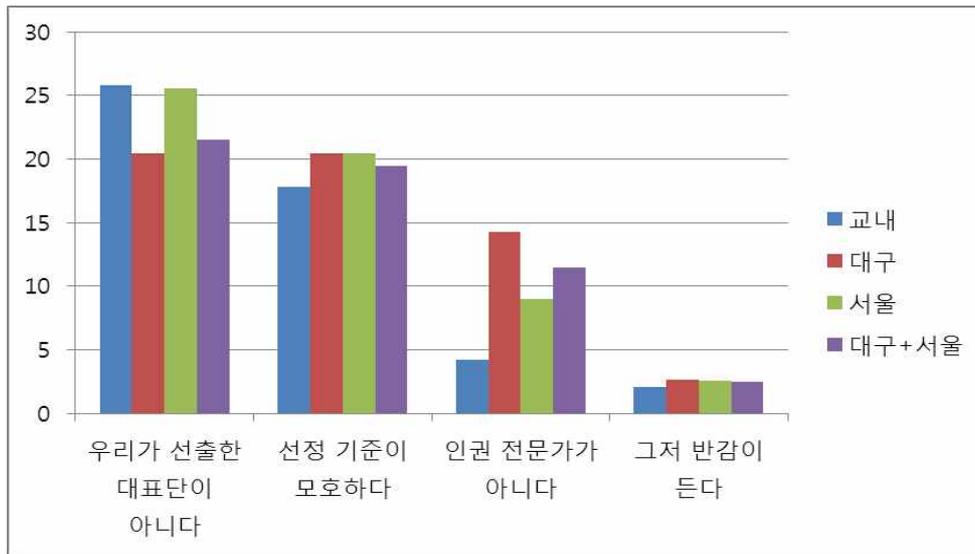
#### 4). 학생대표단 -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대표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학생들이 현 조례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과정 중에는 분명히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학생대표단이 존재해 학생들을 대신해 조례의 제정에 관여해왔다.



<그림 10> 조례제정에 참여한 학생대표단이 학생에 대한 대표성을 띤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표시)

학생대표단의 대표성에 관해서는 대구, 서울, 교내 관계 없이 평균 80%의 비율로 학생들이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림 11, 12> 학생대표단이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 표시)

다음은 왜 학생들이 학생대표단을 자신들의 대표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이다.

먼저 대구를 살펴보면 상위 항목 3가지는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우리가 선출한 대표단이 아니다’ 순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서울과 교내에서는 ‘사실 있는지도 몰랐다’ 항목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을 제외하면 대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대표단이 학생을 대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나 정작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정작 학생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며, 조례에 학생들의 의견들 또한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제정과정에 참여했던 학생대표단에 대해서는 선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홍보 과정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학생대표단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다음절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현장이 가진 구체적인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 나. 조례 분석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어 조례분석을 진행하였다 :

1. 학생인권조례의 본 취지는 학생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취지가 모든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2.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현실에 잘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명목적인 조항은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을 해치므로, 조항의 내용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3. 각 학교의 교칙은 자율적으로 제정하되, 그 본질적인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에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가).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3장 제1절 제29조(학생인권 교육) 4항,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의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한 조항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개체는 주로 학교장이나 교사이다. 따라서 교육감에게만 인권교육자료의 총체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은 학생의 처지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인권교육자료의 제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제3장 제29조 6항,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

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제31조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의 조항들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각각 학기당, 연간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초, 중, 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요약본’에 따르면 조회 및 종례시간과 상담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생인권교육의 비중이 31.6%에 달한다. 조회 및 종례시간에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시수를 정해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직원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교육효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학생인권신장에 대한 보장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나). 조례 자체는 옳으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제2장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2항,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그러나 학생의 의견이 학생인권조례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서는 이가 잘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특정한 경우에 대한 여론수렴에서는 제약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급식만족도 조사나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개별적 반대서명운동 등의 여론조사는 교직원 혹은 교장이 이를 강제로 제지하고 심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학생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제29조 8항,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에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의 보장과 지원의무를 명기한 조항이다. 그러나, 아직 학생들이 학생인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한다는 말은 형식적으로만 인권학습활동의 자율성을 명기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제30조(홍보) 2항,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의 전문을 알려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전문에 대한 의무를 명기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있는 학생들의 권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서울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 %로 표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모든 조항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 그 비율이 같게 나타나야 하지만 두발, 복장, 체벌 금지 조항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54%가 된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도가 어느 몇 항목에 치우쳐 있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제30조 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의무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형태로 조례 전문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실제로 그것을 읽거나 가정에 전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새로이 등장한 단체들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그 개념을 밝히고 새로 만들어진 혹은 만들어질 기관과 조직들은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의 네 가지이다.

이 부분에서는 조례의 조직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각 기관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해 조례 내용 자체의 문제점과, 조례 내용의 시행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옹호관이 기관의 장이고, 업무가 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하나의 기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하나로 묶어 분석할 것이다.

학생참여단은 100명 이내의 참여단 모두 학생이라는 점에서 다른 조직들에 비해 학생인권 관련 지식수준이나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의 발안,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서 이들의 기여도가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학생참여단을 인권보호의 주요기관에서 제외했다. 대신 교육청의 장인 교육감은 교육정책 집행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인권보호 주요기관에 포함했다. 정리하면 본 연구팀은 교육감, 위원회, 인권옹호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한 세 개의 주요기관으로 이해하고 선정했다. 본 연구팀은 학생인권조례의 조직 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크게 네 가지로 파악했다.

우선 인권옹호관의 업무만이 조례에서 강조되어 있고, 인권옹호관의 권리<sup>23)</sup>는 명시되어있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제40조(보고의무)’에서는 인권옹호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권리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권옹호관의 권리에 대해 명기하지 않는 것은 직무의 독립성에 있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sup>24)</sup>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인권옹호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어떤 일인지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았다. 이는 교육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인권옹호관에게 업무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권옹호관이 교육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한다. 더구나 인권옹호관이 교육감의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23)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인권옹호관의 권리는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 자신의 평등과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옹호관 스스로의 결정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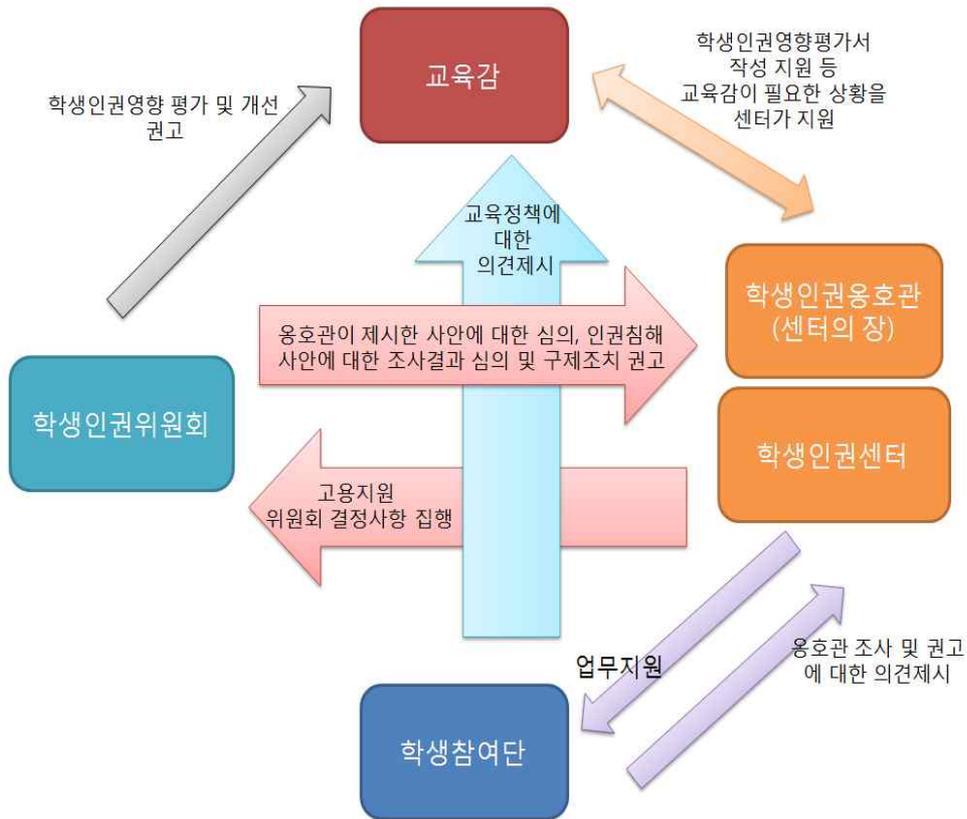
24) ‘제39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제10항

또한 인권옹호관의 직무는 10가지<sup>25)</sup>로 나뉘는데 비록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그의 직무를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양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 옹호관 운영조례안’이 최근에야 가결되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속단하긴 이를 수 있지만, 학생인권센터의 규모는 많은 업무 수행을 위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커져야 할 것이다. 업무들이 가중되어 센터 규모가 커진다면 직원 수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 문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례 시행이 계속됨에 따라서 인권옹호관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직무와 권한이 완벽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3년간 학생인권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감의 직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말하기가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인권옹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위원회의 직무가 학생인권종합계획 및 교육감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개선 권고 등 단순한 입장표명 수준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에 비교해본다면 교육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교육감이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때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시의회에서 조례에 관한 수정 또는 폐지에 관한 투표를 하는 등의 보호수단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교육감의 학생인권 보장 관련 직무와 권한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을 초래해 학생들의 인권이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상의 복잡성이 이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인력이나 절차,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 위원회와 인권옹호관과 인권교육센터, 그리고 참여단은 서로 비슷한 성격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으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지 않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각 조직별로 예산을 편성해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상의 효율성도 감소한다.

25) ①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②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③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④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⑤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⑥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⑦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⑧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⑨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⑩학생인권영향 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그림 14> 각 단체들 간의 관계도

또한 실행주체와 계획주체가 서로 달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많다. 예를 들어 위 그림에서 학생인권종합평가가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2절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1항, 2항에 따라 먼저 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때 학생교육인권센터에 업무협조를 의뢰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학생교육인권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평가보고를 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받은 평가사항을 토대로 인권교육정책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하고,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에 따라 다시 관련 처리 업무를 학생인권센터에게 일임한다.

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무처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데 비해 해당 업무를 평가하고 수정해서 다시 업무로 옮기려면 위원회->센터->위원회->교육감->센터 식으로 번거롭게 진행이 되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원회나 교육감이 의도했던 목적이 왜곡되어 전달될 위험이 높아진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영향평가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제39조 10항에 따라서 인권옹호관의 도움을 받고, 제33조 1항, 2항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 및 개선 권고를 받는다. 영향평가, 종합계획 작성이 교육감의 중심업무이고 다른 조직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조

례에 따라서 이 하나의 일을 처리할 때 세 개의 조직이 모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관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위원회는 인권종합계획 시행에 대해서 교육감과 옹호관 모두에게 자문 및 개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 2). 대구교육권리헌장

대구교육권리헌장에서 본 연구팀은 두 가지 측면으로 문제점을 나누었다. 첫 번째는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실생활에서 잘 적용되지 않아 그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이다.

### 가).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1장 제3조,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두발의 형태는 예외로 한다.

두발의 길이에 대해서는 규제를 허락하고, 두발의 형태에 대한 규제는 예외로 하는 것은 지나친 문제가 있다. 규제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항이고, 두발의 길이만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시켰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두발의 형태를 규제하는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놓고, 규제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그 상황을 수긍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어야 한다.

제11조,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여기서 명시된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학생은 학교생활에 관련한 사안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모든 회의에 있어서 학생의 입장을 밝힐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여야 하며 선생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학생들에게 교사에게 존경할 것과 교사의 교육 및 연구 활동 권을 침해 하지 말 것을 명시한 권리이다. 일단 교사에게 존경할 것 자체가 자의적이 아닌 강제적인 비인권적 명기일 뿐만 아니라 상위항목인 ‘학습에 관한 권리’와 위 조항의 연관성도 없다.

제14조, 학생은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에 있는 ‘문란하게’라는 어휘가 매우 애매모호하고 학생들 자체를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존재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비인권적 명기이다.

제20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청소년 가장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운동선수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고, 우선적으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운동선수는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보기 힘들다. 학생운동선수는 위 조항에 명시된 빈곤, 장애, 한 부모가정, 조손 가정 등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따라, 의지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소수자라고 명시하기 어렵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예체능 관련 학생들도 모두 명시해놓아야 합당하다. 또한 성 소수자 또한 문화적 이유로 권리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제1장 제2조(폭력 및 차별로부터 자유), 학생은 타인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대구는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감 자료<sup>26)</sup>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대구 학생 천명 당 5.6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대구교육권리현장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위 조항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 말은 곧 실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26) ‘학교폭력, 대구전국최다’, 티브로드 보도본부 대구보도국,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broadnews&logNo=100168884247&isFromSearch=true>

제13조(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학생에 대한 징계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보장, 이의 신청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는 징계 과정에 있어서 징계 대상 학생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 조례분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조례분석 결과 요약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대구시 교육권리헌장
조례 자체가 문제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자료의 개발·보급에 있어서 시행 주체가 학교장, 교사가 아니어서 학생의 처지를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li> <li>● 학생인권에 대한 규정 교육 시수가 2시간으로 작다. 특히, 2시간은 대부분 조례 및 종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li> <li>● 교직원의 인권교육 학습 부분에서도 교육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학생인권신장에 대한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런 근거의 명시 없이 두 발 형태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li> <li>●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위헌장에서 언급된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위배하는 행위이다.</li> <li>● 선생님에게 존경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올바른 태도도 아니며 학생의 자의적인 판단력을 침해하는 비인권적 행동이다.</li> <li>● 학생운동선수는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권리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포함시키기 힘들며 오히려 성소수자가 사회·문화적으로 권리실현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li> </ul>
실효성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의 반대 서명운동 같은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학교장·교직원이 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학생들에게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자유만을 명시한 것은 형식적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자신이 어떤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받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 보장은 그저 형식적일 수 있다.</li> <li>● 학생들의 구체적인 조항인식도 부분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인 학생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지 않는다.</li> </ul>
구조의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새로 창설된 단체들 간의 복잡성이 행정상의 비용낭비와 느린 처리과정으로 비효율을 발생시켜 오히려 학생인권 신장에 방해할 수 있다.</li> </ul>	

따라서, 본 연구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1)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2)조례 제정 이후에도 학생들은 조례가 의도하였던 효과들<sup>27)</sup>에 대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실제로도 조항에는 명시되어있으나 현실에는 이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부족했으며, 조례의 제정 전·후로 홍보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정 중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생대표단의 존재를 대부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조례의 조항들도 목적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존재했으며, 조항은 옳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이 부재해 현실적인 조례의 현실적인 적용이 불가능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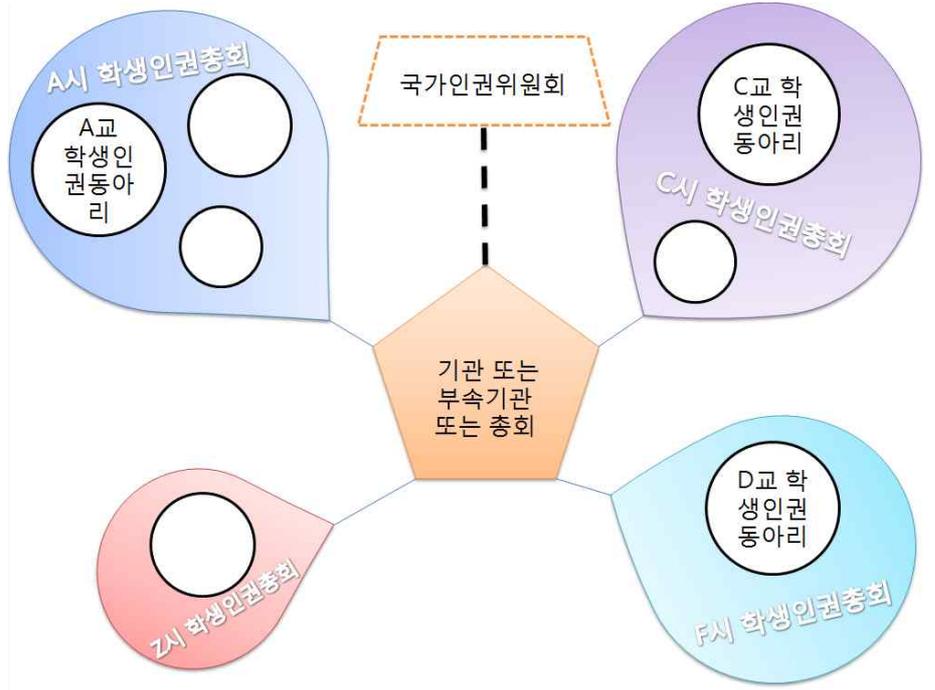
## 2. 해결책 제시

### 가. 구조적 문제 해결

앞서 우리는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대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조례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조례를 학교 내에서 교칙이나 교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었다.

27)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 동아리



<그림 16> 학생인권동아리 조직 관계도

학생인권 동아리는 유네스코 협동학교에서 모티프를 따온 동아리 형식으로 교내에 설치되어 각 학교의 인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각 학교의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문제점을 파악, 분석, 정리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도모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부문에 있어 문제가 되는 조항이나 새로운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있어서 교육청에 개정, 제정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직접 학생이 조례의 개정, 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가). 업무

① 학교별 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 동아리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에 산재되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흩어진 각각의 학생인권 동아리가 그 학교의 학생인권 실태 조사를 리포트로 작성한다면, 전국적으로 수 백 개에 달하는 학생인권 실태 표본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을 점진적으로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② 인권교육 프로그램 보급

학생인권 동아리가 나서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서 인권프로그램을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보급할 수 있게 되고, 학

생인권 동아리 입장에서는 교내에서의 그 동아리의 역할이 강화되고 보다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 ③ 학생인권 총회참가

학생인권 동아리의 핵심 체계는 ‘유네스코 협동학교’에서 모티프를 따 온 것이다. 그래서 유네스코 협동학교 총회 개념을 빌려와 학생인권 동아리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각 학교에 있는 학생인권동아리는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각 학교의 학교인권 실태를 조사한다. 이는 반인권적인 사례부터, 무인권적, 친인권적 사례까지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 총회에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인권적 사례에 대해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에서의 문제점이나 조례 자체에 문제점을 정리하여 교육청에 이를 통보하고 즉각적으로 수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 조례에 한계가 오거나 새로운 조항 추가가 필요할 상황에도 위 총회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청에 권고할 수 있게 한다.**

#### 나). 가입 조건 및 절차

앞 설문조사 분석에서 밝혔듯이 많은 학생들이 조례 제정과정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그들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가입 조건이나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① 가입조건

가입조건 측면에서는 학생인권 동아리의 모티프가 되는 유네스코 협동학교와 가입조건<sup>28)</sup>을 달리 한다. 학생인권 동아리는 그 특성상 학교에 얼마나 학생인권이 성숙하냐는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가 좋은 학교에만 학생인권 동아리 개설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점진적으로 대상 학교를 늘려가면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동아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인권이 성숙하지 않은 학교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에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던 학교에서는 그들이 이때까지 학생인권을 위해 펼쳤던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을 타학교와 공유할 수 있다. 일단 모든 학교가 학생인권 동아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생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인권 동아리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8) 유네스코 협동학교는 협동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먼저 신청서를 검토한 뒤에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그 학교를 평가한다. 평가의 목적은 유네스코 협동학교로 지정하면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해당 학교가 협동학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그 학교 동아리에 유네스코 동아리를 구성하게 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유네스코 동아리는 구성되지 않는다.

## ②가입절차

가입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신청서 작성이고, 두 번째는 학교 방문 조사이다.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학교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청서에 현재 학교의 인권실태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학교의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다른 압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학생이 직접 쓰도록 한다. 학생은 학교장이나 교직원의 생각을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대신에 학생 그 자신의 의견을 적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과연 학생이 학교 상황을 잘 나타낼 것인가’에서 나온다. 사실상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장이나 교직원 또한 학생과 같이 현재 교내의 학생인권실태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여기서 지켜져야 할 것은 학생의 신청서나 아니면 학교장 또는 교직원의 신청서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신청서는 따로 제출되어야 하며 두 주체가 그 상대방의 신청서에 영향력을 가하지 않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방문 조사이다. 방문조사는 말 그대로 각 학교를 방문해 그 학교의 인권실태 및 학교환경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때 평가자는 중앙 학생인권 동아리 연합의 관리기관에서 소속된 사람으로 하는데, 이 이유는 학생인권 동아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이고,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별적인 여러 기관에서 평가자를 보내는 것보다는 통일된 하나의 기관에서 보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교 방문 시에 평가요소는 거짓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방문 평가에 앞서서 학생 혹은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보낸 학생인권 동아리 연합 가입 신청서에 기술된 학교 인권 실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이 평가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현실과 얼마나 상응하는지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다). 통합 관리 기관

학생인권 동아리는 전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끼리 원활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본 연구팀은 이 상위 주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만의 답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총 3가지의 대안을 고려해 보았다.

## ①기관(Organization)

첫 번째 방법은 수 백 개에 이르는 학생인권 동아리가 상호작용하는 매체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유네스코가 이와 같은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sup>29)</sup>, 만약 학생인권 동아리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학생인권 동아리 연합이 빠른 시간 내에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

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 기관은 항상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통합 기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부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급하게 학생인권 동아리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통합 기관을 설립한다면 비용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하나의 중앙 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만 감당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 기관은 유기적인 학생인권 동아리의 협력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 ②부서(Department)

두 번째 대안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기관-인권위원회 등-에 학생인권 동아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서는 기존의 부서에 더하여 ‘학생인권 동아리 관리’와 같은 새로운 부서를 만들게 될 것인데, 이 대안을 선택한다면 첫 번째 대안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만약 포화상태에 이른 기관에게 학생인권 동아리에 관련하여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라고 지시한다면 일의 비효율성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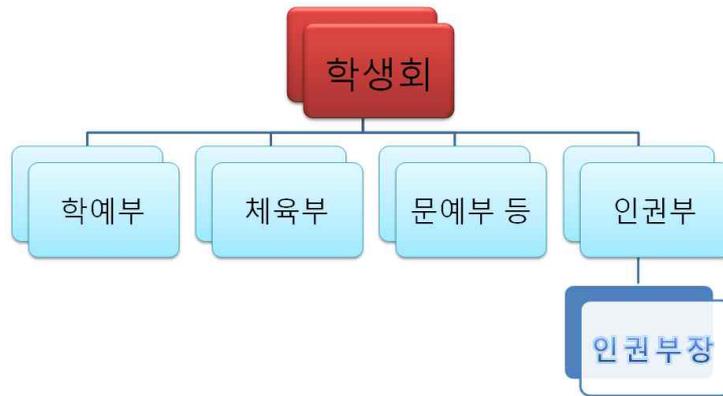
## ③총회(General Meeting)

세 번째 대안은 기관이나 부서와는 달리 어떠한 시기마다 정기적 그리고 임시적으로 총회에 학생인권 동아리에 대한 총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실 전국의 학생인권 동아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365일 활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학생인권 동아리 총회가 열릴 때마다 크게 활성화된다. 그것은 각 학생인권 동아리에 대한 조직 관리가 힘들고 꾸준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 2). 학생회 ‘인권부’

---

29) 유네스코의 협동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ASPnet National Coordinator)를 중추 기관으로 움직인다. ‘2012 유네스코 협동학교 길잡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저



<그림17> 학생회 인권부 조직 관계도

인권부는 학생회 산하 부서로 두어 학생회와 함께 교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홍보와 조례에 따른 교칙을 개정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이다. 비록 조례에 대한 직접적인 의문은 제기하지 못하지만, 조례를 바탕으로 교칙과 교내의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어 조례의 제정에 따른 학교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 업무

① 각 학교에 존재하는 학생회 내에 ‘인권부’ 라는 이름의 새로운 부서를 추가시킨다. 학생회 인권부는 학생회에 소속되는 하나의 부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회와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생기게 된다. **학생회 인권부는 교칙 내에 존재하는 비인권적 혹은 무인권적인 조항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교칙을 시정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 인권부가 실시한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칙 제정 및 수정 과정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인권부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개진할 수 있다. 인권부의 주도 하에 제작 및 실시되는 인권 활동 프로그램은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아 주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스스로가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학생인권 보호를 주도하는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한다. 조례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교육청 측에서 제작된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 인권부는 지역별 의무교육시간

에 따라서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학교의 장 및 교원들과 함께 인권프로그램 시간을 분배 및 구성하는 것을 주도하는 등 의무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책임을 갖는다. 더불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권리헌장을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다. 조례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참여단 구성에 있어서도 모든 학생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 학생참여단 구성의 형평성과 참여단의 대표성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생회 인권부 내에서 선출된 학생인권부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취합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등의 업무를 주도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인권부 내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들을 조율하여 학생회의에 참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회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권 실태조사는 학생회 인권부의 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활동으로서, 각 반에 존재하는 비인권적 사례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안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바탕이 된다. 인권 실태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학년 및 성별을 표시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회 인권부는 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생회 인권부는 위의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동을 개진하기 때문에 교내의 학생인권에 관한 정보를 바르게 알아낼 수 있도록 인권 실태조사 조항을 적절하게 구성한다.

#### 나. 구성 및 선출방식

① 학생회 인권부는 각 반에 한 명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 인권부가 몇 학급으로 몰릴 경우에는 인권부원이 존재하지 않는 학급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교생의 의견을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학급 별로 일정한 수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선출은 지원자에 한해서 실시하며 교원 등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각 반에서 2명 이상의 지원자가 발생할 시 학급 내 투표에 의해 지원자들 중 한 명을 선출하고, 지원자가 없을 시 그 학급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③ 학생회 인권부원 지원 및 선출 과정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부장은 학생회 인권부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하고 투표하여 한 명을 선출하도록 한다.

## 나. 구체적인 조항의 수정

### 1). 서울시학생인권조례

#### 제3장

#### 제1절

제29조(학생인권 교육) 4항,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제29조 4항에서 제시된 문제점은 조항이 학교장 및 교직원의 책임은 언급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항의 내용을 ‘교육감, 학교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

제29조 6항,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6항과 제31조의 문제점은 인권교육 최소시간을 2시간으로 못박아놓은 것이다. 현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실태를 고려해봤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할애되어야 함에 의심이 여지가 없는데 말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학생인권교육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에게 학기당 2시간, 그리고 교직원에게는 연 최소 2시간의 교육을 보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위 조항 중 첫 번째는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은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6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29조 8항,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 8항에서 제기된 지적은 주제와 관련해서 학교의 장의 역할이 너무 막연하여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지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로 수정되는 것이 좋겠다.

## 제7절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4항,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 4항에서 제기된 조항의 한계는 그것이 도대체 누가 복지를 받는지 정보를 구명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서는 조례 본문에다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위치, 종교, 지역, 국적, 임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장황하게 열거하면서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이와 같이 위 제21조 4항도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적어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구체적인 집단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비행학생, 가출학생, 임신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학생, 기초수급학생 등과 같이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하여야 한다’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4항,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4항과 관련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활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그들이 그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결정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청이 각 산하 학교에 설문지를 내려 보내어 학교가 학생들에게 비정규 교육활동과정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지 조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팀이 분석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얻은 결론과는 다르게, 이 배포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청이 항상 얻어왔던 결론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비공식 교육과정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이 신빙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실태를 왜곡할 여지가 있는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2항,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2항으로부터 알아낸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방할 자유를 크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청이 나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신빙성 있는 방법을 바탕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0조(홍보) 2항,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의 전문을 알려야 한다.’

제30조 2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위 조항에 명시된 방법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의 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올린 사례는 많이 있으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다가 ‘전문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거나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명시하여 학생 및 학부모로 하여금 단순히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의 전문을 직접 확인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29조(학생인권교육) 1항,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1항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및 학교 사이에서의 유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 학생인권을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학교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조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교육청과 학교 두 주체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 2). 대구교육권리헌장

### 제 1장(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두발의 형태는 예외로 한다.

두발의 형태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학교는 두발의 길이와 형태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수정한다.

제11조,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학생대표는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생의 대표로서 학생 측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으므로,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로 수정한다.

제14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여야 하며 선생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학습에 관한 권리’ 라는 상위항목과 연관성이 없는 교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 조항을 삭제하거나 교권을 명시하는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

제14조, 학생은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란하게’ 라는 어휘가 뜻을 정의하기 애매모호하고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생은 학내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한다.

·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2조(폭력 및 차별로부터 자유), 학생은 타인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대구교육권리헌장에는 교원의 권리에 폭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와 같은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학생에 대한 징계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보장, 이의 신청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보장, 이의 신청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협박·강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 8절 제 25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면 징계내용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구교육권리헌장에는 이러한 항목이 빠져 있다. 징계사유로 인해 해당 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한다.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빈곤, 장애, 한 부모가정, 조손 가정, 청소년 가장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운동선수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보장 받고, 우선적으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10절 제28조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

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은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소수자 학생에게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구교육권리헌장에는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라는 단어는 오히려 일반학생들에게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소수자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청소년 가장 가정, 다문화 가정, 성 소수자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고,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한다.

또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10절 제28조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의 조항과 같이,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내·외 교육활동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장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제32조 교육 활동을 공지 받을 권리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기준 등에 대해 공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도 부모 등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기준 등에 대해 공지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생이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 등 보호자에게보다 학생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학생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기준 등에 대해 공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추가해야 한다.

## 제35조 시정을 요구할 권리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비인격적 대우, 차별 등 인권에 반하는 사항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당사자에게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학교규칙 또한 학생들의 보호자가 아닌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부모 등 보호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① 학생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학교규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의 비인격적 대우, 차별 등 인권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자신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학생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의 침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 1. 연구 결과 요약

학생인권은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해 보장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활발해져 지금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조항 시행의 문제 등이 발생해 조례의 효용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느껴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팀은 교내와 대구, 그리고 서울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도출해내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은 학생인권에는 관심이 있으나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추세이며, 학생인권조례 발의 후에도 이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인들은 다르지만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학생대표단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

생들이 그들이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조례에 대해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대구교육권리헌장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서울은 세 가지 이유로 그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례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조례 자체의 문제는 없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두 번째이다. 세 번째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직들이 많아 서로의 관계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대구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조례 내용의 문제점과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구교육권리헌장에서는 권리 보장을 위한 서술이 불분명하고 권리를 제시하는 조항에 오히려 의무를 역설하는 등 일부 조항 자체가 많이 허술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수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조례는 학생의 의사표현이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복지혜택이 필요한 학생들을 기존 조항보다 더욱 명확히 명시했다. 피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조례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의 조례는 학생들의 권리 제시가 적절하게 되어있지 않는 조항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소수자 권리의 신장에도 역점을 둔 수정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실효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조례의 수정 및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실태의 파악을 교육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별 규칙 및 학생권리 조항을 더욱 학생실정에 맞추려면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권리헌장에서 제시된 수준을 뛰어넘어 학교 내부에서의 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교내의 학생인권 동아리 설치와 학생회의 인권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학생인권 동아리는 '유네스코 협동학교'에서 그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했지만 선별적으로 등록 가능한 유네스코 협동학교와 달리 인권 동아리는 모든 학교에서 설치한다. 동아리의 처리사항은 학교별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프로그램 보급, 학생 인권총회 참여, 그리고 교칙에 대한 의견 개진이다. 각 인권 동아리의 활동을 장려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직, 부서, 총회의 세 가지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인권부는 학생회의 부속부서로 설치하는데, 하는 일은 인권 동아리와 유사하나 학생회 소속이라는 성격 때문에 학생회와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두드러진다.

대구경의 경우에는 홍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서술이 부족하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생인권 홍보나 학생인권보호조직의 설립 등을 검토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서 만든 조직들의 연계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지 의문이 든다. 본 연구팀은 조례 내용 수정을 통해 연계성과 효율성 확보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조직들 운영과 관계의 행정적, 법적인 절차의 까다로움이 있는 만큼 완전한 파악이 어려워 이 사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조직들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의 편협성이다. 이 논문의 본 의도는 전국에서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서울과 대구 두 가지 지역의 예시만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전체적인 연구논문에서, 특히 조례의 직접적인 분석 부분에서 다른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대구교육권리헌장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sup>30)</sup>는 대구교육권리헌장에 따라 교칙이 개정중일 수 있는 과도기이어서 교칙변화여부나 선생님의 태도변화 여부, 대구교육권리헌장의 인지도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것들 외의 대구교육권리헌장의 사전 예고성, 학생대표단의 대표성 등에 대한 설문자료는 시기와 관련이 없어 확실히 신빙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을 바탕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시점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인식에 대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30) 2012년 9월~11월 기준.

## 참고문헌

### (1) 단행본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 지역순회토론회-대구‘경북권-’,  
‘학생인권시민공청회, 대구학생인권연대 숭tong’

### (2) 논문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2011  
최형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2012

### (3) 인터넷 뉴스

뉴스1코리아, [국감 브리핑] 무너진 광주 교권…2009년 16건에서 올 1학기만 283건, 2012/06/24  
17:43

### (4) 관련기관 홈페이지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2011  
국제연합,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 (5) 사법문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교육권리헌장」, 2012/05/15 선포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012/01/26 실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25]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 개정])  
교육기본법([시행 2008. 6.22] [법률 제8915호, 2008, 3.21, 전부개정])  
초·중등 교육법([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3.21, 일부개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 조례 제 4085호)’, 2010/10/05 선포

### (6) 도서

‘법학개론’, 박 상기外 12人, 전영사.

<Abstract>

## The study of the downside of Student Rights Act and methods to enhance its practicality

As the public's interest towards human rights and education is rising at an ever-high rate, concerns about students' right is simultaneously being amplified. The evidence of such social phenomenon would be the Student Rights Act, which was proclaimed by several provincial and municipal education offices. However, as various flaws regarding the efficacy and activeness of such enactments arose, a need to discover and research the root causes of this problem matter and establish measures to alleviate the issue became an imminent prior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Student Rights Act both in a microscopic manner and a holistic viewpoint. The former involves the clause-by-clause analysis of the Student Rights Acts including the Daegu Educational Rights Charter and Seoul Metropolitan Student Rights Act. The latter aspect entailed macroscopic assessments on the Enactment Rules and the result of surveys conducted on students in Seoul, Daegu regions. Moreover, by defining the terminology of "Student Rights," and applying the assay of various codes to prove and support the established definition, the research team established a fundamental groundwork of this treatise. Also, another premise that was set was that a faulty comprehension of a law disables the ability of the law to perform its given socio-political roles. In the case of Student Rights Acts, a critical, lack of understanding of these enactments among the students seemed to be suppressing their protective functions to students' rights that were supposed to be carried on. Such phenomenon is evidently shown by the result of the survey conducted by this research team. As the survey results concluded that most students do not have practical and in-depth knowledge about their own rights, endowed by the enactments, it became clear that the Student Rights Acts has yet to truly influence the education scene. In addition, this research further focuses on the involvement of students before passing the Act and the activity of students afterwards and how such participation of students contribute to the legitimacy of the enactment. Furthermore, this study sheds light on solutions that can solve such issues in a creative perspective, creating new programs and organizations that aid the empowerment of student rights.

<붙임1>

# 설문조사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교내연구논문프로젝트 팀 '학생은 국력이다'입니다. 저희는 학생인권조례(현재 발효된 학생인권관련 조례 및 헌장들, 즉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최근 발표된 대구교육권리헌장등을 말합니다. 성격이 다른것도 있지만 통틀어 학교인권조례라고 하겠습니다)의 실효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성실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아시나요?

1 안다.

2 모른다.

3. 학생인권조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복수 응답)

1두발의 권리

2복장의 권리

3집회 및 결사의 권리

4임신 및 출산의 자유

5성 소수자(동성애자 등)의 자유

6종교교육 금지

7체벌금지

8CCTV설치 동의에 대한 권리

4. 학생인권조례 발표 후 학교가 좀 바뀐 것 같나요?

1예

2아니요.

3잘 모르겠습니다.

4-1.(1에 답하신 분들만)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두발, 복장 빼고)

1교칙 개정

2선생님들의 대우

3친구간의 인권존중

4학교폭력 감소

5기타 ( )

5. 두발자유화나, 복장자유화, 체벌금지가 현재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다른 교사들  
이나 학생들로부터 학생으로서의 인권이 존중 받는다는 느낌이 드나요?

1예

2아니오

6. 집에 가면 부모님께서 귀하를 학생이라는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대우해주나요?

1예

2아니오

7. 학생인권조례에 학부모들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  
나요?

1좋다

2아니오

8. 재학 중에 학생인권조례 발표 전에 조례가 제정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  
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8-1. (1에 답하신 분들만)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1 교육청의 공고
  - 2 인터넷
  - 3 학교 공문 or 선생님의 말씀
  - 4 친구
  - 5 직접 알아봄
9.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 1 안다
  - 2 모른다
- 9-1.(1에 답하신 분들만) 아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됐을까요?
- 1 인터넷 설문조사
  - 2 공청회
  - 3 문자투표
  - 4 학교 설문조사
  - 5기타 ( )
10. 만약 자신이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10-1. (1에 답하신 분들만)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1 인권적 측면

- 2 교육적 측면
- 3 교내 시스템
- 4 시설
- 5 기타 ( )

11. 실제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정말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11-1. (2라고 대답하신 분들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2개 가능)

- 1 우리가 선출한 대표단이 아니다.
- 2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 3 인권 전문가가 아니다.
- 4 그저 반감이 든다.
- 5 우리들의 대표로서,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 6 사실 있는지도 몰랐다.
- 7 기타 ( )

논문수상작  
**2013 인권작품 공모전**

**장려상**

**군대 내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대책 고안**

- 최근 2년 이내 제대자와 현 복무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박샘솔, 방세잎

## 요 약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특수성 아래 한국은 안보를 나라의 최고의 우선목표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군인은 희생과 복종을 강요당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던 한국 사회에 2000년대 들어 28사단 GP총기사건,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사건과 군 의문사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고발되었다. 이로 인해 군인의 인권문제는 수면위로 떠올라 시민사회에 논쟁거리가 되었다.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사회화를 겪는 20대 초반의 남성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군대 내에서의 자살, 타살, 의료사 문제를 넘어 제대 후에 사회에서의 부적응 문제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군대 내에 인권침해문제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군인 인권침해 문제로 가장 대표되는 구타 및 언어적 폭력, 성폭력, 의료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밝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여 군인인권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권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본 후 현재 한국 군의 인권실태 현황과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을 통해 최근 2년 이내에 제대했거나 현 복무중인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한국군의 인권현황을 조사하고, 병사들의 현재 군대 내에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심층면접 결과, 면접 대상자의 77%가 한국 군인은 인권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며 69%가 국방부가 군인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현재 인권 개선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익명보호의 부재와 낙인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부에서 기대하는 군 기본권 상담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 특수성과 문화를 잘 이해하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복지문제 해결이 가능한 군 생활복지사 제도이다.

둘째. 기존의 비전캠프의 참가자 선정문제와, 낙인문제,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의 부재의 문제점을 보완한 리업(Re-up)캠프이다.

셋째. 군대는 폐쇄적이고 계급에 기초한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고발에 대한 비밀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급관이나 군대 내의 인력에게 청원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청원 기관을 만들어 군인들의 고민을 보다 객관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익명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독일식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이다.

넷째. 군병원의 낙후된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문제, 병사들의 진료의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간병원과의 협력방안이다. 군-민의 통합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주민 일부와 함께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 목 차

###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 II. 이론적 배경

1. 인권 개념의 검토
  - 1) 인권의 개념
  - 2) 인권의 역사
  - 3) 자유권
  - 4) 사회권
2. 군대 내 인권의 의의
3. 한국군의 인권 실태
  - 1) 군내 구타 및 언어폭력
  - 2) 성추행 및 성폭력
  - 3) 의료 복지
4. 현제도 현황 및 문제점
5. 선행 연구의 검토

### III. 조사 설계

#### IV. 분석 결과

1. 폭력 실태 및 문제점
2. 성추행 및 성폭력 문제점
3. 의료복지 실태 및 문제점
4. 현제도 현황 및 문제점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군 생활복지사
2. 리업(RE-UP)
3. 군 음브즈맨
4. 군-민 지역사회 의료협력체계

#### 참고 문헌

## I. 서 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우리 헌법 제2장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도 인간의 권리를 침범할 수 없는 초국가적 권리이자 본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모두가 보호받아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을 다룬다. 이렇듯 남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던 우리 사회에 최근 군가산점 제도의 재도입 추진, 남성연대 성채기 대표의 투신사건으로 인한 여성부와의 대립 등을 통해 남성에 대한 인권이 화두로 떠올랐다. 남성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집단으로는 남성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군대가 있다. 군대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의미로 존재한다. 국가의 제도로서 징병제가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 제도 자체에 대해 시민들이 감시와 비판을 하면서 주요 문제를 토론하고 제도 변화에 관여한다.<sup>1)</sup>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인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두 차례의 군사독재정권에서 개인이 국가 안보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도구로서 징병제가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군대는 집단적이고 밖으로부터 폐쇄적인 특징으로 그 내부에서의 문제는 토론이나 관심의 영역도 철저히 제한되었다. 그러던 한국 사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고발되었다. 2005년 6월 말 군대 알몸사진 사건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그 해 1월에는 논산의 육군 훈련소에서 한 중대장이 사병들에게 인분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고, 6월 중순에는 김 모 일병이 최전방에서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장병 8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군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다만 가혹행위뿐만이 아니다. 올해 6월 중병에 걸린 육군 병사가 제대로 진단조차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뇌종양에 걸린 이 병사는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대나 상관들은 일반 두통약을 주거나 심지어 손을 바늘로 따고 한약 소화제를 주는 식으로 대응했다. 미비한 군대 의료체계가 아까운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는 한 두 번이 아니다. 상급자들은 병사의 질병을 그저 피병쯤으로 여기다 문제를 키우고 병명도 모른 채 “그 정도 아픈 것 가지고 그러냐” 고 으박지르면 힘없는 병사는 아프다는 호소를 더 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현실이다.<sup>2)</sup> 연이어 일어난 군대 내 성추행과 가혹행위 사건과 군대의 열악한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고발은 시민사회나 정치권이 군대 인권의 열악함에 분노하고

---

1) 한겨레 “20대 여성들은 왜 ‘군가산점제’ 를 찬성할까?” 2013. 8. 1

2) 서울신문 “사병 의료인권 종합대책 마련하라” 2013. 6. 19

공감하면서 긴급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군대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군대 내에서는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sup>3)</sup> 실제로 군대는 군인들에게는 해당복무 기간 동안은 그들만의 사회이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격적 모독은 병사들에게 불만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자살이나 범죄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징병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우리 사회에서 군대 내에 인권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최근 국방부는 군내에서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언어폭력을 금지하는 등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마련했으며, 군인들의 심리 상담을 위한 기본권 상담관 제도를 마련하였고, 군대 내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병사들을 위해 비전캠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혹행위와 성폭력이 주로 발생 하던 내무반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군 응급환자센터가 마련되고 ‘군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되는 등 사병들을 위한 의료체계도 개선되었다. 이렇게 군대 생활 개선과 현대적인 의료시설확충 등이 이루어져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군의 인권상황에 대한 변화 정도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 상황변화의 속도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군대 내에 인권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부가 마련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군대문화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sup>5)</sup>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2005년 이후 군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미 국무부가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서 군대 내 학대행위를 꼬집은 사실도 있었다.<sup>6)</sup> 이렇게 군대 내에 인권 문제는 너무도 심각한 반면 국가는 이를 수면위로 들어 올리려 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태도와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보다는 인권문제를 사병들 간의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사회에서 이슈로 토론되는 것에도 폐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군내부의 가혹행위와 의료시설에 대한 문제가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은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을 갖고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과 몇 세대 전만해도 전쟁과 군사독재정권으로 인해 나라전체가 경직되어 “군에서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군인은 군인이기에 앞서 제복을 입은 시민이며 군인의 인권은 군인이라는 특수신분의 위치 때문에 인권의 문제가 침해되거나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군이 진정으로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대 내에 실태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제도를 도입하고 군내에서 의식 전환과 문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3)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 예방프로그램 연구” 2008 p.1

4) 김의열 “신세대 장병의 적응 실태 및 군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연구” 2009 p.9

5)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 예방프로그램 연구” 2008 p.2

6)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06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종교, 월급문제 등의 여러 가지 군인인권의 논쟁사항 중에서 가혹행위, 성폭력, 의료복지문제 3가지 사항에 한정하여 군인인권의 실태와 방안 마련 연구를 하였다.

다음 제2장에서 인권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권의 역사와 인권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 군인의 인권을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 중에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유권과 사회권을 위주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통해 한국군의 인권실태를 구타, 언어폭력, 성폭력 및 의료복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군내의 인권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적 면접을 설계하고 제4장에서 현 군내의 인권실태와 현 제도의 문제점 등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군대 문화를 개선하고 군내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제안을 하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 군인과 직업 군인을 제외한 현재 군 복무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전역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현재 군대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심층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남성의 대표성을 위해 여성 군인을 제외하였고, 징병제와 관련하여 직업군인도 제외하여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실태와 현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군대 문화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정된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 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정의된다. 인권이 국가나 실정법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을 이와 같이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등 권력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점유하는 위치에 따라 인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간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폭넓게 수용되는 인권의 성격은 분명히 있다.<sup>7)</sup>

이렇듯 인권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인권의 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인권이 고정불변의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이 어떤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8)</sup>

## 1. 인권 개념의 검토

### 1) 인권의 개념

철학에서의 인권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로서, 법학에서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그리고 정치학에서의 인권은 스스로 정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체제에 의해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각각 달리 인식된다.<sup>9)</sup>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인권이라고 통칭하는 경향도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이해하는 입장도 있으며, 자연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10)</sup>

와썹스트롬에 의하면 자연권으로서의 ‘인권’ 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한다.

첫째로,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소유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모든 인간 존재들이 소유하는 인권은 평등하게 소유되어야 하며,

셋째로, 어떤 특정한 지위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권리는 그 후보에서 제외되며

넷째로, 인권이라면 보편적으로 주장할 만한 부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Nozic(1974)은 “인간이 인간인 한 공통적으로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스스로가 자명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고 하였고 Vlastos(1973)는 “사람들은 각자가 원래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치나 존엄성을 지니며, 혹은 스스로가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에 타당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고 하였다.<sup>12)</sup>

### 2) 인권의 역사

인권은 인간에 관한 문제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연스럽다. 인권은 제도 자체이자 바로 그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며<sup>13)</sup> 인권은 역사적 산물이다. 즉

7)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999 p15-17.

8) 김한솔 “인권의식과 국민정체성 인식 유형이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2012 p.35

9) 김성희 “인권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2002 p.21

10) 정중섭 “기본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2003

11) R. Wasserstrom, Right, Human Rights and Ra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Philosophy, vol.61, pp.638-641 / 김정화 인권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 : 권리와 효용 2000 p.20

12) 문미희 “3세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 생활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2005 p.29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인권담론이 나타난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인권은 자연법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로크(John Locke)의 자연법 원칙은 인권에 대하여 첫째, 인권은 인간의 생래적 존엄성 때문에 중요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는 실정법에 의해 정해지기보다는 자연 질서의 부분이고 둘째, 이러한 질서는 인간사회에서 변함없이 유효하며 셋째, 인권은 종족, 계급, 민족 같은 사회적 집단에 부여된 것이 아닌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세 가지 가정을 제시하였다. 루소(J. J. Rousseau)는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장치로 정부와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 오랫동안 이론적 논의를 거쳤던 인권이 국가 내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실질적인 권리로 인식된 때는 18세기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에서였다. 19세기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는 자연법적 인권관을 거부하면서 인권은 계급투쟁이 끝나면 무용(無用)하게 될 시민적·정치적 권리라기보다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로 이해하였다. 20세기 들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독일 바이마르헌법(Weimarer Verfassung)은 최초로 국민의 생활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같은 노동권과, 생존권 등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수용하였다.<sup>14)</sup>

즉, 인권의 역사에서 자유권이 먼저 주장되었고,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권이 각 국가 헌법에 반영되었다. 1945년 이후 새롭게 제정된 개별 국가의 헌법과 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문서들에 규정된 기본권을 살펴보면 자유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권이 주요한 내용이였다.<sup>15)</sup> 우리헌법에서도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인권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야기하며 신체, 주거이전, 종교, 행복추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자유권은 1800년대부터 홉스와 로크의 자연법사상을 시작으로 하여 근대 인권 개념의 첫 시작이 되었고, 사회권은 그 후 인권의 확대 과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권리로 중요성을 가졌다.

### 3) 자유권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이다. 인권의 목적도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여러 권리의 본질을 표현하는 이념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독립한 하나의 권리로 기능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고유한 영역으로 우리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각 조항에 스며들어 있다.

13)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의 환경과 인권 (인권, 2006.5.31, (주)살림출판사)

14) 김성희 “인권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2002 p.20

15)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p.162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교도소의 징벌방은 보통 방보다 더 작는데, 그 작은 감방에 두세 명의 재소자를 한꺼번에 감금한다. 그런데 작은 징벌방이니 방과 화장실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을 리 없고, 방의 한쪽 귀퉁이에 변기가 놓여 있을 뿐이다. 이렇게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수용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지 못한 채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당연히 인격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sup>16)</sup>

“쇠사슬에 묶여 바르게 걷는 것보다 자유스런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편이 더 낫다.“ 올더스 헉슬리의 이 한마디는 신체의 자유가 무엇인지 말해 준다. 신체의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목숨만 붙어 있는 경우를 견딜 수 있겠는가. 생명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신체의 자유가 뒤따라 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인권의 역사에서 인권 개념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사유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때문이다. 생명을 빼앗지 않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뿐이다. 절대왕권과 국가권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수단이 체포와 감금이었다. 그래서 신체권의 확보의 역사는 바로 인권의 역사다.<sup>17)</sup>

#### 4) 사회권

역사적으로 보면 인권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권리 확대의 과정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출발점에서의 관심사는 자유와 권리였다. 그 자유와 권리는 단순하게는 권력이 행하는 간섭 또는 억압의 배제를 의미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자유와 권리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살 수 없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

16)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2006.5.31, (주)살림출판사)

17) [네이버 지식백과] 신체의 자유 (인권, 2006.5.31, (주)살림출판사)

리를 간섭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인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요청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인권 개념의 하나가 사회권이다.

사회권을 선언한 바이마르 헌법의 제151조는 이렇다. “경제생활의 질서는 사람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권을 흔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사실 인간의 궁극적 목표에 해당하는 최대치의 삶이다. 그런데 인권이나 기본권의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말할 때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상태’를 의미한다. 아마 적어도 인간이 아닌 상태는 면할 정도라는 뜻인 모양이다. 그래서 사회권을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도 「바이마르 헌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회권 조항을 두고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권은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사회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실현에 반드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즉,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준비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권은 자유권이 실현된 다음에 기대할 수 있고, 재원이 마련된 뒤에야 서서히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태도와 지원이 있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도 사회권 실현을 진작부터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사회권의 실현 없이는 진정한 인권을 말할 수 없다.<sup>18)</sup>

## 2. 군대 내 인권의 의의

군대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려면, 먼저 고정관념(‘모름지기 남자는 군대에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 ‘군생활이 편하면 군기강이 흐트러진다’)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내가 군생활 하던 옛날보다 정말 군대가 좋아졌지’ 하는 상대적 개선론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다음으로는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명령을 준수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한다. 그러기에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18) ㈜살림출판사 - 살림지식총서 차병직, 인권 2006.5.31, p237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만 제한할 수 있다.

군인 신분과 인권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특별권력관계론에서 출발한다. 특별권력관계는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행정주체와 국민 중 일부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서,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가 일부 국민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일부 국민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군대 현실은 사실상 '넓은 특별권력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국방 목적을 위한 인권 제한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권의 중요성 정도와 침해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한 비례원칙에 입각해 인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군인은 어떠한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의무를 갖는지, 군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sup>19)</sup>

특별권력관계에 놓은 군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군대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군인인권 목록을 구체화해 볼 수 있다. 이재승은 군인인권 목록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①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
- ② 폭력·가혹행위·압제로부터의 자유
- ③ 의식주, 건강, 휴식 등에서 인간다운 처우를 받을 권리
- ④ 교양과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 ⑤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권리
- ⑥ 휴가·급여·승진·임면 등 신분상의 권리
- ⑦ 군대 내의 직무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⑧ 처벌과 징계처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와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
- ⑨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 ⑩ 군 외부에 진정·고발하고 외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⑪ 군인가족이나 관련자가 군부대에 방문하고 접근할 권리
- ⑫ 군인의 실제적·절차적 권리에 관해 교육받을 권리<sup>20)</sup>

이와 관련하여 군대 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징계문제이다. 징계권은 조직법상의 일반적인 권한으로서 조직이나 조직 내의 적절한 질서와 규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한이다. 군인사법이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조치, 이의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에 있어서는 군조직상의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할 행위와 경미한 위반 행위를 구별하여 후자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처럼 법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징계절차의 공정성, 징계기관의 적절한 구성, 항고절차의 실효성이 중요하다. 한편 징계조치 중에서 특히 영창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영창처분이 병에게 국한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19)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pp.319~320

20)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pp.320~321

다. 그리고 영창처분은 영장제도, 법관에 의한 재판, 인식구속에 대한 복잡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남용된다.<sup>21)</sup>

군인인권에 대한 접근과 그 개선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우리 인식에서도 자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주의 및 군사주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군인인권 문제에서 절실한 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군대란 두말 할 것도 없이 특수집단이며 강제집단” 으로서 “어떤 냉소적인 모욕이나 고초도 의지로 참아 넘기며 나라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운명적인 집단<sup>22)</sup>” 이라는 반인권적 인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 3. 한국군의 인권 실태

#### 1) 군내 구타 및 언어폭력

“신세대 장병의 적응실태 및 군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병영생활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병사들의 의식구조는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이 있다”는 응답자가 53.4%였으며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당했을 때 참았다”라는 응답자는 86.6%였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거나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13%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참았다”는 응답이 67.9%, 직속상관에게 보고한 인원은 10.9%였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병사는 전체 응답자의 11.7% 였으며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실태에 대한 질문에서 완전히 없다는 의견은 36.8%로 나타났다. 구타 및 가혹행위의 동기는 업무 미숙, 암기사항 미숙지 등의 부적응 요인이 41.2%, 선임병의 지시불이행이 36.7%로 나타났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계층은 일, 이등병이 80.4%로 대다수 선임병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4.2%,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는 응답이 18% “약간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8%였다. 우려되는 사항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병사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3%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병사보다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간부 또는 다른 병사로부터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하는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31.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21) 「인권법」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p.323

22) <조선일보> [아침논단] 김주영 “2005년 국군의 모습” 2005. 6. 23

23) 「인권법」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p.324

“참았다”는 응답이 86.8%, 직속상관에게 보고한 인원은 4.1%로 나타났다. 언어폭력행위를 당했을 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병사는 전체 응답자의 13.5%였으며 부대 내 언어폭력의 심각성은 “심각하다”는 의견이 13.9%,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34.5%로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의 원인은 업무 미숙, 암기사항 미숙 등 부적응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40.3%, 선임병의 지시불이행이 33.4%, 청소미비 등 병영생활 미숙지 16%로 나타났다.

병 5대 금지사항 중 지켜지지 않는 것은 지시가 48.6%, 집합 29.1%, 암기강요 14.3%, 군기교육 5.3%, 열차려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 5대 금기사항에 대하여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의 행동 유형은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는 응답이 45.3%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보고나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6.6%, “보복이 걱정되어서”가 8.1%, “함께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가 4.8%였다. 병 5대 금지사항에 대한 부대 조치의 합당성에 대해 “합당했다”는 응답자가 18.3%인 것에 비해 “합당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7.8%로 나타났다.<sup>24)</sup>

## 2) 성추행 및 성폭력

“군대 내 성폭력 실태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15.4%가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접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2%였다.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발생을 듣거나 본 경우는 24.7%였다. 중요한 것은 가해건수 중 피해를 입은 병사가 다시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가해자의 8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피해자 15.4% 중에서 1회 이하인 경우가 8.7%이었으며 2-4회가 40.8%, 5-6회가 12.6% 수시로가 30.1%로 전체 응답자중 83.5%가 2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가 강제적 성적 접촉을 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난 삼아가 54.2%, 애정표현이 29%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목격자는 괴롭히기 위해서가 20.1%, “마음대로 다루려고”는 11.9%, “강제적 성적접촉을 시도한다”고 보는 견해가 32%로 높게 나타났다.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결과 피해자의 71.1%는 가해자로 선임병을 지목하였으며, 이 외에도 부사관 7.0%, 장교 3.1%로 총 81.2%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자가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응답했다. 가해행동을 보고 있던 목격자들의 태도는 잘한다고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18.4%, 가담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답한 사람이 5.3% 등 가해 상황에 공모하는 비율이 23.7%로 하지

24) 김의열 “신세대 장병의 적응실태 및 군사회복지실천에 관한연구,” 2009 p83-85 / 김의열(2009)은 신세대 장병들의 특징을 살펴 군대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육군 전후방 사단 이병~병장 480명을 대상으로 군대내 인권실태와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원인을 조사하였다.

말라고 제지하는 2.6%의 비율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담담하게 보고 있었다” 라고 답한 비율이 57.9% 와 “못 본 척했다” 가 10.5%등 가해에 대한 소극적 동의를 합한다면 가해에 공모하는 비율은 91.6%에 이른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담담하게 보고 있었다” 는 응답이 65.7%,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 14.9%, “못 본 척했다” 는 9%로, 가해자의 응답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sup>25)</sup>

### 3) 의료복지

병사들의 의료권에 있어서는 몸이 아프거나 진찰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응답이 21.55% 였으며 자유롭게 진료권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선임병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4%, “약해보이기가 싫어서”라는 응답이 20.8%, 군 진료에 대한 불신이 19.4%, 간부 눈치가 보여서 라는 응답이 15.3%로 나타났다. 의무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63.3%중 의무대의 진료와 처방,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했다는 응답은 3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7.4%로 나타났다. 의무대의 문제점은 진료 및 처방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 34.1% 처방된 약의 품질 및 치료 수준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34.1%, 진료, 처방, 치료과정의 신속성이 없다는 응답이 13.8% 였다. 군병원 진료가 자유롭다는 응답자는 56%,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9.8%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군내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만족하는 응답자는 25.6%,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29.7%였다. 외부진료의 자율성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49.7%가 ‘자유롭다’ 고 하였고 14.4%는 ‘자유롭지 못하다’ 고 하였다. 부대 주변의 민간 병원 진료와 군내의 진료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면 민간병원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75.5%에 달하였다.<sup>26)</sup>

## 4. 현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군인의 복무부적응현상과 그에 대한 대책, 시각의 문제는 사고예방에 대한 군의 현안으로부터 사병의 인권보장, 복지향상, 병영문화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군은 복무부적응 사병들은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대상이 되거나 이로 인하여 군무이탈, 자살, 동료병사에 대해 보복등 각종 사고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상담관제도, 소원수리제도, 비전캠프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항상 부상의 위협에 놓여 있는 병사들을 위해 일부 의료시설과 의무병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외진을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5)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4 p.6~10/ 국가인권위원회(2004)는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군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식을 세우기 위해서 현역군인과 제대 3년 이내의 예비역을 대상으로 군대내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26) 김의열 “신세대 장병의 적응실태 및 군사회복지실천에 관한연구” 2009 p86-87

## 1) 기본권 상담관제도

한국 군은 2005년도에 획기적인 전환의 발상으로 상담관 제도를 받아들였다. 민간부문에서 제기한 사병의 전문적인 정신상담청구권을 보장하면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사병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차원에서 군의 상담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즉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여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인데, 상담관 제도는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장병기본권확립방안 연구」를 통해 국방부에 제시한 10대 정책 제안 중 하나였으며, 장병들에 대해 전문적인 정신상담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다.<sup>27)</sup> 본 제도의 추진·운영 경과를 살펴보면, 2005년 7월 8명의 전문 상담관을 선발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2009년 하반기 기준 106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들은 주로 상비사단 중심 사단급 부대에 2명씩 배치되어 부대 관리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위주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up>28)</sup> 군에서 기대하는 이들의 역할을 보면 첫째로 지휘계통 이외의 장병들의 소원 및 고충을 수렴하고 해소하는 역할, 둘째로 복무 부적응 및 허약체질 병사들 보호관심 병사에 대하여 능동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자살 및 군무이탈사고를 예방하는 역할, 셋째로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민원문제를 사전에 수렴하고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이다.<sup>29)</sup> 이와 같은 이론상의 제도의 취지는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역할은 기대와 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은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활성화가 다소 미약하다.

실제로 상담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병사들은 주로 비밀보장, 부적응병사로 낙인, 상담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상담서비스를 경험한 병사들의 경우에도 자발적 상담요청 비율은 16%로 지휘관, 간부나 상담관이 주도한 경우가 68.3%로 4.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담서비스를 경험한 병사들도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수동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1회가 47%나 되고 84%를 상회하는 상담서비스가 5회 이하의 단기상담으로 지속적으로 병사들을 관리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사들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30)</sup>

특히 중요한 것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선발기준은 군 경력의 민간 인력과 순수 민간 인

27) 김광식, 이동귀, 권해수. 기본권 전문 상담관 자격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8

28) 이동귀·이희경·안현의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효용성 검증 및 발전방향 연구” 2010 p.65

29) 박미은 “우리나라 군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동향과 향후과제” 2008년 12월 (사)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권 제1호

30) 이동귀·이희경·안현의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효용성 검증 및 발전방향 연구” 2010 p.106

력을 각각 1:1 비율로 선발하였는데, 실제로 군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현역출신과 순수한 민간전문 인력이 현재 군기본권 상담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부여된 공식명칭은 군기본권 상담관이지만, 실질적인 활동에서는 일정부분 군사회복지사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순수민간인력’은 군인과 가족을 상대로 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군 특수성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사건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군경력민간인력’은 군대조직의 특수성과 생활여건을 그 누구보다 빨리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장점이 있으나, 계급에 기초한 관계이기 때문에 객관적 유지가 힘들고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군인 가족의 복지증진과 자원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할 때는 전문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다.<sup>31)</sup> 그리고 상담관의 수가 상담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사병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이다.

과연 상담관 제도가 복무부적응자들을 도와 군내의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상담의 내용과 형식, 절차 그리고 그 결과가 기존의 군종이나 행정보급관 등이 하는 상담의 내용과 어떤 차별성이 있고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2) 소원수리제도

폐쇄적인 한국 군대 문화에서 장병들은 자신들의 고충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병들이 이러한 법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군인에게도 보장한 청원권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군인에게 보장된 권리를 제한해왔음을 나타낸다.

군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충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소원수리제도이다. 소원수리제도의 방식은 부대마다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병사가 자신의 고민과 고충을 쪽지나, 편지의 형식으로 담아 부대 내에 설치된 소원수리함에 넣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원수리함에 넣어진 병사들의 고충은 부대장이나, 행정병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사의 고충해결은 어려우며, 많은 양의 소원수리내용을 군대 내의 인력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포괄적, 전면적 지배권에 복종해 지내는 군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군대 내에 인물에게 해당 장병이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리고 일반 장병들이 받는 침해는 대개 법적으로 구성하기 힘든 사실상의 불이익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들 침해에 대해 행

31) 서혜석 “군사회복지사 자격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2008. (사)한국 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권 제1호(2008년 12월).

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sup>32)</sup> 특히 군대 내 폭행 및 가혹 행위 및 여러 부조리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사병의 고충은 해결되기 더욱 어렵다. 군인사법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sup>33)</sup> 군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군대의 인권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외부 통제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내에 독립된 기관으로 부터 병사들의 고충을 접수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도와 줄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3) 비전캠프

육군은 2003년 비전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비전캠프는 부대마다 두드림캠프, 그린캠프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 우고 있지만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병사들을 모범병사들과 함께 입소시켜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대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취지는 같다. 현재 육군은 이 비전캠프를 내무반에서 군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사건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델과 군종장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장병상담 경험이 어우러져 군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비전캠프 참여대상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캠프에 참여하며, 대상자로는 자살징후를 반복하는 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 과격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동료 병사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 성 정체성 혼란 자, 심각한 정신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비전캠프 입소자들은 자아정체성의 혼란, 친밀감 결여, 낮은 자존감, 복무부적응 행동, 여러 가지 신경증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 비전캠프의 주요 활동은 20-30명의 소 그룹형태로 인간관계, 자기성장,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며 이후에 반드시 결과를 해당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중 참모는 개인별 심리상태를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며 신상관리를 한다.<sup>34)</sup>

현재 이러한 비전캠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 캠프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이다. 2006년 군내의 자살자 66명 중에 64명이 비전캠프를 다녀오지 않았다. 즉 부적응자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 참여자들은 복무 부적응자들, 자살우려자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캠프 참가 시 공개적으로 낙인 찍혀 오명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캠프참가가 이력으로 남아 추후 제대 후 사회에서 알려지게 될까봐 두려움을 갖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전캠프가 군내의 기본권 상담관과 큰 차이가 없고 비전캠프 역시 군종위주의 프

32) 김의열 “신세대 장병의 적응실태 및 군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2009

33) 장성대 “군내 폭행사고 및 자살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2003 p.53

34)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예방 프로그램 연구” 2008 p.11

로그램이라는 것이다. 현 비전캠프는 일부 전문가나 혹은 기본권 상담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이다. 행사기획, 주관은 모두 군종 장교가 함으로써 상담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로 구성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이 단순한 심리검사와 치료에 국한되어 있으며 군내부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전문가, 사회봉사활동가, 가족, 친구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면 사병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사병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 등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군대의 환경을 가장 잘 알고 군내부의 경험이 많은 인력이 군부적응을 더 도울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주장하며 사병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요인들이 실제 군대의 환경적 요인만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사병들의 부적응 문제가 개인의 건강문제, 가족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을 배제한 군대라는 환경적 요인의 개선으로만 해결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에게 도움을 주어 사고를 방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비전캠프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

#### 4) 의료기관

강도 높은 훈련으로 부상에 쉽게 노출 되어있는 군인들은 반드시 자유롭게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군대는 그 어떤 곳보다 전문적인 의료진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집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군 의료수진 및 서비스에 대한 현상을 진단한 결과 한국군의 의료수준의 민간의료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35)</sup> 현재 한국군의 의료지원의 문제점은 의료시설이 낙후되고 첨단의료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 의료서비스의 수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군인들은 적시적인 진료여건의 보장 및 진료 접근성 부족, 군 의료에 대한 신뢰부족을 가지고 있다. 병사들의 진료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떨어지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다.<sup>36)</sup> 필요한 경우 민간병원으로 외진을 나갈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쉽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한 경우에 비로소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이상이 군 병원을 신뢰하지 않고 민간 의료 기관에서 진료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sup>37)</sup> 이는 군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처방 및 치료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따라서 한국군은 기존의 의무관과 소수의 전문 의료진에 의존했던 한국군의 의료기관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을 보충하며 병사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혀 나갈 필요성이 있다.

35) 유형식 “군 사회복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1 p.14

36) 박기수 “직업군인 가족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2009 p.8

37) 장성대 “군내 폭행사건 및 자살사건의 실태와 예방대책” 2003

## 5. 선행 연구 검토

군대 내에 인권침해 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크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사업과 개인연구자들 중심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는 주로 연구용역 사업을 매개로 진행되어 왔다. 2002년 처음으로 군 인권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 사업으로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군대내 구급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과약", "한국 내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2003년에는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sup>38)</sup>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는 군내의 인권의 실태를 다양한 주제로 다루었고 대규모 용역 사업으로 실태를 잘 나타냈으며 그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를 시작으로 민간차원의 연구도 활발해 지고 있다. 군 인권에 대한 민간 차원의 연구의 흐름은 실태조사를 위주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과는 달리 실태를 바탕으로 군 인권의 이론화를 시도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권리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와 토론이다.<sup>39)</sup>

선행연구 검토결과 대부분 민간차원의 선행 연구 비중이 구타나 자살 등 자유권적 기본권의 문제에 치중되어있었다. 살펴 본 결과군대 내에 가혹행위,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대표되는 군인인권연구의 흐름이며 두 번째로 군대 내에 자살사건과 의문사를 다루는 연구가 많았다. 권인숙의 연구는 최근 군대의 성문화 추세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의 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사점을 남겼다.<sup>40)</sup> 이계수씨의 "군인의 인권과 죽음" 연구는 군대 내에 자살과 의문사 대해 논의 했고 자살이 의문사로 처리될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사법부, 국가보훈처, 국회, 국방부 모두가 노력하여 군인들의 인권을 실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필요성을 남겼다.<sup>41)</sup> 윤민재의 연구에서는 군대에 인권침해실태,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의 측면에서 깊게 살펴보고 더 나아가 현 군의 사고예방대책이 노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sup>42)</sup> 군인의 인권문제가 자유권적 기본권의 문

38)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현황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 2005 pp.10-11

39)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현황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 2005 pp.11

40) 권인숙 "군대 섹슈얼리티 분석" 2009

41) 이계수 "군인의 인권과 죽음, '2009)

42)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예방 프로그램 연구" 2008

제에 치중되어있음은 우리 군 인권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초기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최근 들어 민간 차원의 연구가 군 인권의 관심 영역이 기존의 구타, 가혹행위 등을 넘어 병사의 월급, 병영시설 등 복지와 문화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의열씨의 연구에서는 군복무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시설을 적절한 때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 병사들의 의료혜택 수준과 신뢰도를 조사하여 현재 군 의료체제가 병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며 의료진의 전문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sup>43)</sup> 유형식의 “군 사회복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sup>44)</sup>에서는 국방력 강화와 병사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닌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군 사회복지제도를 제안하며 군인들의 문화적,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군인의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까지를 포함한 군 인권의 관심 영역의 확장은 군 인권 연구의 질 향상은 물론 군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변호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며 본격화 되는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의무병제하에서 국가가 병사들의 의식주와 처우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가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적정 수준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의 문제는 향후 군 인권의 주효한 쟁점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 질 필요가 있다.<sup>44)</sup>

군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폭력 및 이와 연관된 자살 등 군대 내에서 그 동안 군기사고로 치부되던 사안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개념화 시킨 것이다. 그리고 조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군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방안과 미흡함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향을 검토하는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 Ⅲ.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최근 군대 내의 인권 실태와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3년 9월 현재 복무중이거나 제대한지 최근 2년 이내인 자들 총 13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진행하였다. 남성의 대표성을 위해 여성 군인을 제외하였고, 징병제와 관련하여 직업군인도 제외시켰다. 또한, 한국의 경우 육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인 것을 감안하여 육군 7명, 해군 1명, 의경 1명, 공군 1명, 카투사 1명, 해병대 2명을 대상으로 약 2-3시간에 걸쳐 총 71문항을 실시했다. 면접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43) 김의열 “신세대 장병의 적응실태 및 군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2009

44)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현황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 2005 pp.16-17

	군대 종류	제대 시기
면접자1	육군	2013년 4월
면접자2	육군	2013년 2월
면접자3	육군	2013년 4월
면접자4	육군	2013년 6월
면접자5	육군	2013년 4월
면접자6	육군	2013년 6월
면접자7	육군(병장)	2013년 10월 제대 예정
면접자8	해군	2013년 4월
면접자9	의경	2013년 5월
면접자10	공군	2012년 5월
면접자11	카투사	2013년 8월
면접자12	해병대	2012년 3월
면접자13	해병대(일병)	2014년 5월 제대 예정

## IV. 분석 결과

우선, 한국 군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하였다. 각자 소속한 부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면접 대상자의 약 77%가 한국 군인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군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육군4 :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부조리가 남아있고, 간부들이 병사들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육군6 : 주말에 일을 시키질 않나, 쉬어야 하는데 제 권리를 자꾸 침해해요.

공군1 : 위에서 잘못 지시하는 경우에도 병사 탓을 하고, 일하는데 병사 수가 모자라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제로 한 인권침해문제 3가지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첫째, 군대 내 구타 및 언어적 폭력 요인이다. 군대 내 구타 및 언어적 폭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면접 대상자의 100%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구타 및 언어적 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상병, 병장, 간부인 반면, 피해자는 주로 이병, 일병인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위계질서 유지, 선임의 지시불이행이 대표적이었다.

군대 내 구타 및 언어적 폭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육군2 : 직접 많이 당했어요. 이병 때 커서 때릴 때가 많다고 많이 맞았어요.

그냥 이유 없이 많이 맞았어요.

육군3 : 네. 이병이 일병한테 버릇없이 행동을 해서 일병동기가 이병을 화장실로 불러서 때린 경우가 있었어요.

육군7 : 흔히 말하는 갈구는 것은 부대생활에서 소소한 입재미죠. 심각하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언어 같아요.

해군8 : 장담하는데 없는 부대는 없어요.

가해자가 폭력을 가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인가요?

육군1 : 후임이 답답하고 개념 없는 행동을 했을 때요.

의경1 : 업무적인 일에 대해 소홀하거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요.

공군1 : 의외로 하는 일 안하고 떠넘기거나 시간 때우기 식으로 명령을 불복종해서죠.

해병대2 : 병사들의 실수가 잦아요.

둘째, 군대 내 성폭력 요인이다. 성폭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면접 대상자의 약 46%가 성폭력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면접 대상자 중 성폭력을 직접 목격한 자는 없었고, 주로 옆 부대의 사건이나 소문을 들은 적이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구타 및 언어적 폭력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주로 상병, 병장, 간부인 반면, 피해자는 주로 이병, 일병인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장난, 친밀감 표현이 대표적이었다.

군대 내의 성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육군1 : 들어본 적 있어요. 한 생활관을 같이 쓰는데, 선임(병장)이 귀여운 후임(이병) 침낭에 같이 들어갔대요.

육군4 : 다른 소대에서 성폭력으로 영창을 갔다고 들었어요.

육군5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폭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성폭력보다는 성경험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가해자가 폭력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육군1 : 선임 입장에서는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하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겠죠.

육군4 : 장난으로 하는 거죠.

육군5 : 그냥 개인의 만족,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셋째, 군대 내 의료복지 요인이다. 면접 대상자의 약 85%가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군대 내의 의료시설은 일반 민간병원과는 다르게 미비한 수준이고, 의료진은 주로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면접 대상자의 약 54%가 군대 내에서 의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주로 선임의 눈치가 보이거

나 군대 내의 의료시설, 의료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이였다. 마지막으로 군대 내의 의료 진료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나 병의 악화된 소식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면접 대상자의 약 38%가 의료 진료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나 병이 악화된 소식을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면접 대상자들이 응답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진들이 전문적이지 않아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대 내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육군5 : 가장 미비한 건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예요. 아프다고 해도 대충 처방을 해주고 보통 피병부리지 말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 시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 병원처럼 첨단시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육군7 : 정말 급할 때만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아프면 의사를 직접 볼 수 없고 의사랑 전화통화를 할 수 있어요. 의사에게 직접 처방을 받기란 힘들죠.

해군1 : 전반적으로 다 미비해요. 우리 부대에는 의사는 없고 레지던트 중에 입대한 의무병이 있었어요.

의경1 : 상비약은 잘 구비가 되어있는데 보건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전담의사도 없어요.

해병대1 : 우리는 백령도라는 섬이었기 때문에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시기에는 배가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는커녕 먹는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적도 있어요.

해병대2 : 아니요. 군의관들이 진료를 제대로 못해요. 주로 진통제, 완화제, 소염제 등의 정해진 약만 처방해줘요.

군대 내에서 의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

육군3 : 형식적으로 되는데 선임들의 눈치가 보여요.

육군5 :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휴가 나와서 일반 병원을 찾죠.

공군1 : CT촬영의 경우 군 전용 병원인 큰 병원으로 가야하는데 위독하지 않는 이상 금요일마다 내보내서 금요일까지 버텨야 해요. 그리고 무릎이 나간 적이 있는데 파스만 받았어요.

해병대1 : 훈련받아야 하니까 병원가고 싶다고 쉽게 말을 못해요.

해병대2 : 의료진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시설이 안 좋아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군대 내의 의료 진료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나 병이 악화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나요?

육군2 : 친척 형이 암이었는데 계속 감기약을 처방하여 결국 조기 전역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육군4 : 이병이 입대 전부터 다리가 안 좋아서 걷는 게 불편해서 군대 외진으로 진료를 했어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장애가 되었죠.

육군5 : 이병 때, 아프다는 병사를 피병이라고 방치했다가 점점 심해져서 일반 병원으로 옮겼

으나 사망했죠.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어요.

3가지 요인에 대한 군인 인권의 현 실태를 파악한 후에 군대 내의 폭력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현황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였다. 군대 내 구타 및 언어적 폭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와 성폭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각각 물어보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군대 내 구타 및 언어적 폭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면접대상자의 약 69%가 ‘있다’, 약 31%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는 약 54%가 ‘있다’, 약 46%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부대마다 각각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취지는 같았고, 전반적으로 제도의 뚜렷한 효과는 별로 없었다. 다음으로 3가지 요인에 대한 변화의 필요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면접 대상자의 약 69%가 군대 내의 여러 폭력 문제나 의료 복지 문제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타 및 언어적 폭력을 완화하기 위한 군대 내의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그 효과는 어떤가요?  
육군1 : ‘마음의 소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편함 같은 곳에 거기다가 적어서 내는 거예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육군2 : 마음의 편지를 간부들이 읽고 제제를 가했어요. 원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역할 때 쯤 체계적으로 변했더라구요. 그렇지만 출처를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죠.

육군3 : 저희도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 잘 열어보지도 않아요. 군대의 악습은 없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육군4 : 한 달에 한 번씩 익명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어요. 하지만 보복성 문제가 뒤따르고 결국 왕따가 되죠.

육군5 : 저희 부대에는 ‘일일결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대별로 모여서 그 날 있었던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부조리 등을 병사들끼리 나누는 시간이에요. 분대장이 분대 내의 일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는 있지만 비밀보장이 되기 어려워요.

의경1 : 저희는 분대장과 면담하는 것은 중대 차원에서 힘이 별로 없어요. ‘소원수리제도’라고 화장실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청장과의 대화, 의경 감찰단과 직접 연결할 경우 중대가 발각 뒤집혀져요. 그래서 소원수리제도는 효과가 있었어요.

공군1 : 국방부에 군인 인권을 신고하거나 헌병대에 신고하는 제도도 있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나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성폭력을 완화하기 위한 군대 내의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그 효과는 어떤가요?

육군1 : 구타 및 언어적 폭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와 똑같아요.

육군4 : 영창에 보내는 거죠. 군인들이 제대 날짜가 미뤄지니까 영창에 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전 효과적인 것 같아요.

육군5 : 성폭력 문제만을 위한 제도는 없어요.

육군6 : 소원수리제도나, 기본권 상담관 제도에서 당한 일을 말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징계 받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혀 효과적이지 않죠. 어차피 징계를 받더라도 가해자는 다시 내무반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다시 보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제대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사실 아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기 어려워요.

공군1 : 없어요.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해병대2 : 저희는 성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현 제도에 대한 현황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군 상담관 제도와 비전캠프에 대해 구체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 모두 군 상담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상담관 배치 여부는 소속부대마다 달랐다. 면접 대상자의 약 62%의 부대에 군 상담관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면접 대상자의 약 85%가 상담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상담관에게 상담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군1 : 비밀보장이 잘 되지 않아요.

육군4 : 상담관이 상담을 하고 해결을 하려면 무조건 그 부대에 피해자와 관련된, 행정 보급관 이랑 이야기를 해야해요. 그렇다면, 어쨌든 비밀보장은 되지 않는 것이죠. 행정 보급관은 그렇다면 분대장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분대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에요. 단순히 몇 명이 있다면 비밀보장은 가능하지만, 몇 천명이 있는 부대에서 비밀의 보장은 사실상 어려워요.

육군7 : 상담 후에 부적응 병사로 낙인되고, 부대에서도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아서요.

해군1 : 상담 후에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공군1 : 실제로 상담한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해병대1 : 상담을 받아도 나는 그 부대에 있게 되죠. 모두가 상담을 받아 달라지지 않는 이상 나 혼자 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비전캠프에 대한 심층 면접이다. 면접 대상자의 약 77%가 비전캠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약 23%는 비전캠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부적응 병사를 적응하도록 개선시키기 위한 비전캠프의 효과를 물었다.

비전캠프를 다녀온 병사가 참가 전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육군1 ; 자살하려고 세제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 가 있어도 참가 전후의 차이가 없더라구요,

육군5 : 저희 소속은 없지만 타중대에는 있었어요. 업무부적응으로 인해 구성원들과의 문제가 생겨서 참가했어요. 그 결과 더디지만 조금 발전은 있었어요.

육군6 : 캠프 며칠 다녀오고 나서 사람의 문제가 변한다는게 말이 안되요.

심층면접결과, 대상자의 77%가 한국군인은 인권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인권실태에서 대해서는 면접자 모두가 군내에 가혹행위가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성폭력은 46%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의료복지에 관해서는 약 85%가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국방부가 군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답했으며 69%가 앞으로 국방부가 군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병사들의 구타 및 언어적 폭력, 성폭력 문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익명성'의 문제였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곳에서 자신의 피해를 고발했을 때, 고발사실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 거라는 심리적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이나, 캠프참여시에 다른 병사나, 제대 후 사회생활에서의 낙인이 병사들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큰 문제였다. 병사들이 비전캠프참여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가 캠프 참가 전후가 달라진 모습이 없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 비전캠프에 참가한 병사가 후에 군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 비전캠프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캠프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철저한 익명을 보장해주며, 자신의 피해 및 부조리에 대한 고발 후에도 평등하고, 안전한 군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청원기관이 필요하다. 앞으로 캠프나, 상담관이용에 대한 낙인을 걱정하여 자신의 문제를 도움 받지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비전캠프와 상담관 제도를 개선하여, 비전캠프와 상담관을 이용한 부적응현상을 보이던 병사들이 군대에 잘 적응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병사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차츰 감소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낙인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병사들의 의료문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의료진과 시설의 부재였다. 전체적으로 병사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이 존재하였으며, 시설과 약품모두 전문적이지 못 하다고 응답했다. 고된 훈련과 대부분의 군부대가 전문병원이 위치해 있는 도시와 거리적으로 먼 것을 생각하면 군대는 어느 집단보다 전문적인 의료진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곳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대 내에 전문적인 민간의료인력과 시설이 협력하여 훈련으로 인해 부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에게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사회는 민주화되고 있지만 군대문화의 병폐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왜곡된 군대문화와 열악한 환경은 군인들에 대한 사회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행위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군대 측에서는 여전히 복무부적응의 문제를 병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아직도 군내에서 행사되는 구타, 가혹행위, 열악한 환경 등은 남자로서의 삶의 하나의 절차, 혹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복행위, 자살,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내에서 가혹행위 및 성폭력 등에 놓여진 병사는 사회에 나와 부적응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남성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주는 군대생활은 비단, 군내에서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제대 후에도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문제로 연장시킨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 기본권 상담관, 소원수리제도, 비전캠프, 외진 등의 일부의 노력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병사들의 삶에 와닿는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적응 병사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군 내부에서만이 아닌 시민사회 및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지금보다 전문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 내부에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이 익명성의 문제를 겪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군대 부적응자로 낙인찍히지 않고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롭게 군 생활에 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부상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병사들을 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혜택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 면접을 통해 밝혀진 익명성, 낙인, 전문 인력의 부재의 문제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군 생활복지사 제도

군 생활복지사 제도는 기존의 상담관 제도를 활성화시켜 병사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상담관 제도와 다른 특징으로는 첫째, 군 사회복지사는 수동적인 병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찾아가서 지속적인 관리와 조사를 통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선별한다. 기존연구와 심층면접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기존의 상담관 제도는 병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상담 기간이 단기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상담관 제도보다는 상담관 수를 더 늘리고, 상담하기에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한 상담 장소를 구비하여 병사들이 편안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게 하여야 한

45) 윤민재 “군인인권과 사고(자살)예방 프로그램 연구” 2008

다. 둘째, 이전에 1:1 비율로 선발하는 기간제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1:1 일 비율선발이 아닌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병사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군 생활복지사는 군복무 경험도 있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보유하여 병사의 입장에서 신속히 이해할 수 있고,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병사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군대 조직상의 문제도 있지만 병사 개인의 특성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통해 병사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상담관 제도의 취지를 더 발전시켜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군인의 인권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 2. 리업(RE-UP) 캠프

리업캠프는 비전캠프의 가장 큰 문제였던 참여대상자선정의 문제, 단순한 심리검사에 치중한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의 부재를 개선하여 새롭게 창안한 캠프이다.

먼저 기존의 비전캠프의 참가자 선정은 선임관, 지휘관들에게 맡겨졌으며 그 기준이 모호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로 부적응자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한국 비전캠프의 경우 군중, 상담관, 행보관 등 군내부의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리업캠프는 선정대상자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인력에게 맡겨 정확한 기준과 다양한 요인으로 고충을 겪는 사병들을 캠프참여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민간전문인력이 일반 군사병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현재 기본권 상담관을 맡고 있는 순수민간인력과 군경력민간인력을 위에서 말한 군대문화, 심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군사회복지사'로 바뀌어야 한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요인, 정확한 기준으로 사병들을 판단하여 캠프참여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비전캠프의 부적응자 선정의 미흡함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캠프참가에 대한 이력을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후 참가자들이 사회에 나가 낙인이 찍힐 가능성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캠프에 참가하여 자신의 고충을 해결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 내에서의 낙인 문제도 중요하다.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났듯, 캠프참가자에 대한 낙인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참가자들의 전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사들 간의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캠프참여 후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캠프가 문제를 겪는 병사들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질적인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존의 단순한 심리검사 및 치료가 아닌 가족지원센터, 건강센터, 생활지원센터, 가족, 친구 등과의 접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미 공군은 도움이 필요한 사병들에게 당사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위협에 빠진 사람들을 확인하고 조치를 추하며 도움을 주 수 있는 통로로서 행동을 위해 4가지 수준에서의 개입을 요구한다. 첫 번째 개인적 수준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을 말한다. 두 번째 부대의 게이트키퍼 수준이다. 즉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는 병사를 얼마나 잘 추출해 내는 가이다. 세 번째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의 게이트키퍼 수준이다. 위에서 말한 가족지원센터, 건강센터, 생활지원센터 등이 함께 협력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의학전문가들의 수준을 말한다.<sup>46)</sup> 즉 사병의 개인문제를 군대의 수준의 차원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군은 보안이라는 특수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군인의 문제를 군 내부에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해 사병 개개인의 문제개선과 군대문화의 개선을 위해 군 외부의 다양한 조직과 전문가들에게 문제를 공개하고 협력하여 좀 더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국군은 군내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미공군의 경우는 군내에 부적응을 보이는 사병들의 위협요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요인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부적응, 자살위험,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병들의 사고의 감소는 주로 보호요인들의 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어려운 상황을 다룰 효과적인 기술, 도움을 찾는 사람들을 격려할 정책과 문화규범과 같은 보호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호요인과 동시에 인관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희망상실, 무망감 등 위협요인이 함께 관리 되어져야 군내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보호요인을 부각시키고 위협요인을 차단하여 두 요인의 균형을 이룰 때 어려움을 겪는 사병이 후에 큰 사고로 퍼져 나갈 수 있음을 예방할 수 있다.<sup>47)</sup>

### 3. 군 음부즈맨 제도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 따라서 군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군대의 인권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외부 통제기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군 음부즈맨제도이다. 음부즈맨 제도는 원래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행정권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으로 처음 설치된 이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개 국가가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군 음부즈맨이란 군이 오용되는 것을 방

46) 윤민재 “군인인권과 사고(자살)예방 프로그램 연구” 2008 p.24

47) 윤민재 “군인인권과 사고(자살)예방 프로그램 연구” 2008 p.25

지하기 위해 군을 통제하고, 군인의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독립기구이다. 특별한 청원기관으로서 군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군인에게는 직접 혹은 중개위원이나 친구, 가족을 통해서 국회 청원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 ombudsman에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곧바로 호소, 청원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sup>48)</sup> 군내에 가혹행위, 복지제도, 상급관의 부조리 등 다양한 사안들을 형식에 제한 없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 내용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군 ombudsman의 권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정보에 대한 권한이다. 군 ombudsman은 국방부장관 및 그 관할 부서에 대하여 정보제공과 문서열람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즉 군대 및 기타 부서에 대하여 특정사안을 검토해보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에 대한 이방을 물을 수 있고, 관련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사전 예고 없이 부대, 사령부, 기타 연방군의 시설 및 행정부서를 방문할 수 있다. 바로 부대 방문권을 매개로 모든 계급의 군인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가 있고 연방군 내부의 사정을 소상히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정이나 청원서만 보아서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하고 점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이 확인한 중요한 사실을 곧바로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으며 군 내부의 징계권 행사실태에 대한 보고서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둘째 제안 및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군 ombudsman이 진정이나 청원에 대한 심사 후 실제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대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권고력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 군인이라면 계급을 막론하고 곧바로 진정 및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시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ombudsman은 직접 국방부 장관과 대면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ombudsman은 자신들의 활동을 의회에 매년 연례보고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을 보고하고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군 ombudsman의 영향력을 키우는 한 요소이다.<sup>49)</sup> 그리고 군 ombudsman의 활동은 폐쇄적인 군대와 달리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군인의 군 내부 문제에 대한 청원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는 ombudsman의 권고에 힘을 더해줄 수 있다. 결국 ombudsman의 힘은 한정된 법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도덕적 힘에서 나온다.

현재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군내부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무반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폭행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실제로 가혹행위 및 폭력문제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내무반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영역에 대해서 사전 통지 없이 어느 때건 방문하여

48) 장성대 “군내 폭행사고 및 자살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2003 p.57

49) 장성대 “군내 폭행사고 및 자살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2003 p.59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된다면 군대 내 폭행, 구타 및 복지문제는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 군인법의 하나인 군 옴브즈맨 제도를 당장 우리 현실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 제도 안에 담겨있는 기본정신, 취지만큼은 군인도 자유와 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이며 군인에게도 일반국민과 같은 자유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시급히 필요한 일이다.<sup>50)</sup>

#### 4. 군-민 지역사회 의료 협력체계

군인들의 대다수가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보통의 군부대가 민간병원이 주로 위치해 있는 도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긴급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연구와 심층면접결과, 실제로 군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매우 떨어졌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부대 내의 전문 민간의료진과 시설을 확충할 것을 건의한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개선된 군내의 의료기관이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인들의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이 되지 않는 수의 건강검진대상자들을 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부대 내의 군병원으로 지정해주어 소수의 민간인들이 군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군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수준이 낙후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군인들은 양질의 의료시설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군부대가 위치해 지역사회에 일부 시민들에게 큰 편리가 될 것이다. 군-민의 통합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화롭게 이루어져 양쪽에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군의 인권침해 문제를 군사 회복지사, 리업(Re-up)캠프, 군 옴브즈맨 도입,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에서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군의 개혁, 군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60년 전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우리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희생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며, 군인을 일방적인 충성과 희생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군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건들은 남성으로서 거쳐 가야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군인은 군인이기 전에 국가의 국민이며 나라의 아들이다. 그들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보호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군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꾸준한 관심, 국방의 노력이 합쳐져 군의 문제를 공개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겠다는 공동체 해결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하며 연구를 마친다.

50) 장성대 “군내 폭행사건 및 자살사건의 실태와 예방대책” 2003

## 참고문헌

### - 신문기사

- 한겨레 “20대 여성들은 왜 ‘군가산점제’ 를 찬성할까?” 2013. 8. 1  
서울신문 “사병 의료인권 종합대책 마련하라” 2013. 6. 19  
<조선일보> [아침논단] 김주영 “2005년 국군의 모습” 2005. 6. 23

### - 논문자료

-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 예방프로그램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8  
김의열 “신세대 장병의 적응 실태 및 군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제2권 제2호 2009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05  
김한솔 “인권의식과 국민정체성 인식 유형이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2012  
김성희 “인권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2002  
R. Wasserstrom, Right, Human Rights and Ra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Philosophy, vol.61,  
김정화 “인권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 : 권리와 효용” 2000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이동귀 · 이희경 · 안현의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효용성 검증 및 발전방향 연구” 2010  
김광식, 이동귀, 권해수. 기본권 전문 상담관 자격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8  
[네이버 지식백과] (주)살림출판사 - 살림지식총서 차병직. 인권. 2006.5.31  
권인숙 “군대 섹슈얼리티 분석” 2009  
이계수 “군인의 인권과 죽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2009  
장성대 “군내 폭행사건 및 자살사건의 실태와 예방대책”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2003  
유형식 “군 사회복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1 -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3호  
박기수 “직업군인 가족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2009  
박미은 “우리나라 군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동향과 향후과제” 2008년 12월 - (사)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권 제1호



논문수상작  
**2013 인권작품 공모전**

**장려상**

성범죄자에 대한 언론의 사적정보 공개가  
남녀 대학생의 인권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강력 성범죄와 일반 성범죄를 대상으로 -

이경면, 유병현, 최준식

## 요 약

본 연구는 성 범죄자에 대한 사적 정보 공개 기사가, 대중이 가지는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성범죄를 저지른 특정 인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둘째, 성범죄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셋째, 인권의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선 혼합된 4종류의 설문지 통해 피험자를 4 집단으로 나누었다. 4 집단은 다음과 같다. 일반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비공개된 기사를 접한 A집단, 일반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공개된 기사를 접한 B집단, 강력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비공개된 기사를 접한 C집단, 마지막으로 강력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공개된 기사를 접한 D집단이다. 처치된 4개의 기사를 보고 특정 성범죄자의 처우 평정 검사, 성범죄자 인권 태도 검사. 그리고 전반적인 인권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에 노출된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성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처우 평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성별과 사적정보가 상호작용하여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정보 공개가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적 정보가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이 행하는 성 범죄자의 사적정보 공개를 자제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제한점들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 목 차

### I. 서론

#### 1. 인권

- 1) 인권의 정의
- 2) 인권의 법적인 제한

#### 2. 언론의 자의적인 신상공개

#### 3. 문제 제기

- 1) 사적 정보 공개
- 2) 범죄의 질
- 3) 성별

#### 4. 연구문제

### II. 방법

#### 1. 참가자

#### 2. 자극 재료 및 도구

- 1) 가상의 기사
-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태도 검사
- 3) 특정 성범죄자의 처우 평정 검사
- 4) 성범죄자 인권 태도 검사
- 5) 전반적인 인권 태도 검사

#### 3. 실험절차

#### 4. 실험설계

#### 5. 분석방법

### III. 결과

### IV. 논의

## I. 서 론

### 1. 인권

#### 1) 인권의 정의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이다<sup>1)</sup>. 이러한 정의에서 보면 인권에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권리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sup>2)</sup>. 인권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리는 어떤 것에 대한 정당한 자격 또는 요구를 의미한다<sup>3)</sup>. 따라서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에서 어떤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니게 되는 자격 또는 요구라고 할 수 있겠다<sup>4)</sup>.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위와 같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서는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열거한다.

표 1.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 Alan Gewirt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 6; Jack Donnelly, Cornell University, 2003, p. 7; Micheline R. Isha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 3.

2) 이성계, 고려대학교, 2008, p. 1.

3) Michael Freeman, Human Rights, 2002, p. 6; Jack Donnelly, Cornell University, 2003, p. 7.

4) 이성계, 고려대학교, 2008, p.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권을 모든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그것을 신체의 자유, 생활 보호, 사회보장 및 복지,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그리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로 정의하겠다.

## 2) 인권의 법적인 제한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헌법에서 규정된 인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이 주어지는 인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 일반적인 대상이 성범죄자이다. 사실상 법률로 성 범죄자의 인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근거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7조 2항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및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헌법 제2장에 기초하여 성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상공개이다.

신상공개에 있어서 성범죄자 및 피해 청소년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전력, 죄질, 성범죄자의 가족관계 및 피해 청소년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sup>5)</sup>.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즉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20점), 범행동기, 수단, 결과,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그러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기타 고려사항을 두어 부여 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 산출점수의 누계가 60점 이상이면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재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견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여부를 재심사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한다. 그리고 신상공개 기간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도 1

---

5) 이병희, 한국형사법학회, 2002, p. 259-278.

개월간 게시된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sup>6)</sup>. 위 조항에 규정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 2. 언론의 자의적인 신상공개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집행은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과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예는 표 2와 같다.

표 2. 언론의 성 범죄자에 대한 자의적인 신상공개

… 조씨는 지난해 7월30일 소집돼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해당 지하철역에 배치됐으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 여대생 살인범 공익요원 조씨는 병가를 수시로 내는 등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무태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조씨와 함께 입소한 다른 공익근무요원들은 그가 훈련소에서 ‘여자 전문가’로 통했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조씨는 훈련소에 있는 과정에서 “나는 아동성범죄자다”라며 “여자는 내가 전문가”라고 공공연히 유세를 부리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무 이외의 시간에는 주차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클럽에서 다른 여성들을 만나는 데 돈과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sup>7)</sup>.

이러한 방식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언론의 자의적인 신상공개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피의자의 가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다. 연좌제 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6) 신현기 외 10명, 법문사, 2012

7) 이정우, 세계일보, 2013.

받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규정된다. 원래 연좌제라는 것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태에 대하여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말하고, 이는 봉건적 인습으로 여겨져 폐기된 제도이다<sup>8)</sup>.

두 번째, 언론의 자의적인 신상공개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은 재판도 하기 전에 사실상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라는 처벌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에 의하여 규정된다. 유죄의 확정 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바, 제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sup>9)</sup>.

### 3. 문제 제기

#### 1) 사적 정보 공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재 기사에서 공개되고 있는 개인 정보가 법적 테두리 땅을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신상공개란 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와 사진 등 범죄자의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는 근무 장소, 근무 태도, 여자 친구 유무, 지인과 했던 이야기 등 그 이상의 부정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개인정보를 사적정보라고 정의하겠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sup>10)</sup>. 즉, 필요에 따라 인권적인 제한을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빈번한 강력 성범죄로 인하여,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갑을논박이 있다. 성범죄자의 인권을 현재 존재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현재 그

8) 강성두, 대한민사법학회, 2010, p. 388~389

9)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10) 헌재 1992.12.24, 94헌가8.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들은 무언의 동의를 빌미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피의자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 논의가 다소 감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언론의 사적인 정보 공개가, 이것을 읽는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 2) 범죄의 질

성범죄의 질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강력범죄를 표 3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강력 성범죄를 살인과 성폭행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로 정의하고, 일반적인 성범죄를 단순히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정의하겠다. 범죄의 질이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차이가 있기에,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강력성범죄는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언론에서도 인지하기에, 언론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일반적 사건에 비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한다<sup>11)</sup>.

또한 언론은 강력 성범죄의 사실적 측면에 더하여, 대중의 이목을 끌어들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앞서 언급하였던 성범죄자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기도 한다. 즉, 언론은 강력 성범죄

11) 박상조, 박지선, 한국소통학회, 2013, p. 304.

죄의 사실적 측면에 더하여, 성범죄자의 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이 비공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의 일부에는 상업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sup>12)</sup> 따라서 사적인 정보 공개 대상이 된 기사는 대부분이 강력 성범죄에 대한 기사이다<sup>13)</sup>. 그러나 때로는 사적 정보 공개의 대상이 강력 성범죄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표 4. 일반 성범죄에 대한 사적 정보 공개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30분께 춘천시 석사동 모 원룸에 침입,  
자고 있던 A(19·여)양을 성폭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이씨는 모 학교 일반 계약직 체육강사로 드러났다.

… 이씨는 술에 취하면 성도착 등 특이 습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sup>14)</sup>.

위와 같은 기사는 강력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비록 성범죄자에 대한 사적인 정보 공개가 대부분 강력 성범죄와 관련하여 일어나고는 있지만, 간혹 발생하고 있는 일반 성범죄자의 사적인 정보 공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점차 일반화될 경우, 그 만큼 일반 대중이 일반 성범죄자의 사적인 정보를 더 접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이 일반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를 공개한 기사를 접하였을 때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력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 공개에 대한 영향뿐 만이 아니라, 일반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 공개에 대한 영향 또한 연구하겠다.

### 3) 성별

본 연구에서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은 성별이다. 성범죄 기사에 대한 영향이 성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한층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나’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한다는 연구가 이를 지지한다<sup>15)</sup>. 그러므로 사적정보 공개 여부와 범죄의 질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

12) Rasdale. J.M.,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87, p. 229-230.

13) 신현주, 한국민간경비학회, 2010, p. 113.

14) 이은주, 뉴시스, 2012.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 의한 사적정보공개와 범죄의 질이 달라질 때, 성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겠다.

#### 4. 연구문제

그렇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사적 정보 공개 기사가, 대중이 가지는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성범죄를 저지른 특정 인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성범죄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인권의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즉 위와 같은 판결 전의 사적인 정보 공개라는 변인이 특정 성범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성범죄자 집단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인권 전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인권에 대한 관심, 성범죄 관련 인터넷 뉴스를 보는 빈도, 그리고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즉, 개인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 : 성범죄 관련 인터넷 뉴스를 보는 빈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3 :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4 :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들은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하는 독립변인의 효과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이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겠다. 또한 본 연구의 순수한 독립변인의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요인을 공변량으로 고려하여 통계 분석하겠다.

**연구문제 5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처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15) 김지현, 김윤경, 심홍진, 성범죄에 대한 개인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언론학회 제57권 2호, 2013.4, 342-368

- 연구문제 5 - 1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형량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 2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신상공개 여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 3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신상공개 기간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 4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화학적 거세 여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 5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화학적 거세 기간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 6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전자 위치 추적 장치 착용 여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 7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전자 위치 추적 장치 착용 기간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는 사적정보에 의하여 피험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기사에서 노출된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피험자가 그 성범죄자의 법적인 처우를 얼마나 다르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연구문제 6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의 질이,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처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6 - 1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의 질이,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형량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6 - 2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의 질이,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신상공개 여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6 - 3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의 질이,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신상공개 기간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6 - 4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의 질이,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화학적 거세 여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6 - 5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의 질이,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화학적 거세 기간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6 - 6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의 질이,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전자 위치 추적 장치 착용 여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6 - 7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의 질이,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전자 위치 추적 장치 착용 기간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법률에 의거하면 일반 성범죄의 경우보다 강력 성범죄의 경우 더 무거운 처우를 내린다. 연구문제 6에 의하여 피험자도 법률과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7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 - 1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범죄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 - 2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사적정보가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 - 3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 - 4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과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 - 5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사적정보와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 - 6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과 사적정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 - 7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에서는 성 범죄자 집단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적정보 공개의 영향을 주로 알아보려고 한다.

실사 해당 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사적정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성 범죄자 집단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 7을 통하여 그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문제 8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8 - 1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범죄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8 - 2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사적정보가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8 - 3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8 - 4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과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8 - 5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사적정보와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8 - 6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과 사적정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8 - 7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8에서는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적정보 공개의 영향을 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상의 요인들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결과 부분에서 차례로 나열하겠다.

## II. 방 법

### 1.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에서 성격심리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147명과, 환경생물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44명, 통계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7명, 경북대학교 청음반 동아리 회원 및 관계자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242명의 학생들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 17명을 제외하여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의 대학생 225명(남자 110명, 여자 115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6세이고 표준편차는 2.2이다.

### 2. 자극 재료 및 도구

#### 1) 가상의 기사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가상의 기사를 사용한다. 각 집단에 제시되는 기사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 A(비공개, 일반성범죄)경우를 볼 수 있다. 가상 기사의 틀에서 아래의 '정보공개항목'과 '범죄의 질 항목' 모두 제외했을 경우 기사 A가 만들어진다. 둘째, 기사 B(공개, 일반성범죄)경우를 볼 수 있다. 가상의 기사의 틀에서 '정보공개항목'을 포함하고 '범죄의 질 항목'을 제외했을 때 기사 B가 만들어진다. 셋째, 기사 C(비공개, 강력성범죄)경우를 볼 수 있다. 가상의 기사의 틀에서 '정보공개항목'을 제외하고 '범죄의 질 항목'을 포함했을 때 기사 C가 만들어진다. 넷째, 기사 D(공개, 강력성범죄)경우를 볼 수 있다. 가상의 기사의 틀에서 '정보공개항목'과 '범죄의 질 항목' 모두 포함했을 경우 기사 D가 만들어진다.

정보 공개 항목, 범죄의 질 항목, 그리고 기사 A(비공개, 일반성범죄)의 예시를 각각 표 5, 표 6,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5. 정보 공개 항목

- ① “여자 내가 전문가이다. 마음만 먹으면 다 꼬실 수 있다.” - 카카오톡 내용 중 -
- ② 35세의 일용직 노동자 A씨
- ③ 지인에 따르면 최근 A씨는 “PC방에서 만난 여자 친구가 임신해서 기분이 좋아 휴가를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범행 며칠 전부터 음란동영상을 즐겨 본 것으로 알려졌다.

표 6. 범죄의 질 항목

- ① 살해
- ② 흥기
- ③ 강간살인 혐의

표 7. 가상 기사의 틀

**옆 호실 원룸 여성 성폭행 후 (범죄의질 항목①) 30대 구속영장**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정보공개항목 ①)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범죄의질 항목②)를 들고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 B양을 성폭행 후 (범죄의질 항목①)한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혼자 사는 B양의 원룸에 침입 후 (범죄의질 항목②)하고 성폭행하였다. 그 후 범행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B양을 (범죄의질 항목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 B양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다 문이 열린 직후 (범죄의질 항목②)로 B양을 위협해 집안 같이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감식과 이웃집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정보공개항목③)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범죄의질 항목③)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표 8. 기사 A(비공개, 일반성범죄)의 예시

옆 호실 원룸 여성 성폭행 30대 구속영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 B양을 성폭행 한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혼자 사는 B양의 원룸에 침입 후 성폭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 B양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다 문이 열린 직후 집안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감식과 이웃집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태도 검사

이 척도는 성 범죄자들의 개인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검사지 구성된 각 문항들은 국정홍보처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2001.10)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를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집단에서 모든 성 범죄자 집단으로 확장하였다. 경북대학교 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본 척도의 문항 간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문항-총점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문항 1번을 제외한 총 9문항들로 구성되어졌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제도가 효과가 있다.”,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는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이다. 하지만 앞으로 공개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등의 항목들이 있다. 이 척도는 본인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 혹은 각 문항의 내용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5점 Likert형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33였다.

### 3) 특정 성범죄자의 처우 평정 검사

이 척도는 특정 성 범죄자들에 대한 적정 처벌 정도를 평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피험자의 기사에서 보도된 성 범죄자에 대한 인권 태도 변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종속 변인이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성 범죄를 저지른 특정 인물의 인권에 대한 태도 측정을 범죄시에 부여하는 처벌로 조작하였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작으로 인하여 처벌을 더 강하게 주는 것은, 대상자의 인권을 간접적으로 더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사 지에 구성된 각 문항들은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자의 양형기준(형법 제297조, 형법 제301조)과 신상정보공개, 화학적 거세, 전자 위치 추적 장치기간은 성 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였다<sup>16)</sup>. 이 척도는 총 7문항으로 명목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가 특정 성 범죄자의 범죄 기사를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성 범죄자의 적정 처벌을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그 예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특정 성범죄자의 처우 평정 검사 문항 예시

차원	문항 예시
형량	귀하가 생각하는 A씨의 적정 형량을 선택해주시시오. ① 1년 이하 ② 5년 이하 ③ 10년 이하 ④ 무기징역 ⑤ 사형
신상정보공개 기간	A씨에 대한 적정 신상공개 기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1개월 이하 ② 6개월 이하 ③ 1년 이하 ④ 3년 이하 ⑤ 10년 이하
화학적 거세	A씨에 대한 적정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기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1개월 이하 ② 6개월 이하 ③ 1년 이하 ④ 3년 이하 ⑤ 10년 이하
전자 위치 추적 장치 착용 기간(전자발찌)	A씨에 대한 적정 전자 위치 추적 장치 착용 기간을 선택해주시시오. ① 1개월 이하 ② 6개월 이하 ③ 1년 이하 ④ 3년 이하 ⑤ 10년 이하

이 척도는 성 범죄자들의 개인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검사지 구성된 각 문항들은 국정홍보처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2001.10)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를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집단에서 모든 성 범죄자 집단으로 확장하였다. 경북대학교 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본 척도의 문항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문항-총점 상관이 가장

16) 부산고등법원 2009.7.9. 선고 2009노343,2009전노8(병합) 판결, 대전지법 2013.2.8. 자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결정,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낮은 문항 1번을 제외한 총 9문항들로 구성되어졌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제도가 효과가 있다.”,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는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이다. 하지만 앞으로 공개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등의 항목들이 있다. 이 척도는 본인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 혹은 각 문항의 내용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5점 Likert형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33였다.

#### 4) 성범죄자 인권 태도 검사

이 척도는 성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검사지에 구성된 각 문항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개발한 한국인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일반국민, 2011)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문항 간 신뢰도 측정한 결과, 문항-총점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문항 3번, 8번을 제외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호송과정에서 경찰이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강력 성범죄자라도 물리적 거세는 허용될 수 없다.”, “성범죄자라고 의심되는 경우라도 경찰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시에 검문할 수 없다.” 등의 항목들이 있다. 이 척도는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 혹은 각 문항의 내용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5점 Likert형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33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19이었다.

#### 5) 전반적인 인권 태도 검사

이 척도는 전반적인 인권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검사지에 구성된 각 문항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개발한 한국인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일반국민; 2011)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문항 간 신뢰도 측정한 결과, 문항-총점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문항 3번을 제외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이라면 학교에서의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 “에이즈 환자로 밝혀진 외국인은 전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출국 조치를 해야 한다.”,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시위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등의 항목들이 있다. 이 척도는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 혹은 각 문항의 내용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5점 Likert형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12이었다.

### 3. 실험절차

설문지 배분하기 전에 네 가지의 설문지를 동일한 비율로 무선 혼합하였다. 그 후에 수업 중에 담당 교수의 양해를 구하고 설문지를 일괄 분배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일반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비공개된 기사를 접한 집단이다(남학생 26명, 여학생 30명). 두 번째 집단은 일반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공개된 기사를 접한 집단이다(남학생 27명, 여학생 32명). 세 번째 집단은 강력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비공개된 기사를 접한 집단이다(남학생 27명, 여학생 26명). 네 번째 집단은 강력 성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공개된 기사를 접한 집단이다(남학생 30명, 여학생 27명).

실험 절차의 시간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험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설문지를 수행한다. 둘째, 피험자는 각 집단마다 다르게 처치된 기사를 읽는다. 셋째, 피험자는 처치된 기사에 등장하는 가상의 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평정한다. 넷째, 피험자는 성범죄자 집단의 인권에 대한 태도 설문지를 수행한다. 다섯째, 피험자는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 설문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인적 사항 및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인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한 문항을 평정한다.

### 4. 실험설계

연구자는 본 실험 연구를 위해,  $2 \times 2 \times 2$  요인 설계를 구성하였다. 각 독립변인은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이다. 성별의 수준은 남자와 여자이다. 사적정보의 수준은 공개와 비공개이다. 범죄의 질의 수준은 일반과 강력이다. 요약하여 이 연구의 설계는 2(성별: 남자, 여자)  $\times$  2(사적정보: 공개, 비공개)  $\times$  2(성범죄의 질: 일반, 강력) 요인 설계이다.

###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통계적인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① 성 범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남녀의 태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② 성범죄 관련 인터넷 뉴스를 보는 빈도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③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④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⑤ 기사에서의 사적정보 공개 여부에 따른, 해당 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을 교차 분석하였다. ⑥ 기사에서의 범죄의 질에 따른, 해당 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을 교차 분석하였다. ⑦ 성별, 사적 정보 공개, 그리고 범죄의 질에 따른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 대한 공변량은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와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요인은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상관을 가질 수 있다. ⑧ 성별, 사적 정보 공개, 그리고 범죄의 질에 따른 인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ANOVA, T-TEST를 실시하였다.

### Ⅲ. 결과

#### 1. 인구통계학적 정보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집단별 참가자의 연령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인구 통계학적 정보

사적정보	범죄의질	성별	인원 수	나이의 평균	나이의 표준편차
비공개	일반	남자	26	23.19	2.136
		여자	30	20.77	1.591
		합계	56	21.89	2.213
	강력	남자	27	22.04	2.410
		여자	26	21.08	1.875
		합계	53	21.57	2.197
	합계	남자	53	22.60	2.332
		여자	56	20.91	1.719
		합계	109	21.73	2.201
공개	일반	남자	27	22.63	2.619
		여자	32	20.66	1.677
		합계	59	21.56	2.358
	강력	남자	30	22.07	2.180
		여자	27	20.52	1.451
		합계	57	21.33	2.012
	합계	남자	57	22.33	2.393
		여자	59	20.59	1.566
		합계	116	21.45	2.188
합계	일반	남자	53	22.91	2.388
		여자	62	20.71	1.623
		합계	115	21.72	2.285
	강력	남자	57	22.05	2.271
		여자	53	20.79	1.680
		합계	110	21.45	2.097
	합계	남자	110	22.46	2.357
		여자	115	20.75	1.643
		합계	225	21.59	2.194

## 2. 연구문제 1 :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남녀의 태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의 인원,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342$ , ns. 이는 성별에 따라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가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1.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성별	인원 수	평균	표준편차
공개태도	남자	110	35.3636	5.59444
	여자	115	36.0000	4.38298

### 3. 연구문제 2 : 성범죄 관련 인터넷 뉴스를 보는 빈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가?

성범죄 관련 인터넷 뉴스를 보는 빈도에서의 남녀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의 인원,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t=-3.556$ ,  $p<.001$ . 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성범죄 관련 뉴스를 더 자주 본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2. 성범죄 관련 인터넷 뉴스를 보는 빈도

	성별	인원 수	평균	표준편차
성범죄 관련 인터넷 뉴스를 보는 빈도	남자	110	3.33	.814
	여자	115	3.70	.740

### 4. 연구문제 3 :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가?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의 남녀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의 인원,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267$ , ns. 이는 성별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3.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성별	인원 수	평균	표준편차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남자	110	3.43	.748
	여자	115	3.45	.652

### 5. 연구문제 4 :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가?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3.548$ ,  $p<.001$ . 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성범죄 관련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4.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

	성별	인원 수	평균	표준편차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	남자	110	3.44	.736
	여자	115	3.77	.653

## 6. 연구문제 5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처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적정보 공개 여부에 따른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을 교차 분석하였다. Pearson 카이제곱을 표 15에 제시하였다. 유의미한 것은 없었다. 이는 사적정보 공개 여부에 의하여, 기사에 보도된 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5. 사적정보 공개 여부에 따른 처우의 차이 비교

성별	형량	신상 공개 유무	신상 공개 기간	화학적 거세 유무	화학적 거세 기간	위치 추적 장치 유무	위치 추적 장치 기간	
남자	Pearson 카이제곱	1.423	2.868	.888	1.666	2.036	.972	.743
여자	Pearson 카이제곱	4.755	.c	7.156	.142	1.347	1.148	3.983
전체	Pearson 카이제곱	2.598	2.857	4.672	1.401	2.301	1.799	3.992

\* $p<.05$ , \*\* $p<.01$ , \*\*\* $p<.001$

## 7. 연구문제 6 : 기사에 노출된 특정 성 범죄의 질이,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처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범죄의 질에 따른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을 교차 분석하였다. Pearson 카이제곱을 표 16에 제시하였다.

남자[ $\chi^2=25.677$ ,  $p<.001$ ], 여자[ $\chi^2=15.158$ ,  $p<.01$ ]에서 범죄의 질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하였다,  $\chi^2=37.039$ ,  $p<.001$ . 이는 남녀 모두가 일반 성범죄의 경우보다 강력 성범죄의 경우, 형량을 더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남자에서 범죄의 질에 따른 신상 공개 기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chi^2=14.696$ ,  $p<.01$ . 이는 남자 대학생이 일반 성범죄의 경우보다 강력 성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 기간을 더 길게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자 대학생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는 유의미하였다,  $\chi^2=11.918$ ,  $p<.05$ . 이는 여자 대학생은 기사에서 보도된 범죄의 질에 따라서 신상 공개 기간이 영향을 받지 않으나, 남녀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강력 성범죄의 경우에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남자에서 범죄의 질에 따른 화학적 거세 기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chi^2=12.596$ ,  $p<.05$ . 이는 남성이 일반 성범죄의 경우 보다, 강력 성범죄의 경우 화학적 거세 기간을 더 길게 평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6. 범죄의 질에 따른 처우의 차이 비교

성별	형량	신상 공개 유무	신상 공개 기간	화학적 거세 유무	화학적 거세 기간	위치 추적 장치 유무	위치 추적 장치 기간
남자	Pearson 카이제곱 25.677***	.422	14.696**	.002	12.596*	.185	1.201
여자	Pearson 카이제곱 15.158**	.c	2.946	.346	.623	.026	6.121
전체	Pearson 카이제곱 37.039***	.294	11.918*	.153	7.945	.019	2.952

\* $p<.05$ , \*\* $p<.01$ , \*\*\* $p<.001$

## 8. 연구문제 7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가?

독립변인의 효과를 순수하게 검정하기 위하여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 ‘과’ 인권에 대한 태도 ‘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통계적 검정을 하였다. 각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인원을 표 17에 제시하였다. 또한 하위 연구 문제에 대한 F 값을 표 18에 제시하였다.

표 17. 성별, 사적 정보 공개, 그리고 범죄의 질에 따른 성 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 비교

사적정보	범죄의질	성별	평균	표준편차	N
비공개	일반	남자	13.6538	5.12205	26
		여자	12.7667	4.36035	30
		합계	13.1786	4.70631	56
	강력	남자	15.6296	5.52719	27
		여자	12.6154	3.83747	26
		합계	14.1509	4.96680	53
	합계	남자	14.6604	5.37424	53
		여자	12.6964	4.08954	56
		합계	13.6514	4.83693	109
공개	일반	남자	13.9630	3.93682	27
		여자	14.3750	3.72221	32
		합계	14.1864	3.79416	59
	강력	남자	13.4667	5.14435	30
		여자	14.3704	4.18006	27
		합계	13.8947	4.69302	57
	합계	남자	13.7018	4.57854	57
		여자	14.3729	3.90357	59
		합계	14.0431	4.24344	116
합계	일반	남자	13.8113	4.51517	53
		여자	13.5968	4.09101	62
		합계	13.6957	4.27390	115
	강력	남자	14.4912	5.39220	57
		여자	13.5094	4.07442	53
		합계	14.0182	4.80631	110
	합계	남자	14.1636	4.97798	110
		여자	13.5565	4.06567	115
		합계	13.8533	4.53467	225

표 18. 연구문제 7에 대한 검정 결과

소스	F
범죄의 질	.698
사적 정보	.692
성별	2.927
성별 * 범죄의 질	.452
사적 정보 * 범죄의 질	.625
성별 * 사적 정보	5.354*
성별 * 사적정보 * 범죄의 질	.892

\*p<0.5, \*\*p<.01, \*\*\*p<.001

1) 연구문제 7 - 1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범죄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가?

범죄의 질에 따른 성 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698$ , ns. 이는 기사에 노출된 성범죄의 질이 강력 성범죄이든 일반 성범죄이든 상관없이,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연구문제 7 - 2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사적정보가 영향을 미치는가?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692$ , ns. 이는 사적 정보 공개 여부가,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연구문제 7 - 3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가?

성별에 따른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2.927$ , ns. 이는 성별의 차이가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연구문제 7 - 4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과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성 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성별과 범죄의 질의 상호작용을 검정하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452$ ,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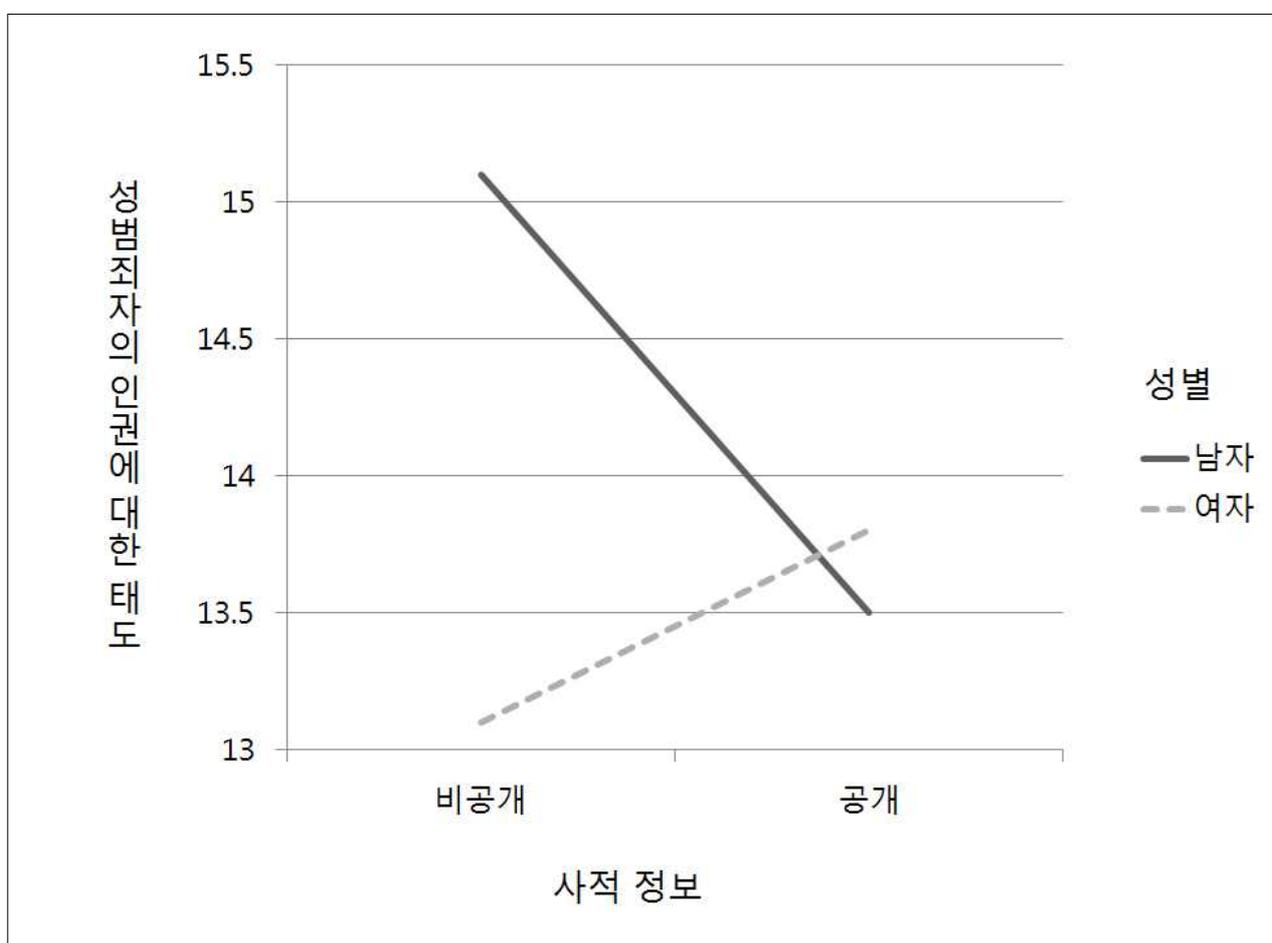
5) 연구문제 7 - 5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사적정보와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성 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사적정보와 범죄의 질의 상호작용을 검정하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625$ , ns.

6) 연구문제 7 - 6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과 사적정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별과 사적정보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F=5.354, p<.05$ . 상호 작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을 나누어 단순비교 하였다. 그 결과 사적 정보 공개에 따른 성 범죄자에 대한 태도 차이가 남성에서는 유의미하였다,  $F=4.650, p<.05$ . 여성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747, ns$ . 이는 여성은 사적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성 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남성은 사적 정보 공개가 되었을 때 성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더 간과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그래프를 그래프 1에 제시하였다.

그래프 1. 연구문제 7 - 6에 대한 그래프



7) 연구문제 7 - 7 :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성 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의 상호작용을 검정하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892$ , ns.

9. 연구문제 8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절차를 수행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집단 별 인원을 표 19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에 대한 T 점수와 F 값을 각각 표 20과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19. 성별, 사적 정보 공개, 그리고 범죄의 질에 따른 인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 비교

성별	사적정보	범죄의질	평균	표준편차	N
남자	비공개	일반	24.1154	5.82633	26
		강력	24.3333	4.15100	27
		합계	24.2264	4.99477	53
	공개	일반	24.6667	3.29335	27
		강력	24.8667	5.33520	30
		합계	24.7719	4.44818	57
	합계	일반	24.3962	4.67127	53
		강력	24.6140	4.77626	57
		합계	24.5091	4.70554	110
여자	비공개	일반	25.0667	4.38598	30
		강력	25.0000	4.41814	26
		합계	25.0357	4.36084	56
	공개	일반	26.4063	3.91737	32
		강력	26.5926	4.54261	27
		합계	26.4915	4.17865	59
	합계	일반	25.7581	4.17127	62
		강력	25.8113	4.51091	53
		합계	25.7826	4.31192	115
합계	비공개	일반	24.6250	5.07959	56
		강력	24.6604	4.25596	53
		합계	24.6422	4.67563	109
	공개	일반	25.6102	3.71862	59
		강력	25.6842	5.00770	57
		합계	25.6466	4.38030	116
	합계	일반	25.1304	4.44167	115
		강력	25.1909	4.66786	110
		합계	25.1600	4.54356	225

표 20. 연구문제 8에 대한 검정 결과

소스	t
범죄의 질	-.100
사적 정보	-1.664
성별	-2.118*

\*p<0.5, \*\*p<.01, \*\*\*p<.001

표 21. 연구문제 8에 대한 검정 결과

소스	F
성별 * 범죄의 질	.018
사적 정보 * 범죄의 질	.001
성별 * 사적 정보	.576
성별 * 사적정보 * 범죄의 질	.012

\*p<0.5, \*\*p<.01, \*\*\*p<.001

1) 연구문제 8 - 1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범죄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가?

범죄의 질에 따른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t=-.100$ , ns. 이는 기사에 보도된 범죄의 질이 강력 성 범죄이든 일반 성범죄이든 상관없이, 인권에 대한 태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연구문제 8 - 2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사적정보가 영향을 미치는가?

사적정보에 따른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t=-1.664$ , ns. 이는 사적 정보 공개 유무에 따라, 인권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연구문제 8 - 3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가?

성별에 따른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하였다,  $t=-2.118$ ,  $p<.05$ . 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전반적인 인권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연구문제 8 - 4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과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성별과 범죄의 질의 상호작용을 검정하기 위하여, ANOVA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F=.018$ , ns.

5) 연구문제 8 - 5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사적정보와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성별과 범죄의 질의 상호작용을 검정하기 위하여, ANOVA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F=.001$ , ns.

6) 연구문제 8 - 6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과 사적정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성별과 범죄의 질의 상호작용을 검정하기 위하여, ANOVA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F=.576$ , ns.

7) 연구문제 8 - 7 :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의 상호작용을 검정하기 위하여, ANOVA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F=.012$ , ns.

##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언론의 자의적인 사적 정보 공개가 인권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첫째, 개인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남녀 집단 간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 따른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가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본 설문지에 대한 대학생 남녀 평균은 4점 수준으로 ‘그렇다’에 가까웠다. 이는 남녀 모두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성범죄 관련 인터넷 뉴스를 보는 빈도에 대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성범죄 관련 뉴스를 더 자주 본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차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본 문항에 대한 대학생 남녀 평균은 3.4점 수준으로 ‘보통이다’에 가까웠다. 이는 남녀 대학생이 인권 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범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연구<sup>17)</sup>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기사에 노출된 성 범죄자의 사적 정보가,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처우 평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 범죄자에 대한 주관적 처우 평정에는 형량, 신상공개 여부와 그 기간, 화학적 거세 여부와 그 기간, 그리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여부와 그 기간이 있다. 이러한 처우에 대해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론에서의 사적 정보 공개 여부가, 성 범죄자에 대한 대학생이 내리는 주관적 처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섯째, 기사에 노출된 성범죄의 질이, 그 범죄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처우 평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범죄의 질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남녀 모두에 대하여 유의미했다. 이는 남녀 모두가 일반 성범죄일 경우보다 강력 성범죄일 경우, 형량을 더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의 질에 따른 신상 공개 기간의 차이가 남자의 경우에 유의미하였다. 이는 남자 대학생이 강력 성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 기간을 더 길게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자 대학생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여자 대학생은 기사에서 보도된 범죄의 질에 따라서 신상 공개 기간이 영향을 받지 않으나, 남녀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강력 성범죄의 경우에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질에 따른 화학적 거세 기간의 차이가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 유의미하였다. 이는 남자 대학생이 강력 성범죄의 경우, 화학적 거세 기간을 더 길게 평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법률에 의하면 강력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의 경우 보다 더 무거운 처우를 내린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도 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 평정에 있어서 법적 판단과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곱째, 성별, 사적정보, 그리고 범죄의 질이 성 범죄자의 인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적 정보 공개가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계적 결과에 따르면 사적정보 공개 여부에 따른 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

17) 김지현, 김윤경, 심홍진, 성범죄에 대한 개인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제57권 2호, 2013.4, 342-368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성범죄자의 사적정보 공개 여부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대학생이 가지는 성 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사적 정보 공개가 강력 성범죄 또는 일반 성범죄와 상호작용하여 대학생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계적 결과에 따르면 사적정보와 범죄의 질에 대한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강력 성범죄이든 일반 성범죄이든 상관없이, 사적 정보 공개가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정보와 성별에 대한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다. 즉 사적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여성이 가지는 성 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사적 정보 공개가 되었을 때 성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더 간과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곱째에서 제시한 통계적 결과들의 해석을 종합해보겠다. 기사에 보도된 성범죄가 강력 성범죄이든 일반 성범죄이든 상관없이 남성의 경우에는, 언론이 자의적으로 공개한 사적정보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언론이 자의적으로 공개한 사적정보에 남성이 노출되었을 경우, 성범죄자의 인권을 더 간과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덟째, 성별, 범죄의 질, 그리고 사적정보 중에서 성별만이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서의 남녀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타인의 인권을 더 존중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요인들의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는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언론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8)</sup>. 이는 법률적인 절차를 간과한 행위일 수 있으며,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성 범죄자에 대한 자의적인 언론의 사적정보 공개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즉, 언론에서의 신상공개는 법에서 정의하는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를 벗어난다.

이러한 문제점에 더하여 본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언론이 자의적으로 공개한 사적정보에 남자 대학생이 노출되었을 경우, 성범죄자의 인권을 더 간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빈번한 강력 성범죄로 인하여,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갑을논박이 존재한다. 성범죄자의 인권을 현재 존재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성 범죄자에 대한 인권 논의가 다소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언론의 사적정보 공개가 독자가 가지는 성 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법당국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다<sup>19)</sup>. 또한 이러한 성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성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강력성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묻되, 그들의 사회복귀를 막고 범죄피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제도를 여론만을 이유

18) 이정우, 세계일보, 2013.

19)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 1993, p. 208.

로 하여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20)</sup>.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성 범죄자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언론은 자의적인 성 범죄자에 대한 사적 정보 공개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설문지를 피험자에게 체크하도록 하였는데, 처우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피드백을 피험자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요인이 피험자로 하여금 적절한 형량을 평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사에 보도된 특정 성 범죄자의 인권 간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식이 인권의 준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셋째, 피험자의 인원수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은 사적정보 공개 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자 대학생의 성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다른 장면에 일반화시키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 윤석민, 조선일보, 2009, p. A34.

## 참고문헌

- 강성두, “범죄피의자의 인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공개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제18집, p. 388~389, 2010. 12.
- 김지현, 김윤경, 심홍진, “성범죄에 대한 개인의 위협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제57권 2호, p. 342-368, 2013. 4.
- 박상조, 박지선, “강력범죄와 언론보도의 수치관계, 그리고 시민들의 범죄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 304, p. 308, 2013.
- 신현기 외 10명,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 신현주, “강력범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 선호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권, 한국민간경비학회, p. 111-142, 2010.
- 윤석민, “미디어법 개정의 논의 관전법”, 조선일보, A34면, 2009.3.17.
-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 p. 259-278, 2002.
- 이성계, “인권의 심의적 보편성”, 고려대학교, 2009.
- 이은주, “춘천경찰, 원룸침입 성폭행미수 체육강사 구속”, 뉴시스, 2012.
- 이정우, “'뒷북'만 치는 경찰...대구 여대생 살해범 알고 보니 공익”, 세계일보, 2013. 6.
- 하태훈, “공정한 재판의 원칙과 보도의 자유”, 형사법연구 제6권, 한국형사법학회, 208면, 1993.12.
- Alan Gewirth, “The Community of Righ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6, 1996.
-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ornell University, p. 7, 2003.
- Michael Freeman, “Human Righ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Malen, p. 6, 2002.
- Micheline R. Ishay,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3, 2004.
- Ragsdale. J. M., “On the Police/Press connection, in Police and the Media, edited by P.A.Kelly“, Charles C Thomas publisher, p. 229-230, 1987.